

월간
재정포럼

2018. February_Vol.260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02

권두칼럼

비트코인 광풍과 국가 거버넌스 | 장경덕

현안분석

최근 소득세수 변동에 대한 요인분해 | 오종현

지역별 의료 서비스 이용 변이를 이용한

보건·의료재정 절감 가능 규모 추정에 관한 소고 | 김우현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캐나다, 대마초 과세 및 세수배분 관련 주정부와 합의한 내용 발표 외

CONTENTS

권두칼럼

비트코인 광풍과 국가 거버넌스 · 장경덕 02

현안분석

최근 소득세수 변동에 대한 요인분해 · 오종현 06

지역별 의료 서비스 이용 변이를 이용한

보건 · 의료재정 절감 가능 규모 추정에 관한 소고 · 김우현 ... 34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캐나다, 대마초 과세 및 세수배분 관련 주정부와 합의한 내용

발표 외 54

조세·재정 정책 및 연구 동향

세미나 & 정책 및 연구 104

정책흐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 109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 115

비트코인 광풍과 국가 거버넌스



장경덕
매경 논설위원

우리나라의 유별난 비트코인 투기 광풍을 지켜보면서 몇 년 전 타계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말한 ‘속도의 충돌’을 떠올렸다. 2006년에 출간된 ‘부의 미래(Revolutionary Wealth)’에 나오는 이야기다. 기술과 환경이 가속적으로 변화하는 21세기에 각 기관들이 움직이는 속도에는 큰 차이가 나타난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시속 100마일로 가장 빠르게 질주하는 건 기업들이다. 경쟁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뒤지면 즉각 도태되므로 빠른 혁신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바로 뒤에는 시속 90마일로 달리는 비정부기구(NGO)들이 따라 온다. 가족들은 시속 60마일로 달리고, 노동조합은 시속 30마일로 움직인다.

기술 · 시장의 격변과 속도의 충돌

그렇다면 관료조직과 규제기관들은 어떨까. 그들은 시속 25마일로 느리게 움직이며 전체적인 변화의 속도를 되레 떨어트린다. 산업화 시대 대량생산 체제에나 맞는 학교는 그들보다 더 느린 시속 10마일로 움직인다. 헌정의 위기가 닥치지 않는 한 정치조직은 시속 3마일로 굼뎠 움직임을 보이며, 법체계는 시속 1마일로 거의 제자리걸음을 할 뿐이다.

가상화폐 투기가 심각한 정치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때까지 사실상 냇을 놓고 있었던 관료와 정치조직, 법체계를 보면 토플러의 통찰이 새삼 놀라울 따름이다. 우리나라 행정 · 입법 · 사법 시스템 모두 기술과 시장의 변화를 못 따라가 속도의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비트코인 광풍으로 드러난 국가 거버넌스 문제를 깊이 성찰해봐야 할 때다.

그러자면 먼저 투기적 거품 속에 가려져 있는 가상화폐의 본질을 꿰뚫어봐야 한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혁명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상화폐의 창시자들이 구상한 경제 논리는 반동적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정체불명의 개발자는 중앙에 집중

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해킹이나 조작을 걱정할 필요도 없는 암호화폐를 설계했다. 분산원장(Distribution ledger)과 상호 검증을 통해 가장 안전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면서 공급량은 2,100만개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비민주적인 정치인과 변덕스러운 중앙은행이 함부로 돈을 찍어내 자신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걸 경험한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다.

비트코인은 극단적인 자유지상주의 철학을 반영한다. 이 가상화폐가 통용되는 세상은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이나 거래를 중개하는 금융기관의 권위와 신뢰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이는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면서 개인의 재산을 지키는 데 어떤 간섭도 받기 싫어하며 누구도 믿고 싶지 않은 이들에게 복음처럼 들렸다. 그러나 마치 땅 속의 금을 캐듯 컴퓨터로 채굴해야 하는 화폐는 인위적으로 공급을 조절할 수 없다는 바로 그 점 때문에 명백한 한계를 갖는다.

작년 초 비트코인 값은 100만원 남짓 했지만 연말에는 2,000만원을 넘었다. 1년 새 구매력이 20배로 뛰는 돈으로 물건을 살 이들은 없다. 한 해 물가가 95%나 폭락한다면 경제는 완전히 멈춰 설 것이다. 비트코인을 빌려 집을 산 이들은 파산할 수밖에 없다. 극심한 투기의 대상으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화폐는 교환의 매개와 가치 저장 수단, 가치 척도(회계 단위)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가상화폐를 낳은 블록체인 기술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온갖 자산과 아이디어를 중앙의 권력이나 중개인을 뛰어넘어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기술은 전통적인 정치, 경제, 사회제도와 우리 삶을 혁명적으로 바꿔 놓을 수 있다. 블록체인은 스마트 계약의 플랫폼이 될 수 있고 국민의 의사를 실시간으로 알아볼 디지털 민주주의를 앞당길 수도 있다. 가상화폐가 어떻게 진화할지, 무엇이 지배적인 가상화폐가 될지는 알 수 없다.

정부는 한편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불러온 가상화폐 투기 광풍을 막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놀라운 혁신을 불러올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꾀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우물쭈물하다 아까운 시간만 허비했다.

.....

**정부는 한편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불러온 가상화폐
투기 광풍을 막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놀라운
혁신을 불러올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꾀해야 한다.**

.....

.....

21세기의
국가 거버넌스는
기술과 시장의 창조적
파괴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적극적으로 혁신을
끌어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늘
변화를 선도하는
나라들을 쫓아가느라
바쁠 것이다.


.....

혁신을 끌어안지 못하는 법과 제도

이 문제는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 속도와 방식, 대응 체계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정부는 기술과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데 지나치게 굼뜨다. 2009년에 세상에 나온 비트코인은 2013년에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은 곧바로 가상화폐의 성격을 규정하고 과세 지침을 만들었다. 우리는 2014년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관련 유권해석을 내놓은 적이 있지만 어떤 과세도 실행되지 않았고 관련 법체계가 정비되지도 않았다. 범죄자가 가진 가상화폐를 몰수조차 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다. 가상화폐 거래를 진작 규제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고 양도소득세나 거래세를 매겼다면 극심한 투기 광풍을 잠재우기가 지금처럼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 정부의 우격다짐 식 대응도 문제다. 정부는 투기 광풍이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아직도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과 과세 방침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 급하면 엉성하고 무리한 수가 나온다.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아예 폐지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금융당국이 돈을 죄려 은행들을 다그친 건 개발 연대의 권위주의 정부가 하던 방식이었다. 첨단 기술로 규제 차익을 노리는 가상화폐를 규제하려면 그만큼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

셋째,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 체계가 너무 경직적이다. 토플러의 지적처럼 시속 1마일로 움직이는 법체계가 가장 큰 문제다. 특히 법률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특히 양도소득)은 과세할 수 없는 세법은 기술과 금융 분야의 놀라운 혁신이 일어나면 늘 뒷북만 칠 수밖에 없다. 가상화폐 거래에 코스닥시장보다 많은 돈이 몰리고 단기 차익도 엄청난데도 세금 한 푼 걸지 못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엄청나게 복잡하지만 상상력과 유연성이 부족한 기존 법체계가 가상화폐라는 변화를 끌어안지 못했다. 정부는 그 구멍을 제때 메우지 못했다.

21세기의 국가 거버넌스는 기술과 시장의 창조적 파괴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가상화폐 사태로 드러난 거버넌스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풀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혁신을 끌어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늘 변화를 선도하는 나라들을 쫓아가느라 바쁠 것이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최근 소득세수 변동에 대한 요인분해**
오종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지역별 의료 서비스 이용 변이를 이용한
보건 · 의료재정 절감 가능 규모 추정에 관한 소고**
김우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최근 소득세수 변동에 대한 요인분해

I. 서론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jhoh@kipf.re.kr)

최근 국세수입 실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3년의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약 0.5% 감소하였고, 2014년에는 1.8%가량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2015년과 2016년의 전년 대비 국세수입 증가율은 각각 6.0%와 11.3%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국세수입 증가세는 2017년에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2018년 1월에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2017년 11월까지의 국세수입은 251.9조원으로 전년 동기의 230.5조원 대비 9.28% 증가하였다.

최근의 세수입 증가에는 다른 세목들과 함께 소득세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2015년과 2016년의 전년 대비 소득세 수입 증가율은 각각 13.88%와 12.85%로 전체 국세수입 증가율을 상회하였다. 소득세 수입 중 65% 이상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살펴보더라도 최근의 세수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다.

소득세수의 증가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소득세의 과세기반이 확대되면 소득세수는 증가한다. 예를 들어, 실업률 감소로 인하여 소득세 납부 인원이 증가하거나, 개인의 평균소득이 상승한다는 것은 소득세의 과세기반이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세기반의 확대 이외에 명목세율의 인상과 같은 제도적 변화 또한 소득세수를 증가시킨다. 2013년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의 특별공제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것도 세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변화 중의 하나다. 이와 함께 소득양극화와 같은 소득분포의 변화도 소득세의 세수입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 전체의 평균 소득이 일정하고 제도적 변화가 없더라도 소득양극화가 심화되었다면 소득세의

누진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세수입이 증가한다. 이는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에 따른 세수입 감소분보다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에 따른 세수입 증가분이 더 크기 때문이다.

본고는 자료 확보가 가능한 2012~2016년 기간 동안 소득세수의 증가가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해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연도별 세수입 증가에 대한 요인분해를 실시한다. 세수입 변화 요인은 크게 과세기반 요인과 실효세율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요인 각각을 다시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과세기반 요인은 납세인원 요인과 평균소득 요인으로 분해된다. 실효세율 요인은 제도적 변화 요인과 함께 소득분포의 변화 요인으로 분해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세부담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가 존재한다. 안중석(2015)은 OECD Revenue Statistics를 통해 소득세 부담수준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이중 소득분포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았다. 다만, 연구목적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득세수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낮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박형수 외(2012)는 중장기 세수의 변동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소득세수 변동요인을 과세기반 요인과 세제 요인으로 나누어 각 요인들의 과거 추세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박형수 외(2012)는 과세기반 요인이나 세제 요인 이외에도 소득분포의 변화 또한 중장기적으로 세수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박명호(2016)는 부가가치세의 세부담에 대한 요인분해를 실시하였다. 부가가치세 수입의 변화를 세율요인, 부가가치세 세수율 요인, 과세기반 요인으로 분해하였는데,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분포에 대한 요인은 포함되지 않아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이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진행한다. 제Ⅱ장에서는 세수입 변동요인을 분해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 설명하고, 제Ⅲ장에서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분석결과를,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은 결론이며 분석결과를 해석한다.

본고는 자료 확보가 가능한 2012~2016년 기간 동안 소득세수의 증가가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해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연도별 세수입 증가에 대한 요인분해를 실시한다.

세수입 변화 요인은 크게 과세기반 요인과 실효세율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II. 세수입 변동요인 분해 방법론

이하에서는 세수입의 변동요인을 분해하는 방법론에 대하여 설명한다. 과세기반의 발생과 납세자의 세금 납부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기의 세수입은 아래의 식 (1)과 같이 당기의 과세기반과 실효세율에 의해 결정된다.

$$T_t = B_t \times \tau_t \quad \text{식 (1)}$$

여기서, T_t 는 t 년도의 총세수입, B_t 는 과세기반, τ_t 는 실효세율을 의미한다. 이에 세수입 변동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분해한다면 아래의 식 (2)와 같이 과세기반 요인과 실효세율 요인으로 분해할 수 있다.

$$\Delta T_t = \Delta B_t \times \overline{\tau_{t,t-1}} + \Delta \tau_t \times \overline{B_{t,t-1}} \quad \text{식 (2)}$$

식 (2)에서 좌변인 ΔT_t 는 직전 연도 대비 t 년도의 총세수입 증가분이다. 같은 식에서 $\overline{\tau_{t,t-1}}$ 와 $\overline{B_{t,t-1}}$ 은 각각 $t-1$ 년도와 t 년도 간의 평균 실효세율과 평균 과세기반을 의미한다. 이에 식 (2)의 우변의 첫 번째 항은 실효세율이 일정할 경우 과세기반의 변화로 인한 세수입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또한 식 (2)의 우변의 두 번째 항은 과세기반이 일정할 경우 실효세율의 변화로 인한 세수입의 변화를 의미한다.

과세기반은 다시 식 (3)과 같이 납세인원과 납세자 1인당 평균소득으로 분해할 수 있다.

$$B_t = N_t \times b_t \quad \text{식 (3)}$$

위 식에서 N_t 는 납세자의 수, b_t 는 1인당 평균소득을 의미한다. 총세수입의 변화를 두 가지 요인으로 분해한 것과 마찬가지로 과세기반의 변화 또한 납세자 수의 변화와 1인당 평균소득의 변화로 인한 부분으로 분해할 수 있다.

$$\Delta B_t = \Delta N_t \times \overline{b_{t,t-1}} + \Delta b_t \times \overline{N_{t,t-1}} \quad \text{식 (4)}$$

위 식에서 좌변은 과세소득의 변화를 의미하며, 우변에서는 이를 두 요인으로 분해한다. 우변의 첫 번째 항은 납세자 수의 변화에 의한 과세기반의 변화이며, 두 번째 항은 평균소득의 변화로 인한 과세기반의 변화를 의미한다. 과세기반의 변화를 두 요인으로 분해하였는데, 실제로 두 요인에 의한 세수입 증가분은 식 (4)의 양변에 실효세율을 곱하여 식 (5)와 같이 도출할 수 있다.

$$\Delta B_t \times \overline{\tau_{t,t-1}} = \Delta N_t \times \overline{b_{t,t-1}} \times \overline{\tau_{t,t-1}} + \Delta b_t \times \overline{N_{t,t-1}} \times \overline{\tau_{t,t-1}} \quad \text{식 (5)}$$

한편 식 (5)에서 평균소득 변화로 인한 세부담 변화는 실효세율이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의 변화다. 하지만 평균소득이 변하면 소득세의 누진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실효세율 또한 변한다. 예를 들어, 평균소득이 증가하면 상위 과세표준 구간으로 이동하는 계층들이 존재해 실효세율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평균소득이 변함에 따라 실효세율이 변하는 효과는 다음의 실효세율의 변화로 인한 총세수입의 변화에서 고려한다.

실효세율은 크게 세제와 소득분포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소득분포는 일반적으로 평균과 분산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실효세율은 식 (6)과 같이 소득분포의 평균(μ_t)과 분산(σ_t), 그리고 세제(Ω_t)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tau_t = \tau(\mu_t, \sigma_t, \Omega_t) \quad \text{식 (6)}$$

따라서 실효세율의 변화는 식 (7)과 같이 소득의 평균과 분산의 변화, 그리고 제도적 변화 등 3가지 요인으로 분해할 수 있다.

$$\Delta \tau_t = \Delta \tau_t(\mu) + \Delta \tau_t(\sigma) + \Delta \tau_t(\Omega) \quad \text{식 (7)}$$

위 식에서 우변의 첫 번째 항은 평균소득의 변화로 인한 실효세율의 변화다. 즉, 소득분포의 분산과 소득세제가 변하지 않고 오직 평균만 변하였을 경우의 실효세율 변화분을 의미한다. 이때 소득분포의 분산과 소득세제를 고정시키기 위한 기준 시점에 따라 평균소득의 변화로 인한 실효세율의 변화분이 달라질 수 있다. 실효세율의 변화분은 당기와 전기의 실효세율 차이이기 때문에 기준 시점은 당기가 될 수도 있고, 전기가 될 수도 있다. 이에 소득분포의 분산과 소

**과세기반 요인은
납세인원 요인과
평균소득 요인으로
분해된다.**

실효세율 요인은
제도적 변화 요인과 함께
소득분포의 변화 요인으로
분해될 수 있다.

득세제에 대한 기준 시점은 식 (8-1)~(8-4)와 같이 4가지의 조합이 발생한다. 본고에서는 식 (8)과 같이 이 4가지 조합을 통해 계산된 실효세율 변화분의 평균을 평균소득의 변화로 인한 실효세율의 변화분이라 가정한다.

$$\Delta\tau_t(\mu) = \frac{1}{4} \times \left\{ \begin{aligned} &\Delta\tau_t(\mu|\sigma_{t-1}, \Omega_{t-1}) + \Delta\tau_t(\mu|\sigma_t, \Omega_{t-1}) \\ &+ \Delta\tau_t(\mu|\sigma_{t-1}, \Omega_t) + \Delta\tau_t(\mu|\sigma_t, \Omega_t) \end{aligned} \right\} \quad \text{식 (8)}$$

$$\Delta\tau_t(\mu|\sigma_{t-1}, \Omega_{t-1}) = \tau(\mu_t, \sigma_{t-1}, \Omega_{t-1}) - \tau(\mu_{t-1}, \sigma_{t-1}, \Omega_{t-1}) \quad \text{식 (8-1)}$$

$$\Delta\tau_t(\mu|\sigma_t, \Omega_{t-1}) = \tau(\mu_t, \sigma_t, \Omega_{t-1}) - \tau(\mu_{t-1}, \sigma_t, \Omega_{t-1}) \quad \text{식 (8-2)}$$

$$\Delta\tau_t(\mu|\sigma_{t-1}, \Omega_t) = \tau(\mu_t, \sigma_{t-1}, \Omega_t) - \tau(\mu_{t-1}, \sigma_{t-1}, \Omega_t) \quad \text{식 (8-3)}$$

$$\Delta\tau_t(\mu|\sigma_t, \Omega_t) = \tau(\mu_t, \sigma_t, \Omega_t) - \tau(\mu_{t-1}, \sigma_t, \Omega_t) \quad \text{식 (8-4)}$$

식 (7)에서 우변의 두 번째 항인 소득분포의 분산의 변화로 인한 실효세율의 변화는 평균소득과 소득세제가 일정하고 오직 소득분포의 분산만 변화했을 경우의 실효세율 변화분을 의미한다. 소득분포의 분산의 변화로 인한 실효세율의 변화분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평균소득과 소득세제에 대한 기준 시점을 가정해야 하는데, 본고에서는 평균소득의 변화로 인한 실효세율의 변화분과 마찬가지로 평균소득과 소득세제에 대한 기준 시점으로 4가지 가능한 조합에 대해 계산한 뒤 이를 평균하여 도출한다.

$$\Delta\tau_t(\sigma) = \frac{1}{4} \times \left\{ \begin{aligned} &\Delta\tau_t(\sigma|\mu_{t-1}, \Omega_{t-1}) + \Delta\tau_t(\sigma|\mu_t, \Omega_{t-1}) \\ &+ \Delta\tau_t(\sigma|\mu_{t-1}, \Omega_t) + \Delta\tau_t(\sigma|\mu_t, \Omega_t) \end{aligned} \right\} \quad \text{식 (9)}$$

$$\Delta\tau_t(\sigma|\mu_{t-1}, \Omega_{t-1}) = \tau(\mu_{t-1}, \sigma_t, \Omega_{t-1}) - \tau(\mu_{t-1}, \sigma_{t-1}, \Omega_{t-1}) \quad \text{식 (9-1)}$$

$$\Delta\tau_t(\sigma|\mu_t, \Omega_{t-1}) = \tau(\mu_t, \sigma_t, \Omega_{t-1}) - \tau(\mu_t, \sigma_{t-1}, \Omega_{t-1}) \quad \text{식 (9-2)}$$

$$\Delta\tau_t(\sigma|\mu_{t-1}, \Omega_t) = \tau(\mu_{t-1}, \sigma_t, \Omega_t) - \tau(\mu_{t-1}, \sigma_{t-1}, \Omega_t) \quad \text{식 (9-3)}$$

$$\Delta\tau_t(\sigma|\mu_t, \Omega_{t-1}) = \tau(\mu_t, \sigma_t, \Omega_t) - \tau(\mu_t, \sigma_{t-1}, \Omega_t) \quad \text{식 (9-4)}$$

마지막으로 식 (7)에서 우변의 세 번째 항인 제도적 변화로 인한 실효세율의 변화는 소득분포의 평균과 분산이 일정하고 오직 소득세제만 변화했을 경우의 실효세율 변화분을 의미한다. 소득분포는 평균과 분산이 동시에 결정한다. 이에 소득분포에 대한 기준 시점은 당기와 전기의 두 가지만 존재하며, 본고에서는 이 두 가지 기준 시점을 통해 계산된 실효세율의 변화분을 평균하여 제도적 변화로 인한 실효세율의 변화분을 도출한다.

$$\Delta\tau_t(\Omega) = \frac{\Delta\tau_t(\Omega|\mu_{t-1}, \sigma_{t-1}) + \Delta\tau_t(\Omega|\mu_t, \sigma_t)}{2} \quad \text{식 (10)}$$

$$\Delta\tau_t(\Omega|\mu_{t-1}, \sigma_{t-1}) = \tau(\mu_{t-1}, \sigma_{t-1}, \Omega_t) - \tau(\mu_{t-1}, \sigma_{t-1}, \Omega_{t-1}) \quad \text{식 (10-1)}$$

$$\Delta\tau_t(\Omega|\mu_t, \sigma_t) = \tau(\mu_t, \sigma_t, \Omega_t) - \tau(\mu_t, \sigma_t, \Omega_{t-1}) \quad \text{식 (10-2)}$$

실효세율의 변화가 실제 세수입에 미친 영향은 앞에서 살펴본 각 요인별 실효세율의 변화에 과세기반을 곱하여 도출한다. 즉, 소득분포의 평균과 분산, 그리고 제도적 변화에 따른 세수입 변동분은 다음의 식 (11)과 같이 도출된다.

$$\begin{aligned} \Delta\tau_t \times \overline{B_{t,t-1}} \\ = \Delta\tau_t(\mu) \times \overline{B_{t,t-1}} + \Delta\tau_t(\sigma) \times \overline{B_{t,t-1}} + \Delta\tau_t(\Omega) \times \overline{B_{t,t-1}} \end{aligned} \quad \text{식 (1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수입의 변화는 크기는 과세기반 요인과 실효세율 요인으로 분해되며, 이는 다시 <표 1>과 같이 5가지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앞에서 설명한 방법론을 활용해 근로 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세수입의 변화를 <표 1>에 나타난 요인들로 분해한다.

실효세율은 크게
세제와 소득분포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소득분포는
일반적으로 평균과 분산에
의해 결정된다.

앞에서 설명한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정들이 필요하다. 먼저 제도적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는 결정세액 또한 동일해 실효세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표 1〉 세수입 변동요인 분해

	2요인 분해	5요인 분해
세수입 변화	과세기반 변화	납세인원의 변화
		평균소득의 변화 (실효세율 고정)
	실효세율 변화	평균소득의 변화 (누진세 효과)
		소득분포의 분산 변화
		제도적 변화

출처: 저자 작성

『국세통계연보』는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소득구간별 신고인원 및 소득 금액, 결정세액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소득구간별로 평균소득과 실효세율을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근로소득(총급여)을, 그리고 종합소득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을 의미한다. 본고에서 실효세율은 소득금액에서 결정세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한다.

한편 앞에서 설명한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정들이 필요하다. 먼저 제도적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는 결정세액 또한 동일해 실효세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이에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해 계산된 소득구간별 실효세율의 변화는 제도적 변화에 의한 것이라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은 소득구간이 자세하게 구분될수록 현실을 잘 반영한다. 제도적 변화가 없더라도 소득구간 내에서도 소득분포가 변하여 실효세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영향은 소득구간이 짧을수록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통계연보』의 소득구간 정보가 제약적이긴 하지만 소득구간을 최대한 세분화하여 분석한다.

소득분포는 『국세통계연보』의 소득구간별 신고인원의 분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위 방법론에서 기준년도인 $t-1$ 년도와 현재년도인 t 년도의 소득분포는 자료에서 직접적으로 주어진다. 하지만 $t-1$ 년도와 t 년도 사이에 소득분포를 결정하는 소득의 평균과 분산 중 어느 하나만 변화했을 경우의 소득분포는 특정한 가정을 통해 추정해야만 한다. 이때, 소득분포의 분산은 변하지 않고 평균만 변할 경우 소득구간별 평균소득의 변화율은 전체 평균소득의 변화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을 통해 각 소득구간별로 소득분포의 평균만 변화했을 경우의 평균소득이 도출된다. 소득분포의 변화는 각 소득구간별 신고인원 비중의 변화를 통해 반영되는데, 소득구간별로 실제 평균소득

과 앞에서 도출한 평균만 변화했을 경우의 평균소득의 차이가 해당 소득구간의 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신고인원의 비중이 다음 소득구간으로 이동한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최상위 소득구간은 상한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소득구간의 크기를 결정할 수 없다. 이에 최상위 소득구간에서 소득은 균일분포(uniform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균일분포하에서는 소득구간의 하한과 평균에 대한 정보를 통해 상한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소득분포의 분산을 고정시키고 평균소득을 먼저 변화시킨다면 기준년도의 분산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평균소득에 대한 정보로 $t-1$ 년도의 자료를 이용한다. 반면 평균소득을 고정시키고 분산을 먼저 변화시킨다면 현재년도의 분산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평균소득에 대한 정보로 t 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Ⅲ. 근로소득세 수입 변동요인 분해

1. 분석자료

본고에서는 2011~2016년도 귀속소득에 대한 『국세통계연보』상의 소득분포와 결정세액분포 자료를 통해 앞에서 설명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세수입 변동의 요인분해를 실시한다. 『국세통계연보』상의 소득분포와 결정세액분포는 제약적인 정보만을 포함하고 있으나, 실제 세수입의 모집단에 대한 자료라는 점에서 다른 통계들에 비해 가장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정패널조사나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같은 미시자료를 이용한 분석도 가능하나 이러한 자료에는 고소득층이 과소표집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소득분포가 소득세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고소득층에 대한 충분한 표본 확보가 중요한데, 일반적인 미시자료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한편, 본고에서는 실제 세수입 자료가 아닌 귀속연도의 결정세액 자료를 활용한다. 실제 세수입에는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 가산세 등과 같은 과세행정상의 요인들로 인한 세수입 변동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제Ⅱ장에서 논의한 세수입 변동의 요인분해에는 이러한 과세행정상의 요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본고에서는
2011~2016년도
귀속소득에 대한
『국세통계연보』상의
소득분포와 결정세액분포
자료를 통해
앞에서 설명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세수입
변동의 요인분해를
실시한다.

과세소득은
2011년 433조원에서
2016년 596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결정세액 또한
2011년 18조원에서
2016년 31조원으로
약 1.7배 증가하였다.

이에 세수입에서 과세행정상의 요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결정세액 정보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2011~2016년의 근로소득세 신고인원 수, 과세소득 및 결정세액, 실효세율의 추이는 <표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고인원 수는 2011년 1,548만여명에서 2016년 1,767만명으로 매년 1.52~3.8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과세소득은 2011년 433조원에서 2016년 596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결정세액 또한 2011년 18조원에서 2016년 31조원으로 약 1.7배 증가하였다. 과세소득 대비 결정세액으로 정의되는 실효세율 또한 2011년 4.11%에서 2016년 5.18%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2> 근로소득세 신고 총계자료

(단위: 명, 백만원, %, %p)

	연도	총급여 신고인원 수	과세소득	결정세액	실효세율
규모	2011	15,480,508	433,266,649	17,801,868	4.11%
	2012	15,716,148	466,684,972	19,971,211	4.28%
	2013	16,295,073	498,028,290	22,287,305	4.48%
	2014	16,629,769	528,660,069	25,397,795	4.80%
	2015	17,263,158	562,509,592	28,252,845	5.02%
	2016	17,668,285	595,990,661	30,853,854	5.18%
증가 규모	2012	235,640	33,418,322	2,169,343	0.17%p
	2013	578,925	31,343,319	2,316,093	0.20%p
	2014	334,696	30,631,778	3,110,490	0.33%p
	2015	633,389	33,849,523	2,855,050	0.22%p
	2016	405,127	33,481,069	2,601,009	0.15%p
증가율	2012	1.52%	7.71%	12.19%	-
	2013	3.68%	6.72%	11.60%	-
	2014	2.05%	6.15%	13.96%	-
	2015	3.81%	6.40%	11.24%	-
	2016	2.35%	5.95%	9.21%	-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3>~<표 5>에서는 소득구간별로 신고인원과 과세소득, 그리고 결정세액의 규모와 비중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에서 소득구간별 신고인원의 분포를 살펴보면 1천만원 이하의 신고인원 비중은 2011년도 28.15%에서 2016년

18.87%로 감소 추세에 있다. 반면 소득 3천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신고인원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평균 소득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매년 일정 비율의 납세자가 현재의 소득구간에서 상위 소득구간으로 이동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3〉 소득구간별 신고인원 분포(근로소득세)

(단위: 명,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규모	1천만원 이하	4,357,978	3,730,017	3,724,844	3,434,784	3,539,985	3,334,672
	2천만원 이하	3,624,759	3,906,324	3,983,345	4,008,614	4,046,838	4,023,118
	3천만원 이하	2,314,565	2,471,883	2,589,484	2,798,469	2,930,090	3,144,981
	4천 5백만원 이하	2,203,289	2,325,659	2,450,528	2,591,256	2,665,817	2,827,013
	6천만원 이하	1,302,218	1,401,779	1,480,931	1,572,492	1,610,675	1,669,561
	8천만원 이하	930,856	1,038,172	1,124,751	1,197,670	1,303,229	1,375,500
	1억원 이하	385,181	426,839	468,973	500,078	570,400	640,114
	2억원 이하	321,709	369,823	421,313	470,623	533,347	583,421
	3억원 이하	23,470	27,745	30,825	33,429	37,649	42,407
	5억원 이하	10,535	11,811	13,262	14,921	17,112	18,659
	10억원 이하	4,363	4,530	5,141	5,565	6,112	6,700
	10억원 초과	1,585	1,566	1,676	1,868	1,904	2,139
	합계	15,480,508	15,716,148	16,295,073	16,629,769	17,263,158	17,668,285
	비중	1천만원 이하	28.15	23.73	22.86	20.65	20.51
2천만원 이하		23.41	24.86	24.45	24.11	23.44	22.77
3천만원 이하		14.95	15.73	15.89	16.83	16.97	17.80
4천 5백만원 이하		14.23	14.80	15.04	15.58	15.44	16.00
6천만원 이하		8.41	8.92	9.09	9.46	9.33	9.45
8천만원 이하		6.01	6.61	6.90	7.20	7.55	7.79
1억원 이하		2.49	2.72	2.88	3.01	3.30	3.62
2억원 이하		2.08	2.35	2.59	2.83	3.09	3.30
3억원 이하		0.15	0.18	0.19	0.20	0.22	0.24
5억원 이하		0.07	0.08	0.08	0.09	0.10	0.11
10억원 이하		0.03	0.03	0.03	0.03	0.04	0.04
10억원 초과		0.01	0.01	0.01	0.01	0.01	0.01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 소득구간은 과세대상근로소득(총급여) 기준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소득 3천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신고인원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평균 소득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매년 일정 비율의 납세자가 현재의 소득구간에서 상위소득구간으로 이동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소득구간별 총급여 분포를 보면, 1억~2억원 구간은 2011년 9.19%에서 2016년 12.26%로 3.07%p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표 4〉의 소득구간별 총급여 비중을 살펴보면 소득 6천만~10억원 구간의 비중이 증가하고, 그 외 소득구간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관찰된다. 특히 소득구간별 총급여 분포를 보면, 1억~2억원 구간은 2011년 9.19%에서 2016년 12.26%로 3.07%p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표 4〉 소득구간별 총급여 분포(근로소득세)

(단위: 백만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규모	1천만원 이하	21,102,785	18,121,671	17,985,282	16,293,567	17,610,432	16,431,322
	2천만원 이하	52,945,006	57,221,390	58,751,385	60,157,105	60,702,829	60,901,112
	3천만원 이하	57,102,142	60,969,865	63,843,103	68,889,460	72,192,247	77,505,487
	4천 5백만원 이하	81,244,225	85,684,667	90,350,540	95,548,675	98,278,987	104,181,160
	6천만원 이하	67,622,970	72,783,854	76,982,531	81,764,216	83,739,270	86,701,795
	8천만원 이하	63,669,581	71,180,210	77,280,932	82,407,512	90,015,468	95,122,267
	1억원 이하	34,280,198	37,960,869	41,645,554	44,418,314	50,589,315	56,596,422
	2억원 이하	39,820,466	45,702,828	52,225,163	58,416,865	66,502,912	73,060,828
	3억원 이하	5,609,051	6,634,415	7,373,044	7,998,637	8,997,459	10,129,109
	5억원 이하	3,933,493	4,405,463	4,959,726	5,582,249	6,398,405	6,983,554
	10억원 이하	2,919,615	3,027,631	3,428,861	3,713,159	4,043,949	4,448,368
	10억원 초과	3,017,117	2,992,109	3,202,169	3,470,310	3,438,319	3,929,236
합계	433,266,649	466,684,972	498,028,290	528,660,069	562,509,592	595,990,661	
비중	1천만원 이하	4.87	3.88	3.61	3.08	3.13	2.76
	2천만원 이하	12.22	12.26	11.80	11.38	10.79	10.22
	3천만원 이하	13.18	13.06	12.82	13.03	12.83	13.00
	4천 5백만원 이하	18.75	18.36	18.14	18.07	17.47	17.48
	6천만원 이하	15.61	15.60	15.46	15.47	14.89	14.55
	8천만원 이하	14.70	15.25	15.52	15.59	16.00	15.96
	1억원 이하	7.91	8.13	8.36	8.40	8.99	9.50
	2억원 이하	9.19	9.79	10.49	11.05	11.82	12.26
	3억원 이하	1.29	1.42	1.48	1.51	1.60	1.70
	5억원 이하	0.91	0.94	1.00	1.06	1.14	1.17
	10억원 이하	0.67	0.65	0.69	0.70	0.72	0.75
	10억원 초과	0.70	0.64	0.64	0.66	0.61	0.66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 소득구간은 과세대상근로소득(총급여) 기준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5〉의 소득구간별 결정세액 분포를 살펴보면 8천만~5억원 구간에서 결정세액의 비중이 증가하고 다른 구간에서는 감소하는 것이 관찰된다. 그중 1억~2억원 구간의 비중이 2011년 25.66%에서 2016년 30.76%로 5.1%p 증가하여 다른 소득구간과 비교해 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게 확대되었다.

소득구간별 결정세액 분포를 살펴보면 8천만~5억원 구간에서 결정세액의 비중이 증가하고 다른 구간에서는 감소하는 것이 관찰된다.

〈표 5〉 소득구간별 결정세액 분포(근로소득세)

(단위: 백만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규모	1천만원 이하	2,795	2,708	2,675	48	56	40
	2천만원 이하	166,687	173,540	182,064	67,354	68,699	75,655
	3천만원 이하	422,152	454,315	475,442	336,016	363,956	411,217
	4천 5백만원 이하	1,291,752	1,406,227	1,525,607	1,378,205	1,473,176	1,643,305
	6천만원 이하	2,004,693	2,251,703	2,480,273	2,568,638	2,716,312	2,827,924
	8천만원 이하	3,124,552	3,520,471	3,901,242	4,296,543	4,733,780	4,964,335
	1억원 이하	2,461,271	2,734,823	3,023,979	3,636,398	4,145,759	4,591,394
	2억원 이하	4,568,714	5,219,818	6,007,754	7,515,134	8,609,314	9,491,265
	3억원 이하	1,141,032	1,355,918	1,521,896	1,824,693	2,055,273	2,306,938
	5억원 이하	937,563	1,054,695	1,198,835	1,488,464	1,713,699	1,876,304
	10억원 이하	779,853	845,616	951,371	1,115,732	1,218,814	1,346,022
	10억원 초과	900,805	951,377	1,016,166	1,170,569	1,154,007	1,319,457
	합계	17,801,868	19,971,211	22,287,305	25,397,795	28,252,845	30,853,854
비중	1천만원 이하	0.02	0.01	0.01	0.00	0.00	0.00
	2천만원 이하	0.94	0.87	0.82	0.27	0.24	0.25
	3천만원 이하	2.37	2.27	2.13	1.32	1.29	1.33
	4천 5백만원 이하	7.26	7.04	6.85	5.43	5.21	5.33
	6천만원 이하	11.26	11.27	11.13	10.11	9.61	9.17
	8천만원 이하	17.55	17.63	17.50	16.92	16.76	16.09
	1억원 이하	13.83	13.69	13.57	14.32	14.67	14.88
	2억원 이하	25.66	26.14	26.96	29.59	30.47	30.76
	3억원 이하	6.41	6.79	6.83	7.18	7.27	7.48
	5억원 이하	5.27	5.28	5.38	5.86	6.07	6.08
	10억원 이하	4.38	4.23	4.27	4.39	4.31	4.36
	10억원 초과	5.06	4.76	4.56	4.61	4.08	4.28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 소득구간은 과세대상근로소득(총급여) 기준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최근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의 변동요인을 과세기반 요인과 실효세율 요인으로 분해한 결과 대체로 과세기반 요인으로 증가한 세수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2. 분석결과

근로소득세 증가에 대한 요인분해는 2요인 분해와 5요인 분해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표 6>은 세수입 증가분을 과세기반 요인과 실효세율 요인 등 2가지 요인으로 분해한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해당 표에 나타난 수치들의 의미를 설명하면, 2016년 총결정세액이 2조 6,010억원 증가하였는데 그중 과세기반 요인에 의한 결정세액 증가분이 약 1조 7,075억원이고, 실효세율 요인에 의한 결정세액이 증가분이 약 8,936억원임을 의미한다. 한편 비중에 해당하는 수치들은 2016년의 경우 총결정세액 증가분인 2조 6,010억원에서 과세기반에 의한 결정세액 증가분인 1조 7,075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5.65%이고, 마찬가지로 실효세율에 의한 증가분인 8,936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4.35%임을 의미한다.

최근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의 변동요인을 과세기반 요인과 실효세율 요인으로 분해한 결과 대체로 과세기반 요인으로 증가한 세수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 5년간 증가한 총세수에서 과세기반의 확대에 의하여 증가한 세수가 약 57.96%며, 실효세율의 상승으로 인하여 증가한 세수는 약 42.04%로 분석된다. 특히, 분석기간 중 가장 최근인 2016년의 경우 전년 대비 근로소득세 증가분 중 과세기반의 확대에 의한 증가분이 약 65.65%를 차지해 최근 5년 중 과세기반 요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2014년의 경우에는 실효세율의 상승으로 인한 세수입 증가분이 과세기반 확대에 의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2013년 세법개정으로 인한 제도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변동 2요인 분해

(단위: 백만원, %)

	귀속연도	결정세액 증가 ΔT	결정세액 증가 2요인 분해	
			과세기반 요인 $\Delta B \times \bar{\tau}$	실효세율 요인 $\Delta \tau \times \bar{B}$
금액	2012	2,169,343	1,401,587	767,756
	2013	2,316,093	1,371,973	944,120
	2014	3,110,490	1,421,206	1,689,284
	2015	2,855,050	1,663,167	1,191,883
	2016	2,601,010	1,707,458	893,551
	평균	2,610,397	1,513,078	1,097,319
	비중	2012	-	64.61
2013		-	59.24	40.76
2014		-	45.69	54.31
2015		-	58.25	41.75
2016		-	65.65	34.35
평균		-	57.96	42.04

출처: 저자 작성

〈표 7〉은 세수입 증가분을 5가지 요인으로 분해한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표 6〉에서 살펴본 두 가지 요인 중 과세기반 확대에 따른 효과는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납세인원 증가로 인한 효과와 평균소득 상승으로 인한 효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평균소득 상승 효과는 실효세율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의 효과다. 분석 결과 지난 5년간 결정세액 증가분 중 24.67%가 납세인원 증가로 인하여 발생했고, 33.3%가 평균소득의 상승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 평균소득의 상승 효과가 납세인원 증가 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2013년과 2015년의 경우는 납세인원 증가 효과가 평균소득 상승 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실효세율 증가 효과를 평균소득의 변화, 소득분포의 분산의 변화 그리고 제도적 변화로 인한 효과로 다시 분해한 결과, 대체로 평균소득의 변화가 결정세액을 증가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5년간 평균소득 증가는 소득세제가 누진적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실효세율을 상승시킴으로써 결정세액을 연평균 1조 1,979억원 증가시켰는데, 이는 전체 결정세액의 연평균 증가액인 2조 6,104억원 중 약 45.89%를 설명하는 수치다.

분석 결과 지난 5년간 결정세액 증가분 중 24.67%가 납세인원 증가로 인하여 발생했고, 33.3%가 평균소득의 상승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 평균소득의 상승 효과가 납세인원 증가 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분포 분산의 변화는
지난 5년간 평균적으로
결정세액을 5,039억원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 연도를 살펴보더라도
소득분포의 분산의 변화가
매년 결정세액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제도적 변화로 인하여 증가한 연평균 결정세액은 약 4,033억원으로 전체 연평균 결정세액 증가분의 약 15.45%를 설명한다. 특히, 2014년의 경우 제도적 변화로 인하여 결정세액이 1조 1,427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4년 다음으로 제도 변화로 인하여 결정세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해는 2013년이었는데, 2014년의 제도적 변화로 인한 증가폭은 2013년의 증가폭인 2,906억원보다 약 4배가량 높은 수치다. 이에 2014년은 전체 결정세액 증가폭이 3조 1,105억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은 2013년의 세법개정으로 인한 효과가 처음 적용된 해다. 2013년 세법개정에는 많은 제도적 변화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특별공제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것이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공제가 축소되고 최상위 과세표준 구간이 확대되는 등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로 인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소득분포 분산의 변화는 지난 5년간 평균적으로 결정세액을 5,039억원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 연도를 살펴보더라도 소득분포의 분산의 변화가 매년 결정세액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소득양극화 혹은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되면 이는 결정세액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평균소득이 일정한 상태에서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되면 고소득자의 소득은 증가하고 저소득자의 소득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론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이러한 경우 누진적인 소득세제하에서는 고소득자의 세부담 증가폭이 저소득자의 세부담 감소폭보다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결정세액은 증가해야 한다. 하지만 본고의 분석 결과에서 소득분포의 분산은 결정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 소득양극화나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뒤에서 살펴볼 종합소득세에 대한 분석에서도 나타난다. 이에 이러한 분석결과의 이유에 대해서는 뒤의 결론 부분에서 설명한다.

〈표 7〉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변동 5요인 분해

(단위: 백만원, %)

귀속 연도	결정세액 증가	과세기반 증가 요인분해			실효세율 증가 요인분해		
		납세인원 요인	평균소득 요인 (실효세율 고정)	평균소득 요인 (누진세 효과)	소득분포의 분산 요인	제도변화 요인	
		ΔT	$\Delta N \times \bar{b} \times \bar{\tau}$	$\Delta b \times \bar{N} \times \bar{\tau}$	$\Delta \tau(\mu) \times \bar{B}$	$\Delta \tau(\sigma) \times \bar{B}$	$\Delta \tau(\Omega) \times \bar{B}$
금액	2012	2,169,343	285,035	1,116,552	1,505,280	-987,198	249,674
	2013	2,316,093	763,494	608,479	818,517	-164,946	290,550
	2014	3,110,490	484,132	937,074	1,295,068	-748,474	1,142,691
	2015	2,855,050	1,001,698	661,469	939,370	-3,422	255,935
	2016	2,601,010	685,069	1,022,389	1,431,413	-615,268	77,406
	평균	2,610,397	643,886	869,193	1,197,929	-503,862	403,251
	비중	2012	-	13.14	51.47	69.39	-45.51
2013		-	32.96	26.27	35.34	-7.12	12.54
2014		-	15.56	30.13	41.64	-24.06	36.74
2015		-	35.09	23.17	32.90	-0.12	8.96
2016		-	26.34	39.31	55.03	-23.65	2.98
평균		-	24.67	33.30	45.89	-19.30	15.45

출처: 저자 작성

평균소득의 증가는 과세기반을 확대시킴과 동시에 누진적인 소득세제의 특성상 실효세율을 상승시킨다. 이에 두 효과를 모두 감안할 경우 지난 5년간 평균소득의 증가로 인해 결정세액이 연평균 2조 67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전체 결정세액의 연평균 증가폭인 2조 6,104억의 79.19%를 설명하는 수치이다.

요컨대,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2012~2016년 근로소득세 증가의 대부분은 평균소득의 증가로 설명된다. 납세인원의 증가 또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증가의 24.67%를 설명하여 세수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2013년의 세법개정은 2014년 결정세액 증가분의 36.74%를 차지해 소득세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소득분포의 분산은 소득세수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2012~2016년

근로소득세 증가의 대부분은
평균소득의 증가로 설명된다.

납세인원의 증가 또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증가의

24.67%를 설명하여

세수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의 추이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근로소득세와 달리
종합소득세의 경우
신고인원과 종합소득금액의
증가율 변동이 큰 편이다.
결정세액은
2011년 15조원에서
2016년 26조원으로
매년 8.87~13.31%의
증가율을 보였다.

IV. 종합소득세 수입 변동요인 분해

1. 분석자료

근로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또한 2011~2016년도 귀속소득에 대한 『국세통계연보』상의 소득분포와 결정세액분포 자료를 통해 세수입 변동 요인분해를 실시한다. 최근의 추이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근로소득세와 달리 종합소득세의 경우 신고인원과 종합소득금액의 증가율 변동이 큰 편이다. 신고인원 수는 2011년 396만명에서 2016년 587만명으로 매년 4.87~10.69%씩 증가해오고 있으며, 종합소득금액 역시 2011년 111조원에서 2016년 176조원으로 매년 6.62~13.08%씩 증가해왔다. 이에 결정세액은 2011년 15조원에서 2016년 26조원으로 매년 8.87~13.31%의 증가율을 보였다. 종합소득금액 대비 결정세액으로 정의되는 실효세율의 경우 대체로 매년 증가하였지만, 2012년은 전년에 비해 약 0.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4년의 경우 전년 대비 신고인원은 10.69% 증가하였지만, 소득금액은 7.75% 증가하여, 신고인원보다 소득의 증가 속도가 더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평균소득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다른 해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표 8〉 종합소득세 신고 총계자료

(단위: 명, 백만원, %, %p)

	연도	인원	종합소득금액	결정세액	실효세율
규모	2011	3,956,702	111,446,361	15,170,663	13.61%
	2012	4,352,929	126,023,230	16,901,032	13.41%
	2013	4,564,682	134,370,007	18,545,441	13.80%
	2014	5,052,552	144,782,717	20,797,821	14.36%
	2015	5,482,678	162,033,902	23,566,493	14.54%
	2016	5,874,671	176,229,625	25,657,565	14.56%
증가 규모	2012	396,227	14,576,869	1,730,369	-0.20%p
	2013	211,753	8,346,777	1,644,409	0.39%p
	2014	487,870	10,412,710	2,252,380	0.56%p
	2015	430,126	17,251,185	2,768,672	0.18%p
	2016	391,993	14,195,723	2,091,072	0.01%p
증가율	2012	10.01%	13.08%	11.41%	-
	2013	4.86%	6.62%	9.73%	-
	2014	10.69%	7.75%	12.15%	-
	2015	8.51%	11.92%	13.31%	-
	2016	7.15%	8.76%	8.87%	-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9〉~〈표 11〉에서는 소득구간별로 신고인원과 종합소득금액, 그리고 결정세액의 규모와 비중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표 9〉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의 분포를 살펴보면,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대부분이 소득 1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의 경우 해당 구간에 속한 신고자의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약 49.81%였으며, 이 비율은 점차 감소였지만 2016년에도 약 45.44%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2011년과 2016년을 비교해보면 소득 1천만~10억원 구간의 신고인원 비중은 점차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평균적인 소득수준은 지난 5년간 점차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의 분포를 살펴보면,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대부분이 소득 1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소득구간별 신고인원 분포(종합소득세)

(단위: 명,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규모	1천만 이하	1,970,777	2,068,090	2,161,456	2,457,500	2,596,912	2,669,415
	2천만 이하	839,424	895,125	946,565	1,046,979	1,148,473	1,267,641
	4천만 이하	541,452	645,769	676,145	751,328	838,369	959,357
	6천만 이하	221,105	301,430	296,678	291,846	325,538	363,909
	8천만 이하	127,762	156,165	161,966	159,911	184,011	197,780
	1억 이하	75,089	88,749	97,263	99,438	113,174	120,528
	2억 이하	119,304	132,225	151,355	163,264	184,961	197,071
	3억 이하	29,139	31,198	35,492	39,517	43,470	46,434
	5억 이하	18,015	19,112	21,590	24,638	27,310	29,932
	10억 이하	9,755	10,089	10,896	12,247	13,879	15,465
	10억 초과	4,880	4,977	5,276	5,884	6,581	7,139
	합계	3,956,702	4,352,929	4,564,682	5,052,552	5,482,678	5,874,671
비중	1천만 이하	49.81	47.51	47.35	48.64	47.37	45.44
	2천만 이하	21.22	20.56	20.74	20.72	20.95	21.58
	4천만 이하	13.68	14.84	14.81	14.87	15.29	16.33
	6천만 이하	5.59	6.92	6.50	5.78	5.94	6.19
	8천만 이하	3.23	3.59	3.55	3.16	3.36	3.37
	1억 이하	1.90	2.04	2.13	1.97	2.06	2.05
	2억 이하	3.02	3.04	3.32	3.23	3.37	3.35
	3억 이하	0.74	0.72	0.78	0.78	0.79	0.79
	5억 이하	0.46	0.44	0.47	0.49	0.50	0.51
	10억 이하	0.25	0.23	0.24	0.24	0.25	0.26
	10억 초과	0.12	0.11	0.12	0.12	0.12	0.12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 소득구간은 종합소득금액 기준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10〉을 통해 2011년과 2016년 소득구간별 종합소득금액의 분포를 비교해보면, 대체로 2천만~5억원 구간의 비중은 확대되고 소득분포의 양 꼬리에 위치한 신고자의 소득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 소득구간인 소득 1천만원 이하 신고자의 소득비중은 2011년 8.53%에서 2016년 7.11%로 감소하였고, 최고 소득구간인 소득 10억원 초과 신고자의 소득비중 또한 2011년 10.71%에서 2016년 9.51%로 감소하였다.

**최저 소득구간인
소득 1천만원 이하
신고자의 소득비중은
2011년 8.53%에서
2016년 7.11%로
감소하였고,
최고 소득구간인
소득 10억원 초과
신고자의 소득비중 또한
2011년 10.71%에서
2016년 9.51%로
감소하였다.**

〈표 10〉 소득구간별 종합소득금액 분포(종합소득세)

(단위: 백만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규모	1천만 이하	9,502,168	9,932,915	10,391,453	11,303,396	12,060,896	12,525,029
	2천만 이하	11,879,329	12,695,177	13,438,891	14,990,907	16,426,889	18,194,533
	4천만 이하	15,126,804	18,335,661	18,997,249	21,049,100	23,454,986	26,874,906
	6천만 이하	10,851,450	14,751,620	14,513,085	14,308,523	15,940,313	17,783,670
	8천만 이하	8,815,601	10,760,202	11,180,758	11,073,094	12,705,841	13,663,696
	1억 이하	6,691,599	7,905,870	8,672,976	8,893,661	10,103,176	10,756,788
	2억 이하	16,181,222	17,852,308	20,452,093	22,187,003	25,050,113	26,690,752
	3억 이하	7,024,885	7,529,645	8,581,612	9,576,170	10,502,754	11,212,715
	5억 이하	6,830,648	7,219,374	8,157,922	9,330,984	10,333,144	11,337,697
	10억 이하	6,610,195	6,843,741	7,351,066	8,252,023	9,354,677	10,436,871
	10억 초과	11,932,460	12,196,717	12,632,902	13,817,856	16,101,113	16,752,968
	합계	111,446,361	126,023,230	134,370,007	144,782,717	162,033,902	176,229,625
비중	1천만 이하	8.53	7.88	7.73	7.81	7.44	7.11
	2천만 이하	10.66	10.07	10.00	10.35	10.14	10.32
	4천만 이하	13.57	14.55	14.14	14.54	14.48	15.25
	6천만 이하	9.74	11.71	10.80	9.88	9.84	10.09
	8천만 이하	7.91	8.54	8.32	7.65	7.84	7.75
	1억 이하	6.00	6.27	6.45	6.14	6.24	6.10
	2억 이하	14.52	14.17	15.22	15.32	15.46	15.15
	3억 이하	6.30	5.97	6.39	6.61	6.48	6.36
	5억 이하	6.13	5.73	6.07	6.44	6.38	6.43
	10억 이하	5.93	5.43	5.47	5.70	5.77	5.92
	10억 초과	10.71	9.68	9.40	9.54	9.94	9.51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 소득구간은 종합소득금액 기준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소득구간별 결정세액의 분포는 전체 신고자 중 소득 8천만~10억원에 속한 신고자의 결정세액 비중은 2011년에 비해 2016년 증가한 반면 다른 소득구간 신고자의 결정세액 비중은 대체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에서 살펴본 소득구간별 결정세액의 분포는 〈표 10〉의 종합소득금액의 분포와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인다. 전체 신고자 중 소득 8천만~10억원에 속한 신고자의 결정세액 비중은 2011년에 비해 2016년 증가한 반면 다른 소득구간 신고자의 결정세액 비중은 대체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소득구간별 결정세액 분포(종합소득세)

(단위: 백만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규모	1천만 이하	155,148	165,831	177,179	81,007	86,128	104,388
	2천만 이하	341,454	365,624	389,484	333,200	382,013	435,243
	4천만 이하	811,113	937,499	1,088,242	1,124,528	1,262,250	1,439,125
	6천만 이하	852,391	1,071,326	1,104,741	1,141,400	1,282,593	1,438,539
	8천만 이하	872,641	1,037,744	1,095,111	1,167,815	1,341,333	1,457,162
	1억 이하	810,809	942,276	1,032,755	1,132,225	1,288,278	1,383,516
	2억 이하	2,772,573	3,034,801	3,477,488	4,019,270	4,530,998	4,856,483
	3억 이하	1,590,042	1,707,136	1,968,453	2,341,532	2,568,199	2,761,447
	5억 이하	1,723,978	1,856,061	2,123,263	2,591,442	2,894,189	3,195,885
	10억 이하	1,807,397	1,964,933	2,139,617	2,491,629	2,852,164	3,214,242
	10억 초과	3,433,117	3,817,801	3,949,108	4,373,773	5,078,348	5,371,536
	합계	15,170,663	16,901,032	18,545,441	20,797,821	23,566,493	25,657,566
비중	1천만 이하	1.02	0.98	0.96	0.39	0.37	0.41
	2천만 이하	2.25	2.16	2.10	1.60	1.62	1.70
	4천만 이하	5.35	5.55	5.87	5.41	5.36	5.61
	6천만 이하	5.62	6.34	5.96	5.49	5.44	5.61
	8천만 이하	5.75	6.14	5.91	5.62	5.69	5.68
	1억 이하	5.34	5.58	5.57	5.44	5.47	5.39
	2억 이하	18.28	17.96	18.75	19.33	19.23	18.93
	3억 이하	10.48	10.10	10.61	11.26	10.90	10.76
	5억 이하	11.36	10.98	11.45	12.46	12.28	12.46
	10억 이하	11.91	11.63	11.54	11.98	12.10	12.53
	10억 초과	22.63	22.59	21.29	21.03	21.55	20.94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 소득구간은 종합소득금액 기준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 분석결과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변동요인을 과세기반 요인과 실효세율 요인으로 분해하여 살펴보면 과세기반 확대에 의한 효과가 결정세액 증가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종합소득세의 결정세액은 지난 5년간 연평균 2조 970억 원씩 증가하였는데, 이 중 과세기반 확대에 증가한 결정세액이 1조 8,262억 원으로 약 87.08%를 차지한다. 한편, 2012년의 경우 전체 결정세액은 1조 7,304억 원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세율의 변화는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오히려 2,392억 원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5년간 총결정세액 증가폭의 약 77.8%가 납세인원의 증가로 설명된다. 특히, 2012년과 2014년에는 납세인원 증가 효과가 결정세액 증가분의 9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12〉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변동 2요인 분해

(단위: 백만원, %)

	귀속연도	결정세액 증가 ΔT	결정세액 증가 2요인 분해	
			과세기반 증가 효과 $\Delta B \times \bar{\tau}$	실효세율 증가 효과 $\Delta \tau \times \bar{B}$
			금액	
	2012	1,730,369	1,969,595	-239,226
	2013	1,644,409	1,135,697	508,712
	2014	2,252,380	1,466,454	785,926
	2015	2,768,672	2,493,575	275,097
	2016	2,089,374	2,065,646	23,728
	평균	2,097,041	1,826,193	270,847
비중				
	2012	-	113.83	-13.83
	2013	-	69.06	30.94
	2014	-	65.11	34.89
	2015	-	90.06	9.94
	2016	-	98.86	1.14
	평균	-	87.08	12.92

출처: 저자 작성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변동요인을 더 세분화하여 5가지 요인으로 분해한 결과를 살펴보면, 납세인원의 변화가 결정세액의 증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5년간 총결정세액 증가폭의 약 77.8%가 납세인원의 증가로 설명된다. 특히, 2012년과 2014년에는 납세인원 증가 효과가 결정세액 증가분의 9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과세자료상 신고인원이 증가

납세인원 다음으로는 제도적 변화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5년 평균을 살펴보면 제도적 변화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증가폭 중 약 13.4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는 원인으로는 과세당국이 지속적으로 사업자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는 등의 과세행정상의 요인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정확한 원인에 대한 분석은 본고의 연구의 범위에서 벗어나 추가적인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표 13〉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변동 5요인 분해

(단위: 백만원, %)

	귀속 연도	결정세액 증가 ΔT	과세기반 증가 요인분해		실효세율 증가 요인분해		
			납세인원 요인 $\Delta N \times \bar{b} \times \bar{\tau}$	평균소득 요인 (실효세율 고정) $\Delta b \times \bar{N} \times \bar{\tau}$	평균소득 요인 (누진세 효과) $\Delta \tau(\mu) \times \bar{B}$	소득분포의 분산 요인 $\Delta \tau(\sigma) \times \bar{B}$	제도변화 요인 $\Delta \tau(\Omega) \times \bar{B}$
금액	2012	1,730,369	1,556,642	412,953	187,959	-686,606	259,420
	2013	1,644,409	861,412	274,285	129,733	119,730	259,250
	2014	2,252,380	2,048,120	-581,665	-275,113	465,212	595,827
	2015	2,768,672	1,959,538	534,037	253,732	-42,241	63,606
	2016	2,089,374	1,732,248	333,399	159,972	-369,582	233,337
	평균	2,097,041	1,631,592	194,602	91,257	-102,697	282,288
비중	2012	-	89.96	23.87	10.86	-39.68	14.99
	2013	-	52.38	16.68	7.89	7.28	15.77
	2014	-	90.93	-25.82	-12.21	20.65	26.45
	2015	-	70.78	19.29	9.16	-1.53	2.30
	2016	-	82.91	15.96	7.66	-17.69	11.17
	평균		77.80	9.28	4.35	-4.90	13.46

출처: 저자 작성

납세인원 다음으로는 제도적 변화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5년 평균을 살펴보면 제도적 변화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증가폭 중 약 13.4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근로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제도적 변화는 2014년의 결정세액 증가폭 중 약 26.4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해에 비해 높은 설명력을 갖는다. 이는 2013년 세법개정이 종합소득자의 실효세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세수 확대에도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평균소득의 상승 또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앞에서 살펴봐왔듯이 평균소득은 과세기반과 실효세율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평균소득 증가가 과세기반의 확대를 통해 증가시킨 결정세액은 연평균 약 1,946억

원으로 전체 결정세액 연평균 증가폭의 약 9.28%를 설명하며, 실효세율의 상승을 통해 증가시킨 결정세액은 연평균 약 913억원으로 전체 결정세액 증가폭의 약 4.35%를 차지한다. 이에 두 효과를 합한 평균소득의 증가 효과는 결정세액 증가의 약 13.63%를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14년의 경우 평균소득의 변화가 오히려 결정세액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표 8>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2014년의 경우 납세자의 평균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에 비해 감소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소득분포의 분산은 결정세액을 연평균 약 1,027억원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분석 결과와 유사하다. 다만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득분포의 분산으로 인한 결정세액 감소가 연평균 결정세액 증가폭의 약 4.9%를 차지하는 데 비해, 근로소득세의 경우 19.3%를 차지해 소득분포의 변화가 결정세액의 변동을 설명하는 비중 측면에서는 차이가 존재한다.

요약하면, 근로소득세는 평균소득이 결정세액의 증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반면, 종합소득세는 납세인원의 증가가 결정세액 증가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평균소득 증가와 제도적 변화는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증가에 대하여 유사한 설명력을 갖는다. 한편 소득분포의 분산은 근로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결정세액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V. 결론

본고에서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2011~2016년 결정세액 증가에 대한 요인분해를 실시하였다. 요인은 크게 과세기반 요인과 실효세율 요인으로 분해할 수 있다. 또한 이를 더 세부적으로 분해하면 과세기반 요인은 납세인원 요인과 평균소득 요인(실효세율 고정)으로, 그리고 실효세율 요인은 평균소득 요인(누진세 효과)과 소득분포의 분산, 제도적 요인으로 분해할 수 있다.

분석 결과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실효세율 인상으로 인한 효과보다는 과세기반 확대로 인하여 결정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과세기반 중에서도 근로소득세는 평균소득의 증가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 반면, 종합소득세는 납세자 수의 증가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3년 세법개정 또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결정세액 증가에 상당한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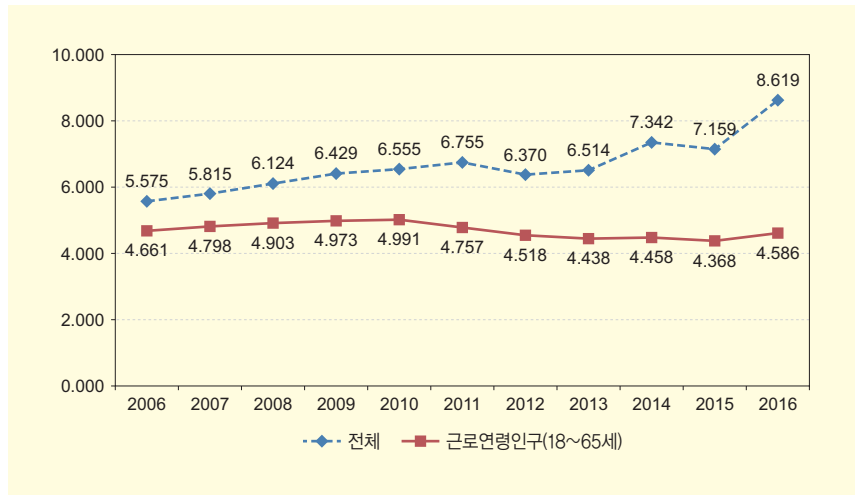
평균소득 증가와 제도적 변화는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증가에 대하여 유사한 설명력을 갖는다. 한편 소득분포의 분산은 근로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결정세액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소득분포의 분산의 변화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모두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소득양극화 또는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과 상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분포의 분산의 변화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모두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소득양극화 또는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과 상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발표하는 분배지표를 살펴보면 시장소득에 대한 P90-P10 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2006년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장소득은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의 약 5.58배였다. 하지만 계층 간 소득격차는 점차 확대되었으며, 가장 최근인 2016년에는 P90-P10 배율이 약 8.62배로 2015년의 7.16배에서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그림 1] P90-P10 배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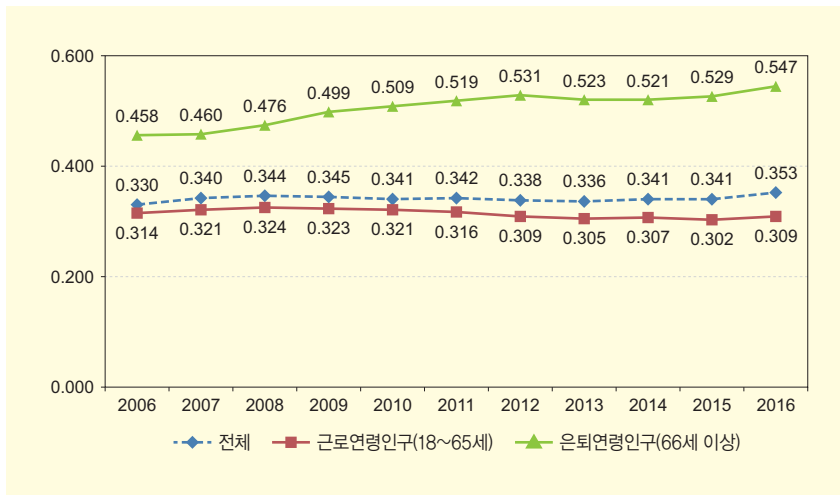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소득분배지표(전체가구, 성별 및 연령구분별)

하지만 소득분배지표를 근로연령인구와 은퇴연령인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조금 다른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근로연령인구의 P90-P10 배율은 그 증가세가 뚜렷하지 않다. 오히려 본고의 분석 기간의 처음과 끝인 2011년과 2016년의 P90-P10 배율을 살펴보면, 근로연령인구의 경우 4.76배에서 4.59배로 감소하였다.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를 살펴보다라도 유사한 양상이 관찰된다. 66세 이상인 은퇴연령인구의 지니계수는 2006년 이후 대체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2016년의 지니계수는 0.547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반면 근로연령인구의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근로연령인구 간의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근로연령인구의 2016년의 지니계수는 0.309로 2011년의 0.316보다 낮았다. 즉,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와 소득불평등도는 고령화로 인한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로연령인구의
2016년의 지니계수는
0.309로 2011년의
0.316보다 낮았다.
즉,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와
소득불평등도는 고령화로
인한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지니계수 추이



출처: 통계청, 소득분배지표(전체가구, 성별 및 연령구분별)

소득세는 과세대상 소득에 한정하여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분포의 변화에 따른 소득세 결정세액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소득분포보다는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들의 소득분포에 영향을 받는다. 은퇴연령인구의 경우 근로소득 등의 과세 소득보다는 이전소득 등의 비과세 소득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앞에서 살펴본 소득분배지표 중 은퇴연령인구를 제외한 근로연령인구의 소득분포가 소득세 결정세액과 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에 소득분포의 변화가 소득세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는 결과는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국세통계연보』상의 정보만을 활용하여 소득분포의 영향을 분

석하였다. 하지만 『국세통계연보』상의 소득분포는 몇 개의 소득구간에 대한 평균적인 소득 및 세부담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여 정확한 소득분포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소득분포를 추정하는 연구로는 Atkinson(2005), 박명호·전병목(2014), 김낙연(2016) 등이 존재한다. 특히, Atkinson(2005)과 박명호·전병목(2014)은 Mean Split Histogram 방법론을 사용하여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집중도를 추정하였다. 이에 향후 연구로 소득분포를 보다 정밀하게 추정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제48호, 2018. 1.
 김낙연, 「한국의 개인소득 분포: 소득세 자료에 대한 접근」, 『한국경제의 분석』, 제22권 제3호, 2016. 12, pp. 147~208.
 박명호, 「부가가치세 세부담 결정요인 분석」, 『재정포럼』, 제235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1, pp. 6~22.
 박명호·전병목, 『소득분배 변화와 정책과제: 소득집중도와 소득이동성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14-0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12.
 박형수·박명호·김학수·정재호, 『중장기 세수 변동요인 분석 및 향후 전망』, 연구보고서 12-02, 한국조세연구원, 2012. 12.
 안종석, 「소득세 부담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재정포럼』, 제234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12, pp. 6~24.

Atkinson, Anthony B., "Top Incomes in the UK over the 20th Century,"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168(2), 2005, pp. 325~342.

〈통계자료〉

통계청, 소득분배지표(전체가구, 성별 및 연령구분별),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

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
 Div, 최종접속일: 2018. 1. 15.

〈부록〉 요인 분해 수식 증명

(명제) 세수가 식 (1)과 같이 $T_t = B_t \times \tau_t$ 로 결정될 경우 세수의 증가 요인은 식 (2)인 $\Delta T_t = \Delta B_t \times \overline{\tau_{t,t-1}} + \Delta \tau_t \times \overline{B_{t,t-1}}$ 와 같이 분해된다.

(증명)

$$\begin{aligned} \Delta T_t &= (B_t \times \tau_t) - (B_{t-1} \times \tau_{t-1}) \\ &= (B_t \times \tau_t) - (B_{t-1} \times \tau_t) + (B_{t-1} \times \tau_t) - (B_{t-1} \times \tau_{t-1}) \\ &= (\Delta B_t \times \tau_t) - (\Delta \tau_t \times B_{t-1}) \end{aligned}$$

유사하게,

$$\begin{aligned} \Delta T_t &= (B_t \times \tau_t) - (B_{t-1} \times \tau_{t-1}) \\ &= (B_t \times \tau_t) - (B_t \times \tau_{t-1}) + (B_t \times \tau_{t-1}) - (B_{t-1} \times \tau_{t-1}) \\ &= (\Delta B_t \times \tau_{t-1}) - (\Delta \tau_t \times B_t) \end{aligned}$$

즉,

$$\begin{aligned} 2\Delta T_t &= (\Delta B_t \times \tau_t) + (\Delta \tau_t \times B_{t-1}) + (\Delta B_t \times \tau_{t-1}) + (\Delta \tau_t \times B_t) \\ &\Rightarrow \Delta T_t = \Delta B_t \times \left(\frac{\tau_t + \tau_{t-1}}{2} \right) + \Delta \tau_t \times \left(\frac{B_t + B_{t-1}}{2} \right) \\ &\Rightarrow \Delta T_t = \Delta B_t \times \overline{\tau_{t,t-1}} + \Delta \tau_t \times \overline{B_{t,t-1}} \end{aligned}$$

지역별 의료 서비스 이용 변이를 이용한 보건·의료재정 절감 가능 규모 추정에 관한 소고

I. 서론



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whkim@kipf.re.kr)

한국의 의료비 지출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의료비 지출은 2016년 GDP 대비 7.7% 규모이며, 증가 속도는 2016년 6.3%로 집계되어 헝가리, 터키, 아이슬란드에 이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OECD Health Statistics 2017). 급속한 고령화,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향후 의료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7년 8월에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본격적인 시행은 그동안 비급여 영역에 있던 3,800여개의 의료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급여화하며 의료비 지출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의료 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의료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는 보건·의료 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과정에서 건강보험 급여의 지출 효율화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¹⁾ 건강보험의 보장 대상을 대대적으로 확대하여 2,000만명의 미보험자를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킨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들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 효율화를 위한 책임의료조직(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ACO) 활성화, 묶음 수가(bundle payment)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 시행되고 있다.

의료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각의 임상적 상황에서 의료지침에 근거한 정확한 의료 서비스가 전달되었는지 미시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하거나,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제도 및 환자 본인부담의 정교한 설계를 통해 의료 공급자 및 환자의 행태를 효율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정책 시도들에 앞서 의료 성과(health outcome)를 현 상태로 유지하면

서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보건·의료 재정의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는 것도 보건·의료 재정 운용의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면 보건·의료 재정 추계 및 효율적인 보건·의료 체계를 위한 정책 설계에 유용한 기초 정보가 될 것이다.

의료 지출의 효율화 및 보건·의료 재정 절감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자들은 그동안 지역간 의료 이용의 변이(regional variation in health care)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지역간 의료 서비스 이용량의 격차가 나타났으며 이 격차가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 이를 개선의 대상으로 고려하는 관점은 미국 다트머스 대학(Dartmouth College)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지난 몇 십년간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이들에 의해 65세 이상 대상의 공보험인 미국 메디케어(Medicare)의 지출 수준이 지역 간 격차를 나타내며, 이러한 격차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의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예를 들어 질병, 가격 등—을 통제한 이후에도 지속된다는 사실이 발표되었다. Skinner and Fisher(1997)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지출을 보이는 지역을 기준으로 다른 모든 지역의 의료비 지출이 이 지역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미국 메디케어 지출 규모가 20%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비슷한 방법을 이용한 후속 연구들이 미국 내 전체 의료비의 20~30% 정도를 의료 성과의 하락 없이 절감 가능한 재정 규모 수준으로 주장하고 있으며(Berwick and Hackbarth, 2012), 몇몇 연구자는 이를 의료 낭비(medical waste)로 명명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지역간 의료 서비스 이용의 격차를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우리나라 시군구의 1인당 의료비 지출 수준의 격차를 살펴보고, 지역별 기초 정보와 지역 보건·의료 정보를 통제한 이후에도 이러한 격차가 지속적으로 관찰되는지 확인한다. 뒤이어 이러한 격차가 보건·의료 재정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보건·의료 재정의 규모를 대략적으로 가늠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지역간 의료 서비스 이용의 격차를 우리나라 자료를 활용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우리나라 시군구의 1인당 의료비 지출 수준의 격차를 살펴보고, 지역별 기초 정보와 지역 보건·의료 정보를 통제한 이후에도 이러한 격차가 지속적으로 관찰되는지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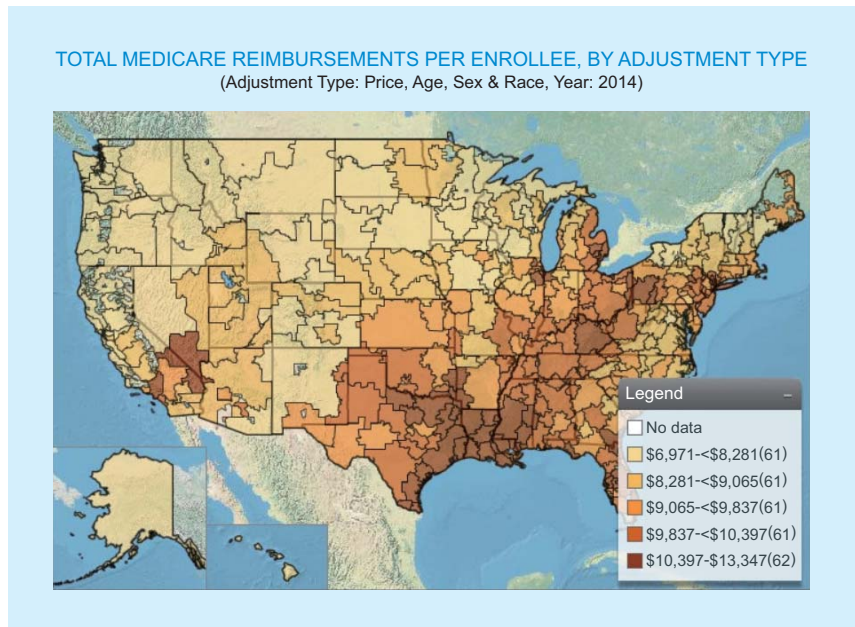
1)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 <http://medicare1.nhis.or.kr/hongbo/static/html/minisite/index.html>(접속일자: 2018.2.11.)

1938년 J. Alison Glover는 영국 및 웨일즈 지역에 거주하는 취학기 아동의 편도선 절제술 시술 건수의 지역별 평균 시술률이 격차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지역의 인구밀도, 빈곤 수준, 주거 환경, 기후, 의료시설의 효율성 등 고려할 만한 주요 변수들과 상관관계가 없음을 주장했다.

II. 선행 연구

지역간 의료 서비스 이용 변이에 관심을 가지는 많은 해외 연구들은 지역간 특정 서비스 이용 수준의 격차 혹은 의료비 지출의 격차를 보여주고,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찰 가능한 요인들을 고려하고 난 이후에도 이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방식의 연구는 최초로 1938년 J. Alison Glover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영국 및 웨일즈 지역에 거주하는 취학기 아동의 편도선 절제술 시술 건수의 지역별 평균 시술률이 격차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지역의 인구밀도, 빈곤 수준, 주거 환경, 기후, 의료시설의 효율성 등 고려할 만한 주요 변수들과 상관관계가 없음을 주장했다 (Glover, 1938).

[그림 1] 다트머스 국가 보건·의료 지도의 예(미국)



출처: The Dartmouth Atlas of Health Care, <http://www.dartmouthatlas.org/>, (접속일자: 2018.2.11.)

이 연구 주제에 대해서 가장 주목을 받아온 연구자는 다트머스 대학의 John Wennberg이다. 1973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 그는 미국 버몬트 주의 병원 입원 건수, 수술 건수, 비용 지출 자료를 통해, 주(州) 내에서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 지역 단위 사이에서도 의료 서비스의 이용 수준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밝혀냈다(Wennberg and Gittelsohn, 1973). 이후 다트머스 대학의 많은 연구자들은 후속 연구를 발표하면서, 관찰 가능한 관련 정보들로 설명되지 않는 의료 이용의 차이를 ‘설명되지 않는 변이(unwarranted variations)’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의료 서비스 전달의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증거이자 효율적인 개선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로 인식해왔다. 이들은 미국 전역의 지도를 의료권으로 분리하고 지역간 의료 비용의 격차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국가 보건·의료 지도(The Atlas of Health Care)를 제시하기도 했다([그림 1] 참조).

한편, 미국과 같이 국가 면적이 넓어 의료 서비스의 지역화(localization)가 비교적 뚜렷한 국가뿐 아니라, 벨기에, 스위스, 포르투갈 등 면적이 넓지 않아 지역화의 정도가 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에서도 소규모 지역간 의료 서비스 이용의 격차가 발견되고 있다. OECD는 벨기에의 무릎 관절경 검사, 심장 혈관 카테터 수술, MRI/CT 검사, 스위스의 무릎 관절경 검사, 포르투갈의 관상동맥 우회술, 자궁적출술 등의 이용 수준을 예로 분석하여 소규모 국가에서도 지역간 의료 서비스 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주장했다(OECD, 2014). 이는 우리나라와 같은 의료 서비스의 지역화 정도가 낮은 국가에서도 의료 서비스 이용의 지역간 격차를 확인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주요 질병들을 대상으로 성, 연령 등의 정보를 보정한 이후 입원율, 재원일수, 수술률 등의 지역간 차이를 발견하는 많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왔다(이선희 외(1994), 김윤미·양봉민(2004), 서영숙 외(2010), 권영채·장동민(2012), 권영채·이경수(2013)). 위와 같은 연구들은 주로 통계치의 변이(variation)를 나타내는 극단값비(extremal quotient), 변동 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통해 간단하게 지역간 의료 이용 격차를 제시하고, 소득, 교육 수준 등의 정보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한편, 지역별 의료 서비스 이용 변이와 결정 요인을 식별하는 연구를 넘어서, 이를 구체적인 사회후생 손실이나 보건·의료 재정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도 있었다. 서론에서 거론했던 Skinner and Fisher(1997)의 연구는 가장 낮은 의

미국과 같이 국가 면적이 넓어 의료 서비스의 지역화가 비교적 뚜렷한 국가뿐 아니라, 벨기에, 스위스, 포르투갈 등 면적이 넓지 않아 지역화의 정도가 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에서도 소규모 지역간 의료 서비스 이용의 격차가 발견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 나라의 250여개
시군구를 분석대상으로
1인당 국민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정보와 급여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정보를 활용하여
지역간 의료비 지출의
격차를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료비 지출 지역을 기준으로 모든 지역의 의료비가 낮아지는 가상의 상황에서 대략 20%의 의료비가 절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현웅 외(2007)는 우리나라의 내과계 20개 질병을 중심으로 의료 서비스 이용의 전 지역 평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이 기준보다 적게 이용한 과소 지역과 높게 이용한 과대 지역의 격차 규모를 모두 합산, 전체 사회후생의 손실을 계산했다. 이를 통해 내과계 질병에 대한 의료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후생 손실의 규모를 총 진료비 8,864억원 중 1,366억원(15.41%)으로 추정했다. 분석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을 전 지역 평균 이용 수준으로 가정하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한계는 각 상병에 대한 미시적인 자료를 직접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지역별 집계 변수만을 이용한 분석으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의료 서비스 이용 변이를 이용해서 회계 단위로 표시된 후생 손실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연구 결과다.

III. 자료와 실증분석 방법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250여개 시군구를 분석대상으로 1인당 국민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정보와 급여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군구의 인구 구조, 소득(건강보험료 기준), 의료 접근성(관내 입원 및 외래 비율, 미충족 수요 비율), 생활 습관 정보(흡연, 음주, 운동, 비만율), 삶의 질 정보 및 다양한 질병 정보 등을 활용하여, 지역간 의료비 지출의 격차를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연보』 및 『건강보험통계연보』에 수록된 집계 자료, 질병관리본부의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시군구별 외래/입원/전체 급여비 지출²⁾과 주요 질병 및 건강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회귀 분석에 사용된 기타 정보인 시군구별 10만명당 사망률, 시군구별 인구수의 정보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활용했다. 이와 같은 모든 시군구 관련 정보를 2008~2015년의 시군구 패널자료로 정리하여 분석에 활용했다.

우선 종속변수를 1인당 건강보험 급여 지출 수준(전체/입원/외래), 설명변수를 지역의 기초 정보, 의료 서비스 이용 관련 정보, 지역의 만성질환 관련 정보 및 기타 지역의 건강 관련 정보로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지역간 의료비 지출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수집하여 사용한 변수들은 <표 1>에 소개되

2)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하는 시군구별 급여비 지출은 환자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집계되었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거주하는 환자가 서울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이 환자의 급여비는 부산으로 집계된다. 이러한 집계 방식은 Wennberg and Gittelsohn(1973)에서 지역별 의료 이용 변이를 분석할 때 가정한 방식과 일치한다(Skinner, 2012).

어 있으며, [식 1]의 고정효과 모형(fixed-effects model)을 이용하여 1인당 건강보험 평균 급여비의 결정 요인을 식별했다.³⁾ 시군구별로 군집화된 표준오차(cluster-adjusted standard error)를 사용했다.

〈표 1〉 변수 목록(시군구별)

종속변수	1인당 건강보험 평균 급여비(전체, 입원, 외래)	
지역 정보	여성 비율, 5세 미만 인구 비율,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 사망률(연령 조정), 건강보험료 평균	
의료 서비스 이용 정보	미충족 의료 수요 비율, 관내 외래 진료 비율, 관내 입원 진료 비율	
지역 건강 정보	만성질환 관련 정보	고혈압 환자 비율, 당뇨병 환자 비율, 치주질환 환자 비율, 관절염 환자 비율, 정신질환 환자 비율, 전염병 치료 환자 비율, 간질환 환자 비율,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환자 비율
	중증 암질환 관련 정보	위암 환자 비율, 간암 환자 비율, 기관지 및 폐암 환자 비율, 대장암 환자 비율, 유방암 환자 비율, 자궁경부암 환자 비율
	기타 건강 정보	흡연을 ¹⁾ , 음주율 ²⁾ , 운동 및 신체활동 비율 ³⁾ , 비만을, 삶의 질 측정 지수(EQ-5D) ⁴⁾

주: 1) 평생 5갑 이상 담배 피운 사람 중, 현재 매일 혹은 가끔 피운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2) 최근 1년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 중, 한달에 1회 이상 음주한 사람의 비율
 3) 고강도 신체활동 3일 이상 하루 20분 이상, 혹은 중등도 신체활동 5일 이상 하루 30분 이상
 4) 이영훈 외(2009) 참고하여 계산
 출처: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연보』, 『건강보험통계연보』, 『지역사회건강조사』, 『주민등록 인구현황』, 『인구동향조사』

[식 1] 회귀 모형

$$1인당\ 의료비\ 지출_{jt} = \alpha + \beta \cdot \text{지역변수}_{jt} + \gamma \cdot \text{의료서비스 이용 변수}_{jt} + \delta \cdot \text{건강변수}_{jt} + \text{시군구}_j + \epsilon_{jt}$$

주: j는 시군구, t는 연도를 의미함

이후 회귀 모형을 통해서 추정된 의료비와 실제 지출된 의료비를 비교하여 위험 보정 이후의 지역별 의료비 지출(risk-adjusted expenditure)을 추정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높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비율이 높은 경우, 이 지역의 높은 의료비 지출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선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된 이와 같은 위

종속변수를 1인당 건강보험 급여 지출 수준, 설명변수를 지역의 기초 정보, 의료 서비스 이용 관련 정보, 지역의 만성질환 관련 정보 및 기타 지역의 건강 관련 정보로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지역간 의료비 지출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3) 시군구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시간불변의 관찰불가능한 요인(time-invariant unobserved factors)를 통제할 수 있지만, 여전히 오차항(ϵ_{jt})에 시간가변의 관찰불가능한 요인(time-varying unobserved factors)이 남아 있어 계수 추정에 편의(bias)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만약 실제 지출된 1인당 의료비 규모가 회귀모형의 추정치보다 높다면, 모형에서 설명할 수 있는 효과들을 모두 반영한 이후에도 지역의 의료비 지출을 높이는 설명되지 않는 요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험 요인들의 효과를 모두 반영한 이후에도 여전히 지역간 의료비 지출 격차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식 2]를 통한 위험 보정법(risk adjustment)은 설명변수들의 추정된 효과를 모두 반영하여 모형에서 예상하는 의료비 지출액(fitted value)을 추정하고, 이러한 모형의 추정치에서 벗어난 의료 지출의 부분만큼을 지역간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관찰 가능하지 않은 요인들로 인한 지역간 의료비 지출의 변이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볼 수 있다. 만약 실제 지출된 1인당 의료비 규모가 회귀모형의 추정치보다 높다면, 모형에서 설명할 수 있는 효과들을 모두 반영한 이후에도 지역의 의료비 지출을 높이는 설명되지 않는 요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⁴⁾ 또한, 모든 지역의 설명 변수값이 각 변수의 전체 지역 평균값으로 동일해지는 가상적인 상황에서-즉, 모든 지역이 설명변수를 중심으로 동일한 조건이 되는 상황에서-각 지역이 어느 정도의 의료비를 지출한 것인지를 비교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식 2] 위험 보정 의료비 추정

$$\text{위험 보정 의료비 지출}_j = \frac{\text{실제 지출된 의료비 지출}_j}{\text{모형에서 추정된 의료비 지출}_j} \times \text{전체 평균 의료비 지출}$$

4) 이와 같은 지역별 의료 이용의 모형 추정치와 실제 이용 수준의 격차를 연도별로 추적하여 무작위의 패턴을 보이는지 살펴보는 것은 이 연구의 관심인 '설명되지 않는 변이'가 무작위의 패턴인지 아닌지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연구에 반영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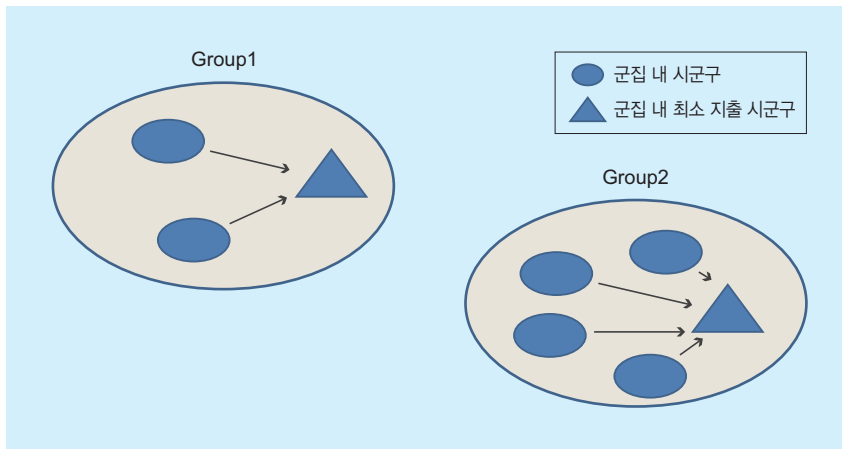
5) 상황에 따라 이러한 설명되지 않는 지역별 의료비 지출 변이를 '비효율적인 의료 지출', '의료 낭비'로 지칭하는 연구자들도 있지만(Kibria et al., 2013), 이 연구에서는 그대로 '설명되지 않는 지출 격차'라는 표현을 쓰기로 한다. 지역 내 세부 상병에 대한 진료 현황, 의학 가이드라인, 지역 내 의료 공급자의 구체적인 진료 결정 등 미시적인 내용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별 집계 변수의 격차만으로 비효율적 지출로 규정짓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논평자의 의견을 따른다.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관찰 가능한 변수들의 효과를 반영한 이후에도 여전히 지역별 의료비 지출의 격차가 발견된다면, 이는 회귀 모형에서 고려했던 인구 구조, 각종 건강 관련 변수 및 의료 접근성 등 보건·의료 지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 외에 다른 요인이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미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를 설명되지 않는 의료비 지출 변이(unwarranted variations)로 지칭하며, 궁극적으로 효율적인 의료 전달 체계의 구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⁵⁾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의료 지출 정보를 제외한 지역별 기초 정보 및 질병/건강 정보를 기준으로 분석 대상 시군구를 매년 비슷한 성격의 군집(group)으로 분류한 후, 군집 내 최소 지출 수준의 시군구 지역 수준까지 군집 내 타 시군구 지역들의 의료비 지출 수준이 절감된다면 이는 보건·의료 재정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이 될지를 계산해보고자 한다([그림 2] 참조). 즉, 지역 정보에 기초한

k -평균 군집분석(k -means clustering)^{6) 7)}을 통해 비교적 동질적인 지역들을 군집으로 분류한 이후,⁸⁾ 각 군집 내 최소 지출 지역 수준을 준거 지역으로 가정하여 그 수준까지 군집 내 다른 모든 지역의 지출이 줄어드는 가상적인 상황을 고려한다. 이는 Skinner and Fisher(1997)에서 제시했던 대략적인 계산 방법을 군집을 이용하여 좀 더 정교하게 추정해보는 시도이며, 이를 통해 앞서 발견한 설명되지 않는 변이가 모두 해소되는 경우 보건·의료 재정은 어느 정도 절감될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림 2] 지역별 의료 지출 변이가 해소된 경우의 보건·의료 재정 절감 모형



출처: 저자 작성

이러한 추정치를 우리 나라 건강보험 급여 지출의 비효율적·낭비적 규모로 바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만약 각 군집 내에서 최소 의료비를 지출하는 준거 지역이 각 군집 내 최적(optimal)의 의료비 지출 지역이라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위와 같은 분석에서 계산된 추정치를 건강보험 급여의 비효율적 지출 규모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할 근거는 미미하다. 이 지역에서 지역 보건·의료에 필요한 의료 자원을 충분히 소비하고 있지 못하는 과소 지출 상황일 수 있으며, 현재보다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지역 내 의료 자원을 재배분하여 더 나은 의료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각 군집 내 최소 지출 시군구 지역이 가장 효율적으로 의료 자원을 소비하는 지역이라는 강한 가정에 기반하여 분석을 진행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각 군집 내 최소 지출 시군구 지역이 가장 효율적으로 의료 자원을 소비하는 지역이라는 강한 가정에 기반하여 분석을 진행해보고자 한다.

6) 주어진 정보를 기준으로 각 군집별 중심점과 군집 내 속한 표본의 위치 간 거리(distance)의 제곱합을 최소로 하는 군집을 찾아내는 것이 목적인 다변량 분석 방법

7) 이상적인 군집의 개수는 $k \sim \sqrt{n/2}$ 의 경험법칙(rule of thumb)에 의해 얻을 수 있다. 2015년 시군구 252개이므로, 이상적인 군집의 개수는 대략 11.2개임을 알 수 있다. 분석에서는 $k=10$ 으로 가정했다.

8) 주어진 지역별 기초정보와 건강정보를 기준으로 하여 군집을 분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가깝지 않은 시군구 지역들도 한 군집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주도의 서귀포와 경기도 용인이 지역별 기초정보와 건강정보를 고려하여 동일한 부분이 많다면 한 군집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분석에서는
선행연구들에 비해
비교적 풍부한 시군구별
건강관련 변수들을
활용하고자 노력했다.
수집 가능한 질병 관련
정보들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평소 생활 습관에 대한
정보들도 적극 활용했다.**

이것은 설명되지 않는 지역별 의료 이용 변이를 장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부정적인 대상으로 보는 과거 선행 연구의 흐름(Skinner and Fisher, 1997)을 따름과 동시에,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된 지역별 의료 이용 변이의 규모를 통해 장기적인 목표로 줄여 나갈 수 있는 보건·의료 재정의 최대치를 대략적으로 가늠해본다는 정책적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분석에서는 선행연구들에 비해 비교적 풍부한 시군구별 건강관련 변수들을 활용하고자 노력했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본적인 지역 정보인 성별, 연령 등 인구 구조와 사망률뿐만 아니라, <표 1>에서 소개된 것처럼 시군구별로 수집 가능한 질병 관련 정보들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평소 생활 습관에 대한 정보들도 활용했다. 이는 Skinner and Fisher(1997)에서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소화관 출혈 등 몇몇 대표 질병들의 시술률을 통제 변수로 사용한 것과 비교된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정보, 암과 관련한 정보, 흡연, 음주, 비만율 등 평소 건강과 관련이 있는 생활 습관 정보들을 풍부하게 고려함으로써, 지역간 의료비 지출의 격차를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했다.

또한, 의료비 지출의 적정 수준을 지역 전체 평균 수준으로 가정하여 사회후생을 추정한 신현웅 외(2007)의 연구와 달리, 군집분석을 이용해 비교적 동질적인 지역군을 분류하고 군집 내에서 위험이 보정된 의료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재정 개선 가능 규모를 계산했다. 의료비 평균을 중심으로 과소·과대 지출을 모두 고려한 신현웅 외(2007) 연구와 달리, 군집 내 최소 지출 지역을 준거 지역으로 가정함으로써, 과대 지출만을 고려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절감 가능 보건 의료 재정의 최대치를 추정해 보고자 했다.

IV. 분석 결과

2015년 기준⁹⁾으로 1인당 건강보험 총급여 지출의 상위, 중위, 하위 5개 시군구를 선별하여 지역별 주요 변수들과 의료비 지출의 관계를 살펴봤다. 급여 지출 평균이 높은 지역일수록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의 비율이 높으며,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이 높고, 정신과 진료 비율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급여 지출 상위 지역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점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표 2> 참조).

9) 이 절의 <표 2>, <표 4>, <표 5>와 <그림 3>의 자료는 편의상 분석 대상 자료의 기간 중 가장 최근인 2015년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표 2〉 지역별 의료 요약 통계(2015년 기준)

(단위: 천원, %)

	1인당 총급여비 (천원)	1인당 입원 급여비 (천원)	1인당 외래 급여비 (천원)	1인당 보험료 (천원)	5세 미만 인구 비율 (%)	65세 이상 인구 비율 (%)	고혈압 진료 비율 (%)	당뇨병 진료 비율 (%)	관절염 진료 비율 (%)	정신과 진료 비율 (%)	사망률 (인구 십만명당)
수원 영통구	633.5	210.2	288.1	1,370.8	6.14	5.26	7.00	3.08	7.65	3.83	243.1
서울 강남구	689.2	231.6	305.5	1,827.5	3.84	10.04	8.69	3.72	9.45	5.65	308.9
구미시	691.6	292.8	292.8	932.8	5.83	7.06	7.75	4.12	8.78	4.21	342.8
성남 분당구	693.2	308.0	308.0	1,545.5	4.71	9.66	8.77	3.81	9.51	5.71	332.6
창원 성산구	703.3	271.9	271.9	1,232.1	4.67	5.21	7.21	2.86	9.32	3.88	293.4
광주 서구	857.6	380.3	311.6	878.9	4.20	10.69	8.72	4.41	10.07	5.12	505.3
서울 영등포구	858.8	321.6	347.8	1,109.5	4.24	12.87	11.93	5.03	11.49	5.03	455.6
거제시	864.2	395.2	307.6	1,091.9	6.98	7.80	9.48	3.89	9.08	4.55	392.8
대구 달성군	866.4	315.6	351.4	762.9	5.49	11.35	11.10	5.34	13.16	5.71	575.3
안성시	868.0	348.7	322.5	793.8	4.89	14.03	12.80	6.41	13.69	5.86	620.9
전남 함평군	1,483.6	694.7	469.0	483.3	3.08	32.25	21.29	10.68	30.66	9.17	1,354.9
전남 신안군	1,483.9	738.6	443.4	389.1	2.61	31.62	21.62	8.82	29.15	9.52	1,250.2
경남 의령군	1,506.2	771.9	455.3	535.7	2.79	32.77	21.26	8.09	26.11	10.68	1,511.6
전남 고흥군	1,531.4	722.3	487.0	408.0	2.11	36.26	23.58	10.51	30.01	9.54	1,552.3
전북 부안군	1,533.5	714.8	466.2	484.0	2.90	28.21	19.26	8.31	21.58	9.49	1,206.3
전체 평균	864.3	340.2	336.4	873.0	4.47	12.86	11.78	5.30	12.49	5.61	541.5

출처: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연보」(국민건강보험공단), 「인구동향조사」(통계청)의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지역별 의료비 지출을 종속변수를 하는 회귀분석 결과(〈표 3〉 참조), 5세 미만의 인구와 고령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질수록, 건강보험 입원·외래·총급여 지출이 모두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어, 평균적으로 영유아기와 노년기에 집중되는 의료비 지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비중이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양(+)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구구조와 만성질환 환자의 비율이 지역별 의료비 변이에 유의한 설명 변수가 됨을 알 수 있다.

〈표 3〉 회귀 모형 추정 결과

	1인당 총급여	1인당 입원 급여	1인당 외래 급여
여성비율	-20079.4* (9300.0)	-12691.8 (6781.3)	-5968.7* (3030.5)
5- 인구비율	33346.8*** (7037.0)	23919.9*** (5629.7)	9571.1*** (2386.7)
65+ 인구비율	13415.0*** (3792.2)	10523.2*** (2920.7)	5348.2** (1672.8)
미총족수요	-391.1 (224.1)	-15.8 (210.5)	-390.8* (152.8)
사망률(10만명당)	-206.6*** (47.6)	-87.1 (44.8)	-72.9** (25.0)
관내 입원 비율	588.6 (570.3)	693.1 (470.6)	-54.8 (136.8)
관내 외래 비율	684.1 (515.1)	259.9 (465.0)	617.9 (421.9)
삶의 질 지수(EQ-5D)	86947.1 (103729.9)	110209.0 (89862.5)	95391.0 (50372.4)
보험료 평균	-0.001 (0.002)	-0.003 (0.002)	0.0004 (0.0006)
고혈압 환자 비율	14914.0*** (4055.0)	4862.3 (2895.5)	3706.1* (1537.7)
당뇨병 환자 비율	34313.8*** (9027.0)	25913.9*** (6966.4)	11332.3* (4495.6)
치주질환 환자 비율	6303.3*** (826.6)	2531.9*** (679.2)	2927.6*** (412.7)
관절염 환자 비율	-639.9 (2121.2)	1168.9 (2723.9)	3547.8 (2204.4)
정신질환 환자 비율	45559.8*** (7166.8)	22817.5*** (5543.5)	8733.1* (3372.1)
전염병 치료 환자 비율	-171.1 (1214.2)	-1240.2 (1081.9)	-491.4 (747.2)
간질환 환자 비율	-9095.2** (3439.3)	-7858.0** (2598.8)	-2268.1 (1563.9)
고지혈증 환자 비율	1352.9** (420.0)	372.9 (371.0)	999.2*** (279.5)
위암 환자 비율	101674.1 (67871.7)	30303.4 (51937.4)	17843.9 (27391.7)
간암 환자 비율	393688.0*** (102829.6)	225848.8* (89092.1)	17365.8 (62829.7)

〈표 3〉의 계속

	1인당 총급여	1인당 입원 급여	1인당 외래 급여
폐암 환자 비율	173453.5* (82281.6)	55494.6 (62584.7)	1127.7 (40511.4)
대장암 환자 비율	-36666.7 (71950.8)	-81804.8 (69270.3)	-26087.6 (49125.7)
유방암 환자 비율	205098.6* (95556.2)	105047.0 (76524.7)	205642.2*** (44167.3)
자궁경부암 환자 비율	92045.8 (156274.1)	-48712.7 (130319.6)	-42431.4 (74463.1)
음주율	784.2** (296.4)	459.0 (263.1)	221.2 (153.5)
운동 및 신체활동 비율	369.5* (149.2)	55.5 (110.8)	173.8*** (44.6)
흡연율	-17.2 (377.6)	-141.5 (277.3)	-22.9 (163.1)
비만율	-20356.1 (31565.1)	-7916.4 (25053.0)	-12026.7 (13562.0)
상수	370065.8 (443257.3)	112662.6 (327066.6)	21612.3 (156736.2)
N	1963	1963	1963

주: 1.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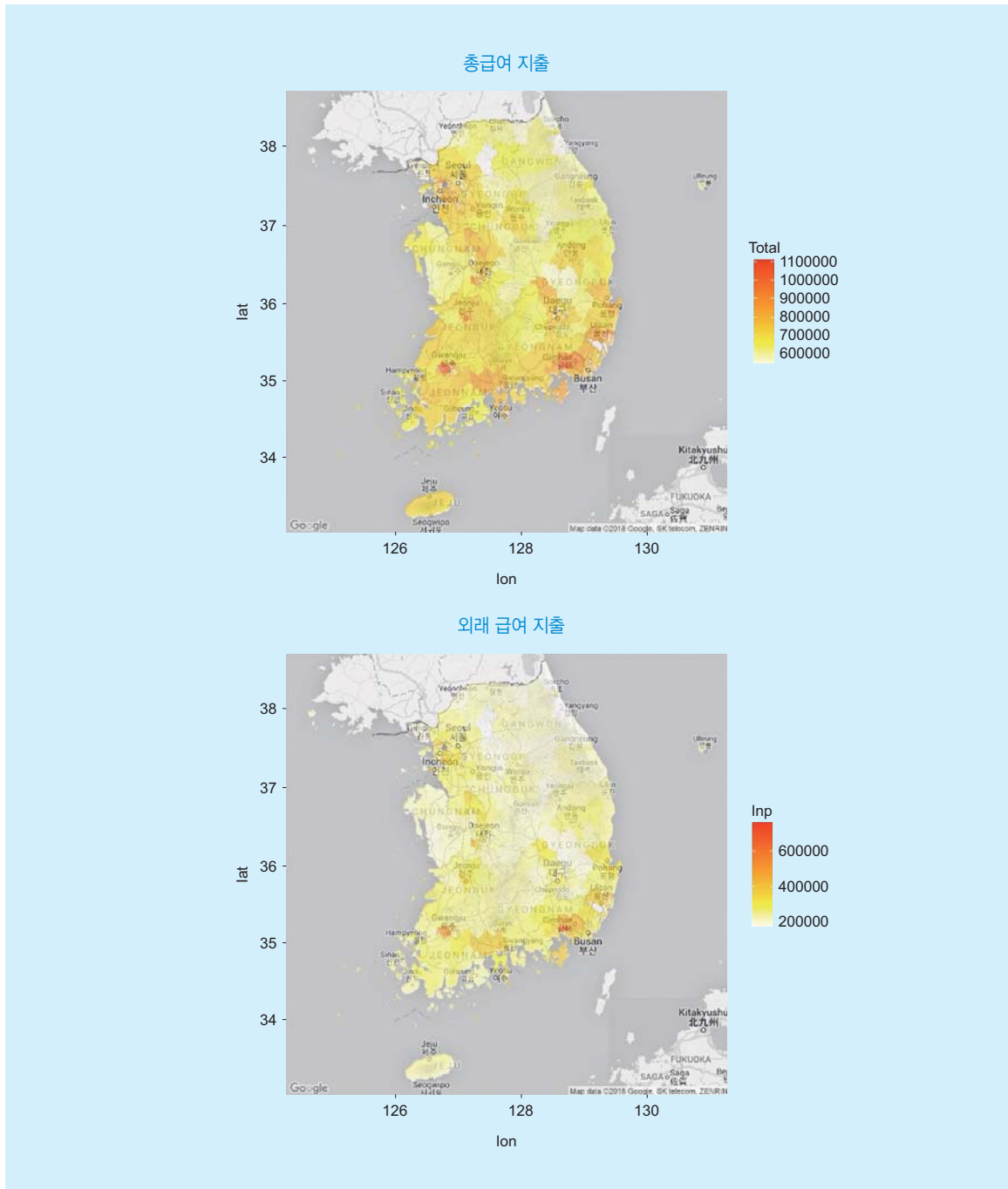
2. () 안은 군집화된 표준오차

출처: 저자 작성

고령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지방을 중심으로 1인당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높은 현상이 앞선 요약 통계와 회귀분석을 통해서 확인되었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식 2]에 의해 통제된 이후에는 오히려 대도시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여 지출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 참조). 〈표 4〉 또한 고령층, 만성질환 비율 등 지역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이후에는 창원, 광주, 인천 등 대도시 위주로 의료비 지출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창원 성산구의 경우, 〈표 2〉에서는 1인당 건강보험의 총급여 지출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창원 성산구에 거주하는 고령층의 인구가 타 지역에 비해 적고 (2015년 기준 5.21%) 이에 따라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비율도 낮기 때문에 관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통제된다면 이 지역의 의료 소비 성향은 오히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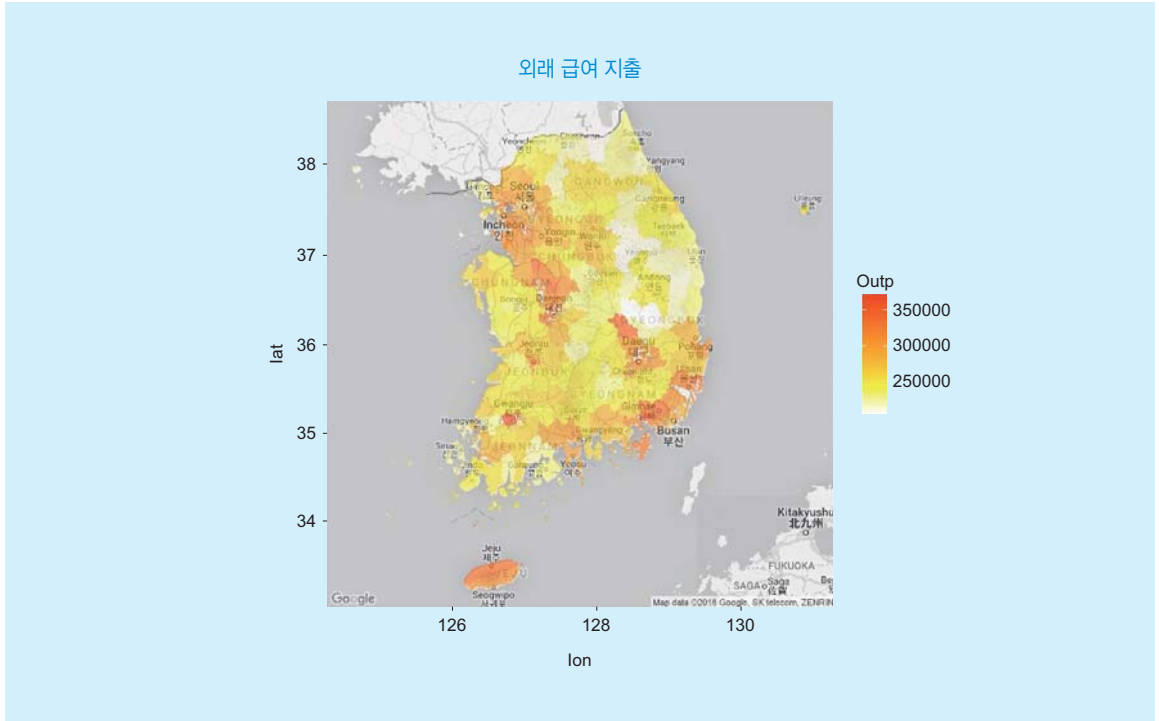
[그림 3] 위험 보장 건강보험 급여 지출(2015년 기준)

(단위: 원)



[그림 3]의 계속

(단위: 원)



출처: 구글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군집분석 결과
의료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중심으로
비교적 동질적인
시군구가 적절하게
분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위험 보장 1인당 급여비 지출 순위(2015년 기준)

(단위: 원)

순위 (상위)	총급여	위험보장 1인당 급여비	입원	위험보장 1인당 급여비	외래	위험보장 1인당 급여비
1	창원 성산구	1,105,388	창원 성산구	759,266	창원 성산구	375,866
2	광주 광산구	994,152	광주 광산구	515,736	광주 광산구	362,770
3	광주 서구	954,782	광주 서구	506,789	수원 영통구	356,345
4	김해시	942,566	계룡시	460,921	울산 북구	356,013
5	계룡시	938,143	울산 북구	455,640	구미시	347,345
6	울산 북구	936,803	창원 의창구	455,430	광주 서구	346,739
7	창원 의창구	918,601	김해시	444,414	청주 흥덕구	345,889
8	창원 마산회원구	898,999	수원 영통구	414,583	천안 서북구	344,694
9	인천 계양구	886,960	창원 진해구	414,191	대전 유성구	343,842
10	울산 중구	884,927	광주 북구	410,018	김해시	343,109
순위 (하위)	총급여	위험보장 1인당 급여비	입원	위험보장 1인당 급여비	외래	위험보장 1인당 급여비
1	경기 가평군	545,560	경기 가평군	179,916	경북 의성군	206,683
2	강원 양양군	551,859	강원 양양군	182,241	강원 양구군	208,755
3	인천 옹진군	556,336	강원 고성군	183,605	충북 단양군	209,959
4	강원 고성군	559,987	강릉시	192,705	강원 영월군	212,139
5	강원 양구군	575,447	경북 군위군	193,814	경북 영양군	214,345
6	경북 의성군	580,366	경기 양평군	196,076	인천 옹진군	216,495
7	충북 단양군	582,054	보령시	197,754	경북 청송군	219,702
8	인천 강화군	590,913	강원 양구군	199,554	경기 가평군	221,063
9	경북 울릉군	593,165	충북 단양군	200,764	강원 화천군	221,299
10	강릉시	595,242	강원 횡성군	201,893	경북 봉화군	221,345

출처: 저자 작성

지역별 기초 정보와 질병/건강 관련 정보를 기반으로 k -평균 군집분석 ($k=10$)을 실시하였으며, 〈표 5〉에 나타난 것과 같이 고령층의 비율과 사망률, 고혈압, 당뇨병의 만성질환 비율 중심으로 시군구가 군집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에서의 2, 6, 8그룹의 경우 비교적 높은 고령층 비율과 만성질환 비율, 사망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7, 9, 10그룹의 경우 고려하는 변수들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다. 즉 군집분석 결과, 의료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중심으로 비교적 동질적인 시군구가 적절하게 분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 군집분석 결과(2015년 기준)

(단위: 천원, %)

k	인당 급여	인당 입원	인당 외래	고혈압	당뇨	65+	사망률	여성 비율	5-	관내 입원	관내 외래
1	1044.3	448.9	368.5	15.9	7.4	20.5	0.9	49.2	3.6	25.7	54.1
2	1340.6	611.8	443.5	20.5	8.4	30.6	1.3	50.7	2.9	20.9	61.5
3	1037.8	435.9	372.1	15.9	7.0	19.7	0.8	49.8	4	51.9	74.8
4	912.0	379.2	336.7	12.3	5.5	14.0	0.6	50.0	4.4	70.7	84.7
5	1122.9	497.2	380.1	19.2	7.6	25.5	1.1	48.3	3.3	4.6	45.8
6	1217.2	532.3	422.1	18.8	8.0	25.9	1.1	50.3	3	37.3	69.7
7	829.5	319.9	327.4	11.2	5.1	11.7	0.5	50.0	4.5	34.8	62.6
8	1300.7	590.4	428.7	17.6	7.9	25.8	1.1	50.6	3.5	50.3	75.2
9	830.5	333.5	324.6	10.7	4.9	10.4	0.5	49.6	4.9	48.6	70.1
10	804.1	294.1	331.5	11.0	4.9	11.4	0.5	50.0	4.6	20.3	55.2

출처: 저자 작성

각 군집 내에서 가장 지출이 적은 시군구 지역을 기준으로 설명되지 않는 의료비 지출 격차의 규모를 화폐단위로 나타내면 7.09조~12.16조원 정도의 규모며, 2008년 이후로 감소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표 6〉 참조). 건강보험 전체 요양급여비용 실적 규모에서 설명되지 않는 변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47.1%에서 2015년 16.3%까지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의 자료를 통해 추정된 미국의 지역간 의료비 지출 격차의 규모가 전체 의료비 대비 20~30%인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앞선 제3절의 설명처럼 이와 같이 추정된 설명되지 않는 의료비 지출 변이의 규모가 비효율적인 보건·의료 재정의 규모를 의미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밝히고자 한다. 이는 각 군집별 최소지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의료 이용의 설명되지 않는 변이가 모두 제거될 경우 어느 정도의 건강보험 재정 개선 효과가 있는지 살펴본 추정치다.

각 군집 내에서 가장 지출이 적은 시군구 지역을 기준으로 설명되지 않는 의료비 지출 격차의 규모를 화폐단위로 나타내면 7.09조~12.16조원 정도의 규모다.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하듯이 합당한 기준에 근거하여 지역별 의료서비스 제공의 표준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면, 비효율적 의료비 지출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후속 연구 주제로 제안한다.

〈표 6〉 설명되지 않는 의료비 지출 변이의 규모

(단위: 조원,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급여	12.16	11.55	10.76	10.86	9.73	6.76	7.16	7.09
입원 급여	9.95	8.59	8.13	7.54	7.69	4.57	4.99	4.39
외래 급여	6.91	5.45	5.07	5.01	5.70	2.81	3.03	2.87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25.8	29.1	32.6	34.5	36.1	38.0	40.9	43.5
비중	47.1	39.7	33.0	31.5	27.0	17.8	17.5	16.3

주: k=10 군집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저자 계산
출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 건강보험통계연보

V. 결론

지역간 의료비 지출의 격차를 설명하기 위한 연구는 지난 반세기 동안 계속 되어 왔으며,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찰 가능한 정보를 통해 설명한 뒤에도 사라지지 않는 변이에 대해 ‘설명되지 않는 변이’로 명명하고 이를 궁극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대상으로 인식해왔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역별 의료이용 실적 및 지역의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하여, 지역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의 차이를 분석하고, 의료 지출 위험을 통제한 후에도 존재하는 의료비 지출의 격차를 보이고자 했다. 또한, 이 변이의 규모를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격차에 해당하는 보건·의료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밝히고자 했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 급여 지출을 대상으로 하였고,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전체 국민 의료비를 대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 또한, 선행 연구(Skinner and Fisher, 1997)에서 주장한 것처럼 이러한 격차가 반드시 의료 자원 소비의 비효율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함을 인식했으나, 이를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집계변수의 분석만으로 비효율적인 의료 자원의 활용 정도를 정교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으며, 소규모 지역별, 질병별, 요양기관 종별로 세부적인 의료 지출 자료가 적극 활용되어 비효율적인 의료 지출의 식별을 위한 미시적인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하듯이 합당한 기준에 근거하여 지역별 의료서비스 제공의 표준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면, 비효율적 의료비 지출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후속 연구 주제로 제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계 변수를 통해, 설명되지 않는 지역별 의료비 격차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쉽게 관찰할 수 없는 원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 격차의 전체적인 규모를 가능하여 장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하는 보건·의료 재정의 전체 규모를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지역별 의료비 지출 격차는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후 논의되고 있는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주요한 정보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개편 방향의 핵심 중 하나인 지역 거점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 의료생활권 형성의 필요성을 환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역별 의료 이용 격차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어(김윤 외, 2016),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형 보건·의료 이용 지도가 관련 연구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되지 않는 지역별 의료비 격차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쉽게 관찰할 수 없는 원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 격차의 전체적인 규모를 가능하여 장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하는 보건·의료 재정의 전체 규모를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 권영채·이경수, 「고혈압 질환의 지역간 입원의료이용 변이에 관한 연구」, 『한국임상보건과학회지』, 1(1), 2013, pp. 9-17.
- 권영채·장동민, 「심질환의 지역간 입원의료이용 변이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0(3), 2012, pp. 207-218.
- 김윤 외,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보고서, 2016.
- 김윤미·양봉민, 「일반외과 영역 다빈도 수술률의 소규모 지역간 변이」, 『보건행정학회지』, 14(2), 2004, pp. 138-162.
- 서영숙·이경수·박종호·강성홍, 「우리나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지역별 의료이용의 변이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1(4), 2010, pp. 1511-1519.
- 신현웅·안형식·이충섭, 「소규모 지역간 의료이용의 변이로 인한 사회적 후생 손실 추정」, 『보건사회연구』, 27(1), 2007, pp. 52-80.
- 이선희·조우현·남정모·김석일, 「일부 다빈도 진단명들의 지역간 의료이용 변이」, 『보건행정학회지』, 4(1), 1994, pp. 49-76.
- 이영훈·최진수·이정애·류소연·신민호·김진희, 「EuroQoL-5 Dimension

한국 가중치 모형의 적용 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6(1), 2009, pp. 1-13.

Berwick, D. M., & Hackbarth, A. D., “Eliminating waste in US health care,” *JAMA*, 307(14), 2012, pp. 1513-1516.

Glover, J. A., “The incidence of tonsillectomy in school children,” 1938.

Kibria, A., Mancher, M., McCoy, M. A., Graham, R. P., Garber, A. M., & Newhouse, J. P. (Eds.), Variation in health care spending: target decision making, not geography. National Academies Press, 2013.

OECD, “Health Statistics 2017,” 2017.

www.oecd.org/els/health-systems/health-data.htm

_____, “Geographic Variations in Health Care: What Do We Know and What Can Be Done to Improve Health System Performance?,” OECD Publishing, Paris, 2014.

Skinner, J., & Fisher, E., “Regional disparities in Medicare expenditures: an opportunity for reform,” *National Tax Journal*, 50(3), 1997, pp. 413-425.

Skinner, J., “Causes and consequences of regional variations in health care,” *Handbook of health economics*, 2, 2012, pp. 45-93.

Wennberg, J., & Gittelsohn, A., “Small area variations in health care delivery,” *Science*, 182(4117), 1973, pp. 1102-1108.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 ·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주요국의 조세동향

동향 18-1

> 미국/캐나다

[캐나다-대마초 과세 및 세수배분 관련 주정부와 합의한 내용 발표]

- 캐나다 재무부는 2017년 12월 11일 개인용 대마초 (recreational cannabis)에 대한 소비세 과세와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소비세수액 배분에 대해 주·지방정부와 합의하였음을 발표함¹⁾
 - 캐나다 트뤼도 총리는 2018년 7월부터 개인용 대마초가 합법화됨에 따라 2017년 10월 3일 대마초 과세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²⁾
 - 이번에 합의한 소비세 과세 규정과 소비세수액 배분 규정은 과세시행 시기인 2018년 7월부터 2년 동안만 적용됨
- 대마초에 대한 소비세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소비세를 합해서 1g당 1캐나다달러 또는 판매가격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총소비세 한도만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합의를

통해 정해진 것이며, 연방정부와 주·지방정부 각자의 구체적인 과세율은 확정되지 않음

- 이번 발표 시 납세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연방정부와 주·지방정부는 소비세 과세표준을 동일하게 하며, 주·지방정부의 소비세율은 연방정부 세율의 고정비율로 한다는 기본 방침도 함께 발표함

- 대마초 소비세 과세로 발생하는 총세수 중 75%는 주·지방정부에, 25%는 연방정부에 배분됨
 - 연방정부가 분배받는 소비세수액은 연간 10억캐나다달러로 제한하고, 초과되는 세수액은 주·지방정부에 배분할 것임을 발표함
 - 이는 대마초 합법화 시행으로 각 주정부가 부담하는 초기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임³⁾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 유럽

[룩셈부르크-2018 세법 개정안 발효]

- 룩셈부르크의 2018년 예산안에 포함된 세법 개정안이 2017년 12월 20일자로 확정, 공포됨⁴⁾
 - 법인의 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개인의 납세 유연성 증대, 친환경 자동차 관련 지원 등의 조치가 포함됨

1) 캐나다 재무부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17/12/background_federal-provincial-territorial-agreement-on-cannabis.html, 접속일자: 2018.01.31.)

2) 세법연구센터, 『주요국의 조세동향(17-10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 Reuters(<https://ca.reuters.com/article/domesticNews/idCAKBN1E52LT-OCADN>, 접속일자: 2018.01.26.)

4) IBFD(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7-10-12_lu_1.html&WT.z_nav=crosslinks&hash=ns_2017-10-12_lu_1, 접속일자: 2018.1.26.)

PwC(<https://www.pwc.lu/en/tax-consulting/docs/pwc-tax-151217.pdf>, 접속일자: 2018.1.26.)

1. 법인세

- 법인이 외부로부터 구입한 소프트웨어 취득원가의 일정 비율에 대해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함
 - 기업의 디지털 변혁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함
 - 기업이 외부로부터 구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해 별도의 세액 공제를 적용함
 - 15만유로까지는 취득원가의 8%,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 해당 세액공제금액은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한도를 초과 금액에 대한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음
- 탄소배출량이 없는 9인승 이하 신규 승용차의 취득에 대하여 투자세액 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친환경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함
 - 일반적으로 자동차 취득은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 개정 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만족하는 승용차 취득에 대해서는 관련 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해짐
 - 9인승 이하의 승용차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후 신규 등록된 차량
 - 전기 또는 수소전지에 의해 운행하며 탄소배출이 없는 (zero emissions) 차량

2. 개인소득세

- 기혼 납세자는 배우자 합산 과세 대신 개별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과세연도 종료 이후 3월까지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세자 편의를 도모함
 - 기존 2016년말 세법 개정에 의해 기혼 납세자(거주자 및 비거주자 모두 해당)는 2018년도부터 개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됨
 - 금번 개정 세법에서는 개별과세 신청 요건 및 기한 등을 명시함
 - 개별과세 신청은 두 배우자가 각각 제출해야 함
 - 적용 대상 과세연도말 이후 3월 이내(예: 2018년도의 경우 2019년 3월말까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비거주자에 대해 룩셈부르크 거주자와 같은 과세취급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함
 - 기존 법령상 소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신청에 따라 룩셈부르크 거주자에 준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즉, 전 세계소득에 대한 과세 및 소득 공제 가능)
 - 기혼 부부로서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의 전 세계 소득 중 90% 이상이 룩셈부르크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
 - 개정 법령에서는 소득 요건 및 배우자 요건을 완화하여 비거주자의 신청 가능성을 확대함
 - 소득 비중 90%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외에서 근로를 시작한 후 최초 50일 동안의 소득은 룩셈부르크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
 - 동 소득 비중 규정에 미달하더라도 연간 국외 소득이 1만 3천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



- 배우자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개정 요건하에 신청 가능

- 탄소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한 개인에 대해 세제 지원을 제공함
 - 2017년 12월 31일 이후 취득하는 저탄소배출 차량 구입에 대해 2,500유로의 세금환급(tax rebate) 혜택을 제공
 - 탄소배출량이 50gmCO₂/km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적용 가능⁵⁾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준현 회계사)

[벨기에-2018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 개정안 최종 승인]

- 벨기에 의회는 2017년 12월 29일 2018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 개정안을 최종 승인함⁶⁾
 - 벨기에 정부는 2017년 10월 27일 법인세법 개정안 초안을 승인함⁷⁾
 - 법인세 개정안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됨

1. 2018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내용

- 2018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으로 법인세율 인하, 중소기업의 경감세율 인하 및 투자세액공제 확대, 경영참가소득 비과세,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R&D인력 대상 확대, 대기업의 자본이득 과세 폐지가 있음

■ 법인세율은 2020년까지 현행 33%에서 25%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것이며, 2018년에는 29%로 인하함

- 또한, 법인세에 부가되는 부가세율도 3%에서 2%로 인하하여, 부가세율 합산 시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은 33.99%에서 29.58%로 인하됨

■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경감세율도 현행 24%에서 20%로 인하하며,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20%로 인상함

- 현행 규정상 과세표준이 10만유로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경영참가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배당수익은 전액 비과세함

- 개정 이전 규정에서는 해당 배당수익에 대해 95%의 소득공제를 허용함
- 법인이 자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거나 자회사에 최소 2.5백만유로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한 경우에 경영참가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봄

■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연구개발 인력(과학분야) 대상에 학사 학위자를 포함함

- 현행 규정에서는 기업의 고용비용 부담을 낮추고자, 과학분야 연구개발 인력(석·박사 학위 소지

5) 참고로, 전적으로 전기 또는 수소 배터리에 의해 운행하는 승용차로서 탄소배출이 없는 신규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5,000유로의 세금 환급 혜택을 시행하고 있음

6) KPMG(<https://home.kpmg.com/xx/en/home/insights/2017/12/tnt-belgium-corporate-tax-reform.html>, 접속일자: 2018.01.26.)

7) 세법연구센터, 『주요국의 조세동향(17-11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의 원천징수세 중 80%를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 중임

- 이번 개정으로 원천징수세가 면제되는 대상을 학사학위자로 확대한 것이며, 학사학위자의 경우 원천징수세의 40%만 면제가 가능함
 - 2020년부터 원천징수세 공제율은 80%로 인상함

- 대기업에 한해 1년 이상 경영참가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처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capital gain)에 0.412%로 과세하던 규정을 폐지함
 - 일반 주식의 양도소득은 법인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나, 경영참가주의 양도소득은 별도의 세율로 과세함(〈표 1〉 참조)⁸⁾
 -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한해 경영참가주 양도소득에 비과세하던 것을 대기업에도 허용하는 것임

2. 2020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내용⁹⁾

- 2020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으로 법인세율 재인하,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정 도입, 고정사업장 정의 BEPS 규정에 따라 확대, 회사용 차량 비용공제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공제가 있음
 - 법인세율을 현행 33%에서 2018년에 29%, 2020년에는 25%로 인하할 예정임
 - 법인세율에 부과되는 부가세율은 현행 3%에서 2018년 2%로 인하되며, 2020년부터는 폐지될 예정임
 - EU의 조세회피방지지침(ATAD 1, 2)을 이행하여 EBITDA의 30%를 초과하는 금액과 3백만달러 중 큰 금액의 공제를 제한함
 - 고정사업장 범위에 BEPS Action 1, 7에서 제시하는 대리인(commissionaire)도 포함함
 - 회사 차량 관련 비용 공제범위는 50~100%이며, 전기차의 경우 100% 비용공제함

〈표 1〉 현행 벨기에의 기업 주식양도소득 과세제도

구분	현행 세율	개정 세율
일반 주식 처분하는 경우	법인소득에 포함하여 과세	좌동
경영참가 목적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처분하는 경우	25.75%(추가과세율 3% 포함)	좌동
경영참가 목적의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처분하는 경우	대기업: 0.412%(추가과세율 3% 포함) ¹⁾ 중소기업: 비과세	대기업: 비과세 중소기업: 비과세

주: 1)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2014년부터 시행함
출처: G. Cruysmans, Belgium—Corporate Taxation sec. 1., Country Analyses IBFD, 접속일자: 2018.01.16.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8) G. Cruysmans, Belgium—Corporate Taxation sec. 1., Country Analyses IBFD, 접속일자: 2018.01.16.

9) KPMG(<https://home.kpmg.com/xx/en/home/insights/2018/01/tax-belgium-corporate-tax-measures-effective-beginning-2020.html>, 접속일자: 2018.01.16.)



[스페인-직·간접세 관련 시행령 개정안 확정]

■ 스페인 정부는 법인 및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VAT) 등에 대한 개정 내용을 포함한 시행령¹⁰⁾을 2017년 12월 30일자로 확정, 공포함¹¹⁾

1. 개인소득세

- 납세자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장학금 수령 및 식대 지원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증액함
 - 업무 관련 교육훈련을 고용주 이외의 당사자로부터 간접적으로 제공받는 경우에도 비과세 대상 현물급여로 간주될 수 있음
 - 업무 수행을 위한 기술 및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고용주의 지원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 등이 제공하는 교육 훈련
 - 교육 훈련에 필요한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동 물품 대금을 부담하고 지원할 경우에도 비과세 현물급여에 해당(단, 이에 대한 고용주의 승인 필요)
 - 학자금 및 부대비용 등 장학금 수령에 대한 연간 비과세 한도가 증가됨
 - 일반적 장학금: 기존 3,000유로에서 6,000유로로 증가
 - 숙박·교통비까지 지원하는 장학금: 기존 1만 5천유로에서 1만 8천유로로 증가(해외 유학 장

학금, 박사학위 장학금 등의 경우 추가 증액)
•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식대 지원의 비과세 한도를 1일당 9유로에서 11유로로 증액

- 신주인수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도입하고 가족 소득공제 대상 피부양자 범위를 일부 확대함
 - 신주인수권(preemptive subscription right)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부여됨
 - 수탁기관이나 거래중개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19%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 가족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법원의 명령에 따라 미성년아동에 대한 보호관찰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해당 아동을 공제대상 피부양자로 추가할 수 있음

2. 법인세

- 이전가격에 대한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ing) 작성 및 정보 제공 주체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함
 - 이전가격문서화 관련 E.U 규정¹²⁾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관련 법인세법령을 수정함
 - 기본적으로 스페인 법인으로서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 모회사인 경우 국가별보고서 작성 의무가 있음

10) Royal Decree 1074/2017, 1075/2017

11) IBFD(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01-08_es_1.html&WT.z_nav=Navigation, 접속일자: 2018.1.26.)

IBFD(https://online.ibfd.org/kbase/#topic=doc&url=/data/tns/docs/html/tns_2018-01-02_es_1.html&WT.z_nav=Navigation, 접속일자: 2018.1.26.)

TAXAND(<https://www.taxand.com/wp-content/uploads/2018/01/Tax-Commentary-1-2018-Taxand.pdf> 접속일자: 2018.1.26.)

12) EU Directive 2016/881

- 동 개정 시행령에서는 외국거주자의 자회사 및 고정사업장에 관한 의무 사항을 추가적으로 명확히 함
- 스페인 거주 자회사 및 고정사업장과 관련하여 국가별 정보 제공 의무 및 예외 사항을 명시함
 - 기본적으로 최종 외국 모회사가 국가별 정보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외국 회사의 스페인 자회사 또는 고정사업장도 국가별 정보 제공 의무가 있음
 - 다만, 아래와 같이 다국적기업 그룹 내 다른 회사가 해당 정보를 대신 제공할 경우 동 스페인 자회사 또는 고정사업장의 정보 제출 의무는 면제됨
 - 동일한 다국적기업 그룹의 다른 EU 소재 관계회사가 국가별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정된 경우
 - 최종 모회사가 스페인 이외 타국 소재 관계회사로 하여금 국가별보고서를 대리 제출하도록 한 경우¹³⁾
- 금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동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를 일부 간소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
 - 상관행상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세관청은 관련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세부 내역 대신 약식 거래정보(summary entries of invoices)를 전송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음
 - 분기별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자발적으로 SII 시스템 적용을 신청한 경우 VAT 납부 의무는 여전히 분기별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함
 - VAT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여행업 등 일부 분야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를 기본 감면 조건으로 요구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준현 회계사)

3. 부가가치세

- 전자적 방식으로 VAT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확대하기 위하여, 거래정보 제공의 간소화 및 자발적 신청자에 대한 납세 편의 제공 등의 방안을 제시함
- 스페인은 2017년 하반기부터 VAT 거래 정보를 과세당국의 웹사이트로 전송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Immediate Supply of Information, "SII")를 시행하고 있음
 - 월별 VAT 납세의무가 있는 대기업 등은 의무

[아이슬란드-개정된 이자비용공제 제한 규정 시행시기 연기]

- 아이슬란드 의회는 2017년 12월 30일 개정된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정의 시행시기를 기존 2018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1일로 연기할 것을 승인함¹⁴⁾
- 아이슬란드 의회는 2017년 6월 1일 개정된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정을 승인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음

13) 만약 대리 제출 회사가 EU 멤버국가 이외에 소재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의 정보 교환 등 별도 조건이 부가됨

14) EY(<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the-latest-on-beps—15-january-2018>, 접속일자: 2018.01.26.)



-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정의 개정으로 아이슬란드 기업은 내국인 간 차입거래 시에도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며, 이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영국-세무대리인 준수 의무에 대한 지침 발행]

- 영국 국세청(HMRC)은 세무대리인의 의무에 대한 지침(the standard for agents)을 2017년 1월 4일자로 발행함¹⁵⁾
 - 동 지침은 2016년 8월 3일자로 발표된 초안을 근간으로, 세무전문가 집단의 자체적 윤리규정(Professional Conduct in Relation to Taxation)의 내용을 반영하여 갱신한 것임
 - 특정 전문가 단체뿐만 아니라 전체 세무대리인에게 공통으로 통용되는 윤리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발표함
 - 모든 세무대리인들을 대상으로, 고객에 대한 자문 서비스 및 국세청과의 협의 등의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 의무사항들을 제시함
- 동 지침에서는 신의성실 및 전문가적 주의의무 등 대리인이 세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요건들을 명시함
 - 신의성실성(Integrity)
 - 세무대리인은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숨김없이 정직하게 과세관청을 대할 것이 요구됨
 - 전문가적 능력 및 주의관리 의무(Professional competence and due care)
 - 해당 업무 분야에 대한 최신의 정확한 지식 보유
 - 납세자의 과세신고 또는 환급청구 자료에 오류가 없도록 주의
 - 납세자의 오류 확인시 이를 수정하도록 권유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납세 대리를 중단할 필요가 있음(그럼에도 계속 대리할 경우 조세회피행위로 조세범칙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음)
 - 전문가적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Professional behavior)
 - 전문가로서의 각종 행위에 있어 관련 법규 준수, 자기 자신의 납세 의무 이행 등
- 세무계획(tax planning)에 대한 자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무사항을 열거함으로써 보다 세심하게 유의할 것을 요구함
 - 준법성(Lawful)
 - 세무계획은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 판단과 관련 법률에 대한 신뢰성 있는 해석에 근거하여야 함
 - 관련 규정이나 국세청의 입장에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 이를 고객에게 알리고, 관련 과세처분이나 조세쟁송 가능성 및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함
 - 정보 공개 및 투명성(Disclosure and transparency)

15) Tax Notes International, Volume 89, No. 2 January 8, 2018, pp. 156-157. HMRC(<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hmrc-the-standard-for-agents/hmrc-the-standard-for-agents>, 접속일자: 2018.1.25.)

- 세무대리인은 과세관청에 대하여 모든 관련 사실을 공정하게 제공하여야 함
- 세무계획 수립 시 유의점(Advising on tax planning arrangements)
 - 입법 의도에 명백히 반하거나 관련 법규의 허점을 이용한 세무계획을 제시하거나 이를 지원해서는 안됨
- 전문가적 판단 및 문서화(Professional judgment and appropriate documentation)
 - 세무대리인은 동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개별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적 판단을 내려야 하며, 그러한 판단에 대한 근거를 수시로 문서화할 필요가 있음
- 국세청은 동 의무 기준의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것이며, 이를 위반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을 명시함
-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의 일상적 세무신고 과정에서 의무 기준에 미달하는 행위가 있는지를 관찰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함
-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의 행위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반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음
 - 혐의가 있는 세무대리인의 행위를 해당 전문가 집단에 통지하여 자체적으로 조사 및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음
 - 세무대리인이 부정직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과의 협의를 중단하

고 조세범칙 사안으로 전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으며, 세무대리인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에 접근을 불허할 수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준현 회계사)

[이탈리아-2018 예산법 발표]

- 이탈리아 정부는 2017년 12월 29일 2018년 예산법(Budget Law)을 발표함¹⁶⁾
 - 동 예산법은 2017년 12월 23일 국회 승인을 받았으며, 부가가치세율 인상과 법인의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특례 등 개정세법을 포함함

1. 개인소득세

- 인적공제 대상 자녀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친환경 투자 관련 세액공제 등을 확대함
 - 24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 중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기존의 2,840유로 이하에서 4,000유로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공제요건을 완화함
 - 주거용 주택에 대한 재해보험 보험료의 19%를 세액공제로 허용함
 -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친환경 프로젝트 비용의 36%에 대해 5,000유로를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함
 - 2017년말로 종료되는 주거용 부동산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관련 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2018년까지 연장함

16) Italy-Budget Law for 2018-summary (12 Jan, 2018), News IBFD.



- 개인 투자자의 배당 및 양도소득과 일부 이자소득에 대해 26%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함
 - 기존에는 개인 투자자의 배당 및 양도소득은 종합과세되었으나, 본 세법개정으로 종합과세 대신 26%의 원천징수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됨
 - 적격 플랫폼 기반 피어투피어(peer-to-peer) 대여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26%의 원천징수세를 적용하며, 이 경우 해당 플랫폼을 운영하는 단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함
- 특정 자산에 대해 대체세(substitute tax)를 납부하고 해당 자산의 가치증액을 허용함으로써 향후 해당 자산의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 2018년 1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 또는 적격 부동산에 대해 8%의 대체세를 납부함으로써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납세자는 대체세 납부를 통해 자산가액을 증액함으로써 향후 해당 자산의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경감할 수 있음

2. 법인세

- 투자활성화를 위해 특정 신규 취득 자산 및 디지털 및 기술혁신 관련 취득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을 허용함
 -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취득하는 특정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 계산 시 해당 자산 취득가액의 30%를 실제 취득

가액에 더하여 상각할 수 있도록 함

- 디지털 및 기술 혁신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고도기술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 계산 시 해당 자산 취득가액의 150%를 취득가액에 더하여 상각할 수 있도록 함
- 대주주인 비거주자의 비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에 26%의 대체세를 적용함
 - 이탈리아 비상장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2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비거주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수취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26%의 대체세를 적용함
 - 기존에는 해당 소득의 49.72%를 과세대상 소득으로 하여 일반 세율을 적용하였음¹⁷⁾
- 종업원 훈련비용, 중소기업의 자문료, 문화예술 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함
 -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전략과 관련한 적격 종업원 훈련비용에 대하여 30만유로를 한도로 훈련비용의 40%를 세액공제로 허용함
 -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상장 또는 다국적 무역 관련 자문료의 50%를 50만유로를 한도로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문화사업 영위 법인은 문화 서비스와 상품의 개발, 생산, 홍보와 관련한 비용의 30%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서점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 대해서는 개별 서점당 최대 2만유로의 세액공제를 허용함

17) C. (Cesare) Silvani, Italy—Corporate Taxation sec. 7., Country Analyses IBFD (accessed 22 Jan. 2018).

- 관광사업 영위 법인의 기존 에너지효율 개선 관련 세액공제에 열에너지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을 포함함
 - 관련 비용의 65%를 세액공제함
 - 이탈리아 올림픽 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아마추어 스포츠 법인은 법인세의 50%를 감면함
 - BEPS프로젝트 “Action 7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 방지”의 권고사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대한 규정을 강화함
 - 계약분할을 통한 고정사업장 지위회피 방지 조항을 도입함
 - 예비적 · 보조적 활동 요건을 강화함
 - 종속대리인(dependent agent)의 범위를 확대함
- ### 3. 부가가치세
- 현행 22%의 표준세율과 10%의 경감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함
 - 표준세율은 2019년 24.2%, 2020년 24.9%, 2021년부터는 25%로 인상함
 - 경감세율은 2019년 11.5%, 2020년부터는 13%로 인상함
 - 부가가치세율 인상과 병행하여 경감세율 대상 거리를 확대함
 - 부동산의 개조와 관련한 자재의 공급, 공연과 관련한 집필계약, 이탈리아 올림픽 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아마추어 스포츠 법인의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10%의 경감세율을 적용함
 - 연료구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강화함
 -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에 사용되는 연료 구입비용과 기타 관련 비용은 신용카드 등 과세당국이 인정하는 지급수단을 통해 지급되는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함
 - 2019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함
 - 다만, 자동차 연료 공급, 공공기관에 대한 공급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함
- ### 4. 기타 세목
- 2019년부터 온라인 서비스 등에 3%의 디지털거래세를 도입하기로 함
 -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의 3%를 디지털거래세로 부과하되, 납세의무자는 연간 3,000건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제한함
 - 과세대상 온라인 서비스는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것으로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며 정보통신기술 없이는 제공이 불가능한 서비스를 말함
 - 관련 세부규정이 확정된 다음해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2019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 정규직 채용과 관련하여 고용인의 사회보장세 납부 의무를 경감함
 - 신규 정규직 채용과 관련하여 피고용인의 연령(30세 미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용인의 고용인부담 사회보장세를 연간 3,000유로를 한도로 최장 36개월간 면제함

(자료 수집 및 정리: 흥민옥 회계사)



> 아시아

[일본-2018년 세제개정대강 각의결정]¹⁸⁾

- 일본 정부는 2017년 12월 22일 「2018년 세제개정대강」을 각의결정하였으며, 1월 중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것임
 - 주요 내용은 고소득 급여소득자 공제 축소, 임금 인상·설비투자 기업의 법인세 인하, 담뱃세 증세, 세목(국제관광여객세, 산림환경세) 신설 등이며, 세제개정을 통해 연간 약 2,800억엔 증세를 예상함
 - 「2018년 세제개정대강」은 디스플레이션을 종식하고 경제 회생을 위해 임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

제상의 조치를 강구한 것임

1. 개인소득세

- 2020년 1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동 증세를 통한 세수는 약 900억엔 규모로 전망하며, 급여소득공제 축소, 기초공제 확대, 고소득 급여소득자 공제 축소가 있음

가. 급여소득공제

- 일률적으로 급여소득공제액을 10만엔 인하하고, 급여소득공제의 상한액이 적용되는 급여 등의 수입금액을 연 850만엔 이상 급여생활자(육아, 간병가구 제외, 전체 급여생활자의 약 4%에 해당)를 대상으

〈표 2〉 일본의 급여소득공제 개정

급여수입금액(2017년도)	급여소득공제액
180만엔 이하	수입금액×40% 65만엔 미만인 경우 65만엔
180만엔 초과~360만엔 이하	수입금액×30%+18만엔
360만엔 초과~660만엔 이하	수입금액×20%+54만엔
660만엔 초과~1,000만엔 이하	수입금액×10%+120만엔
1,000만엔 초과	220만엔(상한)
급여수입금액(2018년도)	급여소득공제액
162.5만엔 이하	55만엔
163.5만엔 초과~180만엔 이하	수입금액×40%-10만엔
180만엔 초과~360만엔 이하	수입금액×30%+8만엔
360만엔 초과~660만엔 이하	수입금액×20%+44만엔
660만엔 초과~850만엔 이하	수입금액×10%+110만엔
850만엔 초과	195만엔(상한)

출처: 일본 재무성, http://www.mof.go.jp/tax_policy/summary/income/049.htm(검색일자: 2018.1.10)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answer/shotoku/1410.htm>(검색일자: 2018.1.10)

18) 재정부(http://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18/30taikou_gaiyou.pdf, http://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18/20171222taikou.pdf, 접속일자: 2018.1.3.)

로 급여소득공제 상한액을 195만엔으로 인하하여 증세를 실시함

- 현행 급여소득공제는 급여수입금액에 따라서 최고 40%의 공제율로 개산 공제하는 방식이며, 급여수입금액 수준에 따라 40%, 30%, 20%, 10%의 4단계 공제율이 적용됨¹⁹⁾
 - 급여수입금액이 65만엔 이하인 경우 65만엔을 공제하고, 급여수입금액이 1,0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220만엔을 한도로 공제함

나. 기초공제

- 기초공제는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에서 소득세액의 계산을 위해 총소득금액 등에서 공제할 수 있는 공제 중 하나며, 일정요건 없이 일률적으로 38만엔이 적용됨
 - (소득세) 2018년 세제개정을 통해 현재 38만엔에서 10만엔을 인상하고, 2,400만엔 이상의 소득자는 기초공제금액이 체감되며, 2,500만엔 이상의

고소득자는 공제대상에서 배제함

- (주민세) 공제액이 현행 33만엔에서 43만엔 일률적으로 10만엔 인상됨

2. 법인소득세

- 대기업의 경우 평균급여 등 지급액이 전년도 대비 3% 이상 증가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급여 등 지급증가금액을 세액공제함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평균급여 등 지급액이 전년도 대비 1.5% 이상 증가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급여 등 지급증가금액을 세액공제함
 - 청색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이 2018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3년) 사이 시작하는 각사업 연도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세액공제 허용함
- 임금인상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13년 도입한 법인세 공제제도의 일부 조건과 공제율을 변경하여 개정함

〈표 3〉 일본의 기초공제 개정

소득금액합계액(2017년도)	기초공제금액(소득세)	기초공제금액(주민세)
-	38만엔	33만엔
소득금액합계액(2018년도)	기초공제금액	기초공제금액(주민세)
2,400만엔 이하	48만엔	43만엔
2,400만엔 초과~2,450만엔 이하	32만원	29만엔
2,450만엔 초과~2,500만엔 이하	16만엔	15만엔
2,500만엔 초과	-	-

출처: 일본 「소득세법」 제86조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answer/shotoku/1410.htm>(검색일자: 2018.1.10.)

19) 일본 「소득세법」 제28조 제3항



〈표 4〉 법인세 세액공제 요건 개정

		현행	개정 후
세액 공제요건	대기업	고용주급여등지급증가액 기준고용주급여등지급금액 $\geq 5\%$	폐지
		고용주급여등지급액 \geq 비교고용주급여등지급액 (전사업연도)	급여지급액 \geq 비교고용주급여액지급액 (전사업연도)
		(평균급여등지급액 - 비교평균급여등지급액) / 비교평균급여등지급금액 $\geq 2\%$	(평균급여등지급액 - 비교평균급여등지급액) / 비교평균급여등지급금액 $\geq 3\%$
		국내설비투자에 대한 요구사항 없음	국내설비투자감가상각의 총액 $\geq 90\%$
세액 공제율	중소기업	고용주급여등지급증가액 기준고용주급여등지급금액 $\geq 3\%$	폐지
		고용주급여등지급액 \geq 비교고용주급여등지급액 (전사업연도)	급여지급액 \geq 비교고용주급여액지급액 (전사업연도)
		평균급여등지급금액 > 비교평균급여등지급금액	평균급여등지급액 - 비교평균급여등지급액 / 비교평균급여등지급금액 $\geq 1.5\%$
		국내설비투자에 대한 요구사항 없음	국내설비투자에 대한 요구사항 없음
세액 공제율	대기업	고용주급여등 지급증가액의 10%	- 급여등지급증가액의 15% - (교육비 - 비교교육훈련비) / 비교교육비 $\geq 20\%$ 인 경우, 급여등지급증가액의 20%
		공제한도: 법인세액의 10%	공제한도: 법인세액의 20%
	중소기업	고용주급여등 지급증가액의 10%	- 급여등지급증가액의 15% - 2개 요건 충족시 급여등지급증가액의 25% i) (평균급여등지급액 - 비교평균급여등지급액) / 비교평균급여등지급금액 $\geq 2.5\%$ ii) (교육비 - 전기 교육비) / 전기 교육비 $\geq 10\%$
		공제한도: 법인세액의 20%	공제한도: 법인세액의 20%

주: 3년 한시적인 우대조치이며, 표 내용 의미는 다음과 같음

1. 기준고용주급여등 지급금액은 2013년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각 사업 연도 중 가장 오래된 사업 연도 이전 사업연도의 고용주급여등 지급금액을 의미함(즉, 헤세이 25년 4월 1일 이전에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헤세이 24년도(개인사업자의 경우 2013년) 고용주급여등 지급금액이 기준 고용주급여등지급액임)
2. 비교고용주급여등지급액은 적용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의 고용주급여등지급액을 의미함
3. 고용주급여등 지급증가액은 적용 사업연도의 고용주급여등 지급금액에서 기준고용주급여등 지급금액을 뺀 금액임
4. 교육비는 국내 고용주의 직무에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게 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한 비용(교육, 훈련, 연수, 강습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가. IT 연계투자촉진 세액공제도 신설

- 「정보연계투자등의 촉진에 관한 세제를 신설하고, 「혁신적 사업 활동에 의한 생산성 향상의 실현을 위한 임시조치법」(가칭)에 근거한 설비 투자에 대해서 특별 상각 또는 세액공제 허용
 - 청색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이 혁신적 사업 활동에 의한 생산성 향상의 실현을 위한 임시조치법(가칭)에 따라 혁신적인 데이터 활용 계획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적용함
 - 신설 또는 증설한 소프트웨어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소프트웨어와 더불어 취득 또는 제작한 기계장치, 기구 비품이 있는 경우 그 취득가액의 합계액을 포함)이 5,000만엔 이상인 경우
 - 취득가액의 30% 특별상각 또는 취득가액의 5%(평균급여등 지급금액이 비교평균급여 등 지급금액 대비 3% 이상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3%)의 세액공제 선택 적용
 - 법의 시행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함

나. 중소기업 사업승계세제 확충

- 10년 특례로서 유예대상 주식의 제한(총주식 수의 2/3)의 폐지, 납세유예비율의 인상(80%에서 100%), 고용확보요건의 탄력화를 실시하는 동시에 복수(최대 3명)의 후계자에 대한 상속·증여 대상을 확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감면제도를 신설함
 - 중소 및 영세기업이 사업승계 지원을 통한 감세 규모는 약 700억엔 정도로 전망함

다. 고정사업장 정의의 재검토

- 일본에 진출하는 외국기업 등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를 결정할 고정사업장범위에 반복적으로 주요 역할을 하는 대리인도 포함하며, 동 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법인세부터 적용됨
 - 고정사업장의 범위에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위해 그 사업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일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해 반복하여 주요 역할을 하는 자를 포함함
 - 이러한 계약이 비거주자 등의 자산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계약인 경우에 해당됨
 - 대리인의 형식적 계약체결 행위 자체가 아닌 계약체결에 있어 항상 중요한 역할(대리인의 업무수행이 직접적으로 계약 체결을 유도)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포함
 - 대리인이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기업만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 독립대리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고정사업장으로 봄
 - 독립대리인의 범위에서 전용 또는 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자신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자는 제외함
- 현행법상 보관, 전시, 인도 기타 특정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사업을 행하는 일정한 장소 등은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않았음
 - 본 개정에 따라 그 활동이 비거주자 등이 사업수행에 있어서 준비적 또는 보조적인 기능을 갖는 경우로 '준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 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변경함
 - 준비적 또는 보조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고정사업장에서 제외 시킴



3. 세목 신설

(국제관광여행객세)

- 납세의무자는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의해 출국 확인을 받고 일본으로부터 출국하는 관광객 그 외의 사람을 말하며,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 등을 제외) 국제관광여행객 등이며, 출국 1회당 1천엔을 부담
 - 2020년 1월 7일부터 일본 출국시 1인당(일본인도 포함) 1천엔을 부담하는 국제관광여행객세를 신설하여 약 400억엔 규모의 세수를 전망함

(삼림환경세)

- 2024년부터 개인주민세 납세자는 주민세에 1인당 연간 1천엔을 추가하여 부담하는 삼림환경세를 신설하여 약 600억엔 규모의 세수를 전망

4. 기타

- 일반 께련담배는 3회(2018년 10월, 2020년 10월, 2021년 10월)에 걸쳐 1개비당 1엔씩 총 3엔을 단계적으로 인상함

- 가열식 전자담배는 현행 담배세법에 정의 규정이 없었으나, 동 개정으로 과세구간을 신설하고 그 제품 특성에 따른 과세방식으로 과세함
 - 현행 가열식 담배의 세율은 잎담배 포장 스틱 등의 중량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였으나, 일반 께련담배보다 세금부담수준이 낮고 담배 회사 제품마다 가열식담배의 중량 차이가 발생하므로 무게 이외에 소매가격도 감안하여 세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일반 께련담배의 70~90% 세율로 과세 결정

- 가열식 담배의 흡연용구에 있어서, 가열을 통해 증기화되는 글리세린 및 기타 물품 또는 이들의 혼합물이 충전된 것(일정한 사람이 제조한 것은 제외)은 제조담배라고 간주하여 담배세법과 지방세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이 경우 제조담배는 가열식담배로 구분함(간주 제조담배의 정비)
 - 종이로 말아피는 담배 개수 환산방법 개정: 가열식담배 과세표준은 다음 두 항에 따라 환산한 종이에 말아피는 담배 개수의 합계로 산정²⁰⁾

〈표 5〉 일본의 께련담배 세율 개정

(단위: 엔, 천개비)

	개정 전	개정 후		
		2018년 10월1일	2020년 10월1일	2021년 10월1일
국세	5,302	5,802	6,302	6,802
지방세	6,122	6,622	7,122	7,622
	담배특별세	860	930	1,000
	담뱃세	5,262	5,692	6,122
합계	11,424	12,424	13,424	14,424

20) 현행 가열식 담배의 세율은 잎담배 포장 스틱 등의 중량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였으나, 일반 께련담배보다 세금부담수준이 낮고, 담배 회사 제품마다 가열식담배의 중량 차이가 발생하여 무게 이외에 소매가격도 감안하여 세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일반 께련담배의 70~90% 세율로 과세

- 가열식담배 중량에 근거한 환산방법에 사용하는 중량은 필터와 기타 일정 물품의 중량을 포함하지 않은 중량으로 하고, 당해 중량 0.4g을 가지고 종이에 말아피는 담배 0.5개로 환산
 - 가열식담배의 소매정가에 근거한 환산방법을 도입하여 종이에 말아피는 담배 1개당 평균소매가격을 가지고 가열식 담배 소매가격을 종이에 말아피는 담배 0.5개로 환산
- 일반 쉐련담배와 가열식 전자담배의 담뱃세를 인상하여 약 2,500억엔 규모의 세수 증대를 전망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경화 전문연구원)
- 의 취득세를 7.5%로 경감한 이후 2018년 1월 1일부터 10%를 징수하기로 함
 -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신에너지 차량 제품기술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점검 테스트를 통과해야 함²¹⁾
 - 신에너지 차량의 생산과 수입 업체는 차량품질, 안전감시, 동력전지 재활용, A/S 등과 관련한 기준을 만족해야 함
 - 전기주행거리 요구사항 충족, 30분간 승용차 최대속도 100km/h 이상 유지, 배터리 품질 일정 요건 이상 등
- (자료 수집 및 정리: 정경화 전문연구원)

[중국-신에너지 자동차 취득세 면제]²¹⁾

- 중국 재정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신에너지 자동차 취득세 면제에 관한 공고'를 2017년 12월 27일 발표함
 -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던 신에너지 자동차 취득세 면제의 연장 조치며,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은 유지하면서 동 면제조치를 함께 시행하기로 함
- 취득세 면제 대상은 순수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임
 - 중국의 자동차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대상 차량 가격이며, 세율은 10% 단일세율임²²⁾
 - 2017년 한시적으로 배기량 1.6리터 이하 자동차

21) 재정부(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712/120171227_2788817.html, 접속일자: 2018.1.11.)

22) 우리나라의 차량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며, 세율은 「지방세법」 제12조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000의 70(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000의 40)으로 부과함

23) 국가세무총국(<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2985330/content.html>, 접속일자: 2018.1.12.)



국제기구

[OECD-Action 14 상호검토 보고서 발표]

■ OECD는 2017년 12월 15일 BEPS프로젝트 “Action 14 분쟁해결장치의 효과성 제고”와 관련하여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스웨덴 등 7개국에 대한 상호검토(peer review) 보고서를 발표함²⁴⁾

• Action 14는 BEPS프로젝트 15개 Action 중 최소 기준(minimum standard)에 해당하는 4개의 Action 중 하나로 상호검토(peer review) 대상에 해당함

- Action 14 외에 최소기준에 해당하는 Action으로는 Action 5(유해조세환경에 대한 효과적 대응), Action 6(부적절한 상황에서 조약혜택의 부여 방지), Action 13(이전가격문서화와 국가별보고서) 등이 있음

• OECD는 2017년 9월 영국,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미국, 스위스 등 6개국에 대한 상호검토(peer review)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 Action 14 상호검토는 Action 14의 최소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하는 1단계와 1단계에서 발견한 미비점의 시정 여부를 평가하는 2단계로 이루어지며, 본 상호검토 보고서는 1단계 검토 보고서임

• 본 1단계 상호검토 보고서는 Action 14의 네 가지 최소기준인 ① 분쟁방지 노력, ② 상호합의절차(MAP)의 이용가능성과 접근성 보장, ③ MAP 사건의 해결, ④ MAP 합의 이행 등에 대한 이행 현황을 평가함

■ 상호검토 결과 검토대상국들은 Action 14의 최소기준을 대체로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국가별 미비점에 대해서는 상호검토 보고서에 상세한 개선방안을 기술함

• 검토대상국은 대체로 Action 14의 최소기준에 부합하나, 24개월 이내에 MAP사건 해결 준수, MAP 이용가능성, MAP에 대한 보다 명료한 안내, 일부 조세조약 개정 등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²⁵⁾

■ OECD는 2020년까지 1단계 상호검토를 완료하고, 1단계 검토 이후 1년 이내에 2단계 검토를 진행할 계획임

〈자료 수집 및 정리: 흥민옥 회계사〉

24) OECD

(http://www.oecd.org/tax/oecd-releases-second-round-of-peer-reviews-on-implementation-of-beps-minimum-standards-on-improving-tax-dispute-resolution-mechanisms.htm?utm_source=Adestra&utm_medium=email&utm_content=OECD%20releases%20second%20round%20of%20peer%20reviews%20on%20implementation%20of%20BEPS%20minimum%20standards%20on%20improving%20&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15-12-2017&utm_term=demo, 접속일자: 2018.01.23.)

25) EY

([http://www.ey.com/Publication/vwLUAssets/OECD_releases_second_batch_of_peer_review_reports_on_Action_14/\\$FILE/2017G_07108-171Gbl_OECD%20releases%20second%20batch%20of%20peer%20review%20reports%20on%20Action%2014.pdf](http://www.ey.com/Publication/vwLUAssets/OECD_releases_second_batch_of_peer_review_reports_on_Action_14/$FILE/2017G_07108-171Gbl_OECD%20releases%20second%20batch%20of%20peer%20review%20reports%20on%20Action%2014.pdf), 접속일자: 2018.01.23.)

[OECD-2017 OECD모델조세조약 공개]

- OECD는 2017년 12월 18일 2017 OECD모델조세조약을 공개함²⁶⁾
 - OECD모델조세조약은 1963년 처음 출판되어 현재 3,000개 이상의 조세조약의 모델조약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17 OECD모델조세조약은 2014년 개정 이후 첫 개정본임
- 2017 OECD모델조세조약은 주로 BEPS프로젝트의 조세조약 관련 실행과제(Action)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이 반영되어 개정됨²⁷⁾
 - 조세조약 관련 실행과제로는 “Action 2 혼성불일치 거래 효과의 해소”, “Action 6 부적절한 상황에서 조약혜택 부여의 방지”, “Action 7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 “Action 14 분쟁해결 장치의 효과성 제고” 등이 있음
- Action 6(조약남용)과 관련하여 모델조약의 제목(Title) 및 서문(Preamble)을 개정하고 “제29조 혜택의 자격(Entitlement to benefits)” 조항을 신설함
 - 조세조약의 목적이 이중과세 제거뿐 아니라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에 있음을 모델조약 제목과 서문에 명시함
 - 신설된 “제29조 혜택의 자격”에 혜택의 제한(Limitation-on-Benefits) 및 주요목적테스트(Principal Purpose Test)규정을 포함하여 조세

조약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함

- Action 7(고정사업장)과 관련하여 모델조약 “제5조 고정사업장” 및 관련 주석(Commentary)을 개정함
 -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종속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예비적·보조적 활동 등 고정사업장 배제규정의 적용 요건을 강화함
 - 기업의 사업활동을 고려하여 특정 활동이 실질적으로 예비적·보조적 성격인지 판단하며, 계약분할 등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인위적으로 예비적·보조적 성격의 활동으로 만드는 것을 방지함
- Action 14(분쟁해결장치)와 관련하여 모델조약 “제25조 상호합의절차” 및 관련 주석을 개정함
 - 기존에는 해당 납세자의 거주지국의 과세당국에만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조세조약 체결 양국의 과세당국 모두에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함
- BEPS프로젝트에 따른 개정 항목 외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제4조 거주자”의 “일상적 거소”의 정의와 관련하여 해당 주석을 개정함
 - “제8조 국제 선박 및 항공 운송”과 관련하여 “국제 운송”의 정의 및 “승무원 등에 대한 과세” 조항

26) OECD

(http://www.oecd.org/tax/treaties/tax-treaties-2017-update-to-oecd-model-tax-convention-released.htm?utm_source=Adestra&utm_medium=email&utm_content=Read%20the%20press%20release&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18-12-2017&utm_term=demo, 접속일자: 2018.01.23.)

27) OECD(<http://www.oecd.org/ctp/treaties/2017-update-model-tax-convention.pdf>, 접속일자: 2018.01.23.)



및 해당 주석을 개정함

- “제10조 배당” 관련 제한세율(5%)의 적용 요건, 투과과세단체(fiscally transparent entity)에 대한 조약 적용 등에 대한 주석을 개정함
- “제13조 자본이득”의 해당 주석을 개정하여 부동산 과다법인의 주식 양도에 따른 자본이득에 대해 부동산 소재지국의 과세권을 강화함

(자료 수집 및 정리: 흥민옥 회계사)

[EU-우리나라를 비롯한 8개국에 대한 조세피난처 지정 철회]

-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2018년 1월 23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에 대해 조세피난처 지정을 철회한다고 발표함²⁸⁾
 - 이에 앞서 EU는 2017년 12월 5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17개국을 조세피난처(non-cooperative jurisdictions)로 지정한 바 있음
- EU의 조세피난처 지정은 ① 조세투명성, ② 공평과세, ③ BEPS(세원잠식과 소득이전)방지 조치의 이행 등 3 가지 기준을 근거로 이루어지며²⁹⁾ 우리나라는 유해 조세특례제도를 이유(공평과세 위배)로 조세피난처로 지정된 바 있음³⁰⁾

- 유럽위원회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유해 조세특례제도(harmful preferential tax regime)을 갖고 있으며, 2018년 말까지 동 유해제도 폐지이행을 약속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남³¹⁾ - 다만, EU가 문제 삼은 유해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발견되지 않음
- EU가 지정한 조세피난처 국가 중 OECD 회원국은 우리나라가 유일하였음
- 조세피난처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서는 EU 회원국의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공제, CFC적용, 원천징수, 경영참여소득면제(participation exemption) 적용, 입증책임 등의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조세피난처 지정 이후 EU는 일부 국가들의 개선 약속을 받아들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을 조세피난처에서 “조건부 협력적 국가”³²⁾로 지정하였으며, 문제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임³³⁾
 - 관련 조치에 따라 우리나라는 유해 조세특례제도를 2018년 말까지 개정하거나 폐지하여야 함^{34) 35)}
 - EU는 매해 최소 1회 이상 조세피난처 리스트를 업데이트할 계획임³⁶⁾

(자료 수집 및 정리: 흥민옥 회계사)

28) European Council (<http://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8/01/23/taxation-eight-jurisdictions-removed-from-eu-list/>, 접속일자: 2018.01.30.)

29) European Council(<http://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5086-2018-INIT/en/pdf>, 접속일자: 2018.01.31.)

30) European Council(<http://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15429-2017-INIT/en/pdf>, 접속일자: 2018.01.31.)

31) Ibid., p. 9.

32) State of play of the cooperation with the EU with respect to commitments taken to implement tax good governance principles

33) European Council(<http://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5086-2018-INIT/en/pdf>, 접속일자: 2018.01.31.)

34) Ibid., p. 4.

35) European Council(<http://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15429-2017-INIT/en/pdf>, 접속일자: 2018.01.31.), p. 15.

36) Ibid., p. 6.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EU 집행위, 2020년 다년도 예산 체계 논의 착수 (2018.1.10.)¹⁾
 - EU 집행위원단(College of Commissioners)은 EU 2020년 이후 다년도 예산 체계(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after 2020)에 대한 예비 토론회를 개최
 - * 다년도 예산 체계는 5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EU가 각기 다른 정책 분야에서 각 해마다 지출할 수 있는 최대 연간 예산을 균율한 것으로, 각 연도 예산은 다년도 예산 체계를 준수해야 함
 - * 현 다년도 예산 체계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을 다루고 있음
 - 성장, 고용 및 혁신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면서 디지털 혁명, 세계화, 기후 변화, 이민, 국방 및 안보와 같이 향후 10년의 주요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EU 예산이 집중될 전망
 - 집행위는 3월까지 EU 우선순위에 대한 공개 공공 협의를 진행한 후, 5월에 다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
 - EU 우선순위와 투자 방향, 현행 정책 및 프로그램의 시행 효과, 개선 방향에 관한 시민,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접수받아 다년도 예산 체계에 반영
- EU 집행위, Report on Public Finances in EMU 2017 발표(2018.1.12.)²⁾
 - EU 경제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전 회원국이 전망기간 동안 양(+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실업도 감소하는 등 회복세가 강화되며 재정도 개선될 전망
 - 그러나 이는 예외적인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부터 기인한 면이 크며, 낮은 생산성 증가, 회원국별로 큰 격차를 보이는 투자, 침체된 임금 및 물가 상승률, 높은 장기·청년실업률 등 금융위기 여파가 아직 잔존
 - 잠재 성장을 촉진하고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개혁을 실행하는 것이 핵심적인 정책 과제임
 - 2장에서는 재정 감독 이행과 관련해 2016년과 2017년에 도입·변화된 제도를 설명
 - SGP 준수 여부를 평가할 때 측정 용이성,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적 재정수지의 변화 외에 지출 기준(정부 지출 증가율 상한)을 추가적으로 고려
 - 구조적 재정수지를 계산하기 위해 산출갭을 추정할 때, 타당성 분석(plausibility tool)에서 산출갭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된 판단(Constrained judgement)을 적용
 - ☞ 공통 추정법으로 추정된 산출갭의 불확실성 정도가 클 때 회원국 경제 상황 분석 시 추가적으로 감안

1) 출처: EU 집행위, https://ec.europa.eu/commission/news/institutional-priorities-2018-and-future-eu-budget-2018-jan-10_en

2) 출처: EU 집행위, https://ec.europa.eu/info/publications/economy-finance/report-public-finances-emu-2017_en



- 3장에서는 소득 분포에 관한 재정 정책의 효과를 분석
 - 재정 정책 효과를 가처분 소득 변화를 통한 직접 효과와 경제주체의 행태 변화, 정부 재정 지출가능성 등을 통한 간접 효과로 구분할 때, 특정 정책에서 단기적으로 보이는 불평등 완화 효과는 장기에는 간접적 효과로 인해 감소
 - EU는 높은 시장 소득 불균형에 직면하고 있으나, 조세 및 사회 급여를 통한 재분배 정책으로 소득 불균형이 현격히 감소
 - 질병, 장애, 가족 및 자녀 수당과 함께 교육, 보건 지출이 증가하는 EU의 평균적인 소득 불균형을 감소시키나, 장기에는 그 효과가 감소하므로 불평등 감소를 위한 재정 정책은 면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
 - 자동안정화장치의 가계 소득에 대한 효과는 매우 크지만 회원국별로 상이하며 행태 변화와 거시경제 효과를 고려하면 다소 감소
- 4장에서는 공공 투자의 결정 요소를 분석
 - 공공 투자는 GDP, 인구구조 등 경제적 요소, 선거 주기 등 정치경제적 요소에 영향을 받으며, 결정적으로 공공 채무나 적자 등 재정적 요소에 영향을 받음
 - 또한 훌륭한 거버넌스와 더 나은 하위 정부 행정 관행 등 제도적 요소가 공공 투자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하며, 특히 강력한 국가 재정 준칙과 거버넌스는 높은 공공 채무가 공공 투자에 미치는 악영향을 완화할 수 있음
 - 5개 회원국에 대한 사례분석 결과, 정부 수준

간 조정 및 자금조달, 조달 절차, 행정 역량과 같은 분야에서 공공 투자 관리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

- EU 통계청, 2017년 3분기 일반정부 계절조정 재정수지 발표(2018.1.24.)³⁾
 - 2017년 3분기 유로지역 19개국과 EU 28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각각 -0.3%와 -0.6%를 기록하여 전 분기(각각 -1.0%, -1.2%)에 비해 개선됨
 - (EA19) 2017년 3분기 총수입은 GDP 대비 46.2%, 총지출은 46.5%를 기록
 - (EU28) 2017년 3분기 총수입은 GDP 대비 44.8%, 총지출은 45.4%를 기록
 - 유로지역과 EU 모두에서 전기 대비 총수입은 증가하고 총지출은 감소

〈표 1〉 유로지역 19개국 및 EU 28개국의 2017년 3분기 계절조정 재정수지

(단위: GDP 대비 %)

	2016Q3	2016Q4	2017Q1	2017Q2	2017Q3
EA19					
재정수지	-1.6	-1.1	-1.0	-1.0	-0.3
총수입	46.2	46.2	46.3	46.1	46.2
총지출	47.8	47.3	47.3	47.1	46.5
EU28					
재정수지	-1.7	-1.2	-1.0	-1.2	-0.6
총수입	44.8	44.8	44.9	44.7	44.8
총지출	46.6	46.0	46.0	45.9	45.4

주: EA 및 EU 수치는 국가별 수치의 가중 평균임
출처: EU 통계청, 보도자료, 2018.1.24.

3) 출처: EU 통계청, <http://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8609582/2-24012018-BP-EN.pdf>

- EU 통계청, 2017년 3분기 말 일반정부 채무 발표 (2018.1.24.)⁴⁾
 - 2017년 3분기 말 유로지역 19개국과 EU 28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는 각각 88.1%와 82.5%를 기록하여 전 분기(각각 89.0%, 83.3%)에 비해 감소
 - GDP 대비 채무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그리스(177.4%), 이탈리아(134.1%), 포르투갈(130.8%) 순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에스토니아(8.9%), 룩셈부르크(23.4%), 불가리아(25.6%) 순임
 - 전 분기 대비 체코(-4.3%p), 키프로스(-2.9%p), 리투아니아(-2.3%p) 등 23개국이 감소한 가운데 에스토니아와 룩셈부르크는 불변, 그리스(1.3%p), 벨기에(0.9%p), 크로아티아(0.1%p) 등 3개국은 증가
 - 전년 동기 대비 키프로스(-7.4%p), 네덜란드(-4.5%p), 몰타(-4.4%p) 등 24개국이 감소한 가운데, 라트비아는 유지, 이탈리아(2.0%p), 룩셈부르크(1.7%p), 프랑스(1.0%p) 등 3개국은 증가
- EU 이사회, 브렉시트 협상지침 채택(2018.1.29.)⁵⁾
 -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이 참석한 EU 일반 이사회는 브렉시트 이행 기간과 관련한 협상 지침을 채택
 - (주요 내용)
 - (이행 기간) 2017년 12월 15일 정상회의의 지침에서 이행 협정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정확한 기간 내에 제한되어야 한다고 명시한 것과 관련해, 이행 기간 종료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제시
 - (EU 조약) 영국은 이행 기간 중 회원국에 준하여 EU 조약을 적용받으며 이 기간 동안 EU 기구, 단체, 사무소 및 기관이 채택한 개정 사항이 영국에서도 적용됨
 - (무역 정책) 영국은 이행 기간 중 관세 동맹 및 단일 시장에 계속 참여함에 따라 EU 관세 및 무역 정책을 계속 준수해야 함
 - (기구) 이미 제3국인 영국은 더 이상 EU의 기구와 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않되 경우에 따라 예외적으로 투표권 없이 회의에 초청될 수 있음

〈표 2〉 유로지역 19개국 및 EU 28개국의

2017년 3분기 말 정부 채무

(단위: GDP 대비 %)

	2016Q3	2017Q2	2017Q3
EA19	89.7	89.0	88.1
EU28	82.9	83.3	82.5

주: EA 및 EU 수치는 국가별 수치의 가중 평균임
출처: EU 통계청, 보도자료, 2018.1.24.

(자료 수집 및 정리: 장준희 연구원)

4) 출처: EU 통계청, <http://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8609567/2-24012018-AP-EN.pdf>

5) 출처: EU 이사회, <http://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8/01/29/brexit-council-article-50-adopts-negotiating-directives-on-the-transition-period/>



IMF

■ IMF, World Economic Outlook(WEO) Update 발표(2018,1,22.)⁶⁾

- (동향) 경기순환적 회복세가 지속됨에 따라 2017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7%(지난 10월 전망 대비 +0.1%p)로 예상되고, 유럽과 아시아의 상승세가 큼
 - 지난 WEO 10월 전망에 비해 독일,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등의 국가들에서 2017년 3사분기 경제성장세가 특히 개선됨
- (전망) 2017년 경제성장세가 2018-19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계 경제성장률은 지난 10월 전망 대비 각각 0.2%p 개선된 3.9%로 전망
 - (주된 요인) ① 양호한 세계 금융여건과 시장심리에 따른 투자 촉진, ② 세계개편안 등을 통한 미국의 경제성장과 캐나다·멕시코 등의 무역상대국에 미치는 긍정적인 수요 파급효과를 고려
 - ☞ (미국) 높은 대외수요와 세계개편안*의 영향으로 2018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전망 대비 0.4%p 상승한 2.7%로 전망되고, 2019년은 2.5%로 전망(10월 대비 0.6%p 상승)
 - * 내용-법인세율 인하(35% → 21%) 및 투자비용에 대한 일시적인 공제
 - * 효과-전망에 불확실성이 있으나 2020년까지 미국 경제성장률에 1.2%의 총누적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 일부는 일시적인 조치이므로 2022년 이후부터 몇 년 동안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

- ☞ (유로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경제성장을 전망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특히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에서 대내·외 수요가 증가하여 경제성장률이 높아짐
- ☞ (일본) 2018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지난 전망 대비 0.5%p 상승한 1.2%, 2019년은 0.9%로 전망되며, 이는 대외수요 개선과 2018년 추가경정예산 및 경제활동 증가세를 반영
- ☞ (중국) 대외수요 강세를 반영하여 2018-19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전망 대비 각각 0.1%p 상승한 6.6%, 6.4%로 전망
- (위험) 단기적으로는 성장 모멘텀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고 금융시장 조정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 가능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하여 위험이 균형적이나, 중기적으로는 금융시장 취약성의 누적, 보호주의 정책, 비경제적 요인 등이 하방위험으로 작용
 - (단기) 현재까지는 통화정책 정상화가 WEO시나리오에 비해서 보다 점진적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금융시장 조정으로 미 금리 인상속도가 빨라질 수 있음
 - (중기) 금융완화가 유지될 경우 취약성이 누적될 수 있으며, 자국 중심주의 정책이 채택될 가능성과 지정학적 긴장 등이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음
 - ☞ 금융시장 취약성 누적: 금융 조건의 완화 기조가 중기에도 유지되면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가 저신용 기업 혹은 국가차입자 등

6) <http://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18/01/11/world-economic-outlook-update-january-2018>

- 에 투자하게 되어 취약성 증가
- ☞ 보호주의 정책: NAFTA, 영국, EU 간의 경제협정 등이 재협상 중이므로 무역장벽 및 규제 재설정으로 대다수 국가들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음
- ☞ 비경제적 요인들: 지정학적 긴장(특히 동아시아와 중동), 정치적 불확실성, 최근의 극심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이민 증가로 인한 갈등 증가
- (정책권고) 경제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국가들은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 및 금융시장 회복력(resilience) 증대를 우선 목표로 하고, 국가별 상황에 따른 최적의 정책 조합을 시행해야 함
 - (선진국) 재정정책은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공투자와 노동참여율 제고를 위한 정책 노력을

기울이고, 통화정책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함

- ☞ 산출량이 잠재산출량에 근접하고 임금·물가 압력이 낮은 국가들은 데이터를 참고하여 신중한 통화정책 정상화가 필요

* 단, 실업률이 낮으며 앞으로도 실업률이 추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들(예, 미국) 현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경우 빠른 속도의 정상화 가능성 있음

- ☞ 산출량 갭이 지속되고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 목표치보다 낮은 국가들은 경기 대응적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함

- (신흥·개도국) 원자재 가격이 경기순환적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을 잘 이용하여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과 예산조정을 시행해야 함

〈표 3〉 세계 경제 전망

(단위: %)

	실적치		전망치		10월 전망과 차이 ¹⁾	
	2016	2017	2018	2019	2018	2019
World Output	3.2	3.7	3.9	3.9	0.2	0.2
Advanced Economies	1.7	2.3	2.3	2.2	0.3	0.4
United States	1.5	2.3	2.7	2.5	0.4	0.6
Euro Area	1.8	2.4	2.2	2	0.3	0.3
Germany	1.9	2.5	2.3	2	0.5	0.5
France	1.2	1.8	1.9	1.9	0.1	0
Italy	0.9	1.6	1.4	1.1	0.3	0.2
Spain	3.3	3.1	2.4	2.1	-0.1	0.1
Japan	0.9	1.8	1.2	0.9	0.5	0.1
United Kingdom	1.9	1.7	1.5	1.5	0	-0.1
Canada	1.4	3	2.3	2	0.2	0.3
Other Advanced Economies ²⁾	2.3	2.7	2.6	2.6	0.1	0.1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4.4	4.7	4.9	5	0	0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0.4	2.2	2.2	2.1	0.1	0



〈표 3〉의 계속

(단위: %)

	실적치		전망치		10월 전망과 차이 ¹⁾	
	2016	2017	2018	2019	2018	2019
Russia	-0.2	1.8	1.7	1.5	0.1	0
Excluding Russia	1.9	3.1	3.4	3.5	0.1	0
Emerging and Developing Asia	6.4	6.5	6.5	6.6	0	0.1
China	6.7	6.8	6.6	6.4	0.1	0.1
India ³⁾	7.1	6.7	7.4	7.8	0	0
ASEAN-5 ⁴⁾	4.9	5.3	5.3	5.3	0.1	0
Emerging and Developing Europe	3.2	5.2	4	3.8	0.5	0.5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0.7	1.3	1.9	2.6	0	0.2
Brazil	-3.5	1.1	1.9	2.1	0.4	0.1
Mexico	2.9	2	2.3	3	0.4	0.7
Middle East, North Africa, Afghanistan and Pakistan	4.9	2.5	3.6	3.5	0.1	0
Sub-Saharan Africa	1.4	2.7	3.3	3.5	-0.1	0.1
Low-Income Developing Countries	3.6	4.7	5.2	5.3	0	0.1
World Growth Based on Market Exchange Rates	2.5	3.2	3.3	3.2	0.2	0.2
World Trade Volume(goods and services)⁵⁾	2.5	4.7	4.6	4.4	0.6	0.5
Advanced Economies	2.6	4.1	4.3	4.2	0.6	0.7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2.3	5.9	5.1	4.8	0.4	0.2
Commodity Prices(U.S. dollars)						
Oil ⁶⁾	-15.7	23.1	11.7	-4.3	11.9	-5.0
Nonfuel	-1.6	6.5	-0.5	1	-1.0	1.5
Consumer Prices						
Advanced Economies	0.8	1.7	1.9	2.1	0.2	0.1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⁷⁾	4.3	4.1	4.5	4.3	0.1	0.2

주: 1)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7 전망치와의 차이

2) G7국가들(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과 유로지역 국가들 제외

3) 실적/전망치 데이터는 회계연도를 기초, 2011년부터 2011-12년 회계연도를 기준연도로 한 시장가격 기준 GDP

4)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5) 수출과 수입 생산물의 산술 평균

6) 영국 브렌트(Brent), 두바이(Dubai), 미 서부텍사스의 중질유(Intermediate crude oil)의 단순평균가격. 2017년 원유의 평균가격은 배럴당 52.7달러, 선물시장에 기초한 원유 가장 가격은 2018년은 59.9달러, 2019년 56.4달러

7)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제외

참고: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은 2017년 11월 13일~12월 11일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된 것으로 간주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2018, Table 1.

〈자료 수집 및 정리: 강민채 전문연구원〉



- OECD, 2017년 3분기 고용률(Quarterly Employment Situation) 발표(2018.1.18.)⁷⁾
 - 2017년 3분기 고용률(15~64세)은 OECD 회원국 67.8%, 유로지역 66.4%로 전 분기 대비 각각 0.2%p씩 상승
 - 캐나다, 일본, 미국은 전 분기 대비 각각 0.1%p,

0.3%p, 0.1%p 상승한 73.4%, 75.5%, 70.2% 기록
 - 프랑스, 영국은 전 분기 대비 각각 0.2%p, 0.1%p 하락한 64.6%, 74.1% 기록

〈표 4〉 OECD 회원국의 고용률(15~64세, 계절조정)¹⁾

(단위: %)

	2008 ²⁾	2014	2015	2016					2017		
	Q2				Q1	Q2	Q3	Q4	Q1	Q2	Q3
OECD 전체	66.5	65.7	66.2	66.9	66.8	66.8	67.0	67.2	67.4	67.6	67.8
G-7	69.6	68.7	69.1	69.9	69.7	69.7	69.9	70.1	70.3	70.5	70.7
유럽연합	65.8	64.8	65.6	66.6	66.2	66.5	66.7	66.9	67.2	67.6	67.7
유로지역	65.9	63.8	64.5	65.4	65.1	65.3	65.5	65.7	65.9	66.2	66.4
호주	73.3	71.6	72.2	72.4	72.5	72.4	72.4	72.3	72.4	72.8	73.2
캐나다	73.6	72.3	72.5	72.6	72.5	72.5	72.4	72.9	73.3	73.3	73.4
프랑스	64.9	63.8	63.8	64.2	64.2	64.1	64.2	64.2	64.4	64.8	64.6
독일	69.8	73.8	74.0	74.7	74.3	74.3	74.9	75.0	74.9	75.1	75.4
이탈리아	58.8	55.7	56.3	57.3	56.8	57.4	57.3	57.4	57.7	57.8	58.1
일본	70.9	72.8	73.4	74.4	74.1	74.2	74.6	74.7	75.0	75.2	75.5
스페인	65.1	56.0	57.8	59.6	59.1	59.3	59.7	60.1	60.4	61.0	61.4
영국	71.8	71.9	72.7	73.5	73.3	73.5	73.5	73.7	73.9	74.2	74.1
미국	71.2	68.1	68.7	69.4	69.3	69.2	69.3	69.5	69.8	70.1	70.2
한국	63.9	65.3	65.7	66.1	65.9	65.9	66.2	66.3	66.5	66.6	66.6

주: 1) 고용률 = $\frac{\text{취업자 수}}{\text{15~64세 인구수}} \times 100$

2) 세계금융위기 발발 이전 분기의 수치를 고려

출처: OECD Quarterly Employment Situation, Short-Term Labor Market Statistics 재구성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은숙 전문연구원)

7) 출처: OECD, <http://www.oecd.org/newsroom/employment-situation-third-quarter-2017-oecd.htm>



미국

1. 예산·결산 등

- 미 의회예산처(CBO), FY2018 1분기(2017.10.~12.) 재정집행실적 발표(2018.1.8.)⁸⁾
 - (재정 적자) 2018 회계연도의 재정 적자는 2,280억달러, 전년 동기 대비 180억달러 증가
 - (세입) 전년 동기 대비 4%(290억달러) 증가한 7,700억달러 기록
 - 주요 변화분은 근로소득세(Amounts withheld from workers' paychecks)의 증가(370억달러, 약 7%)와 법인세의 하락(100억달러, 약 7%)으로 구성
 - (세출) 전년 동기 대비 5%(470억달러) 증가한

9,980억달러 기록

- 세출 증가의 주요요인은 사회보장지급금의 증가(80억달러, 3.4%)이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감소
- 또한, 국가채무 순이자(net interest on the public debt)의 증가(110억달러, 15%)와 국토안보부의 자연재해에 대응한 지출이 세출 증가에 기인

〈표 5〉 미국 재정(실적)

(단위: 십억달러)

	FY2017 1분기(A)	FY2018 1분기(B)	변화분(B-A)
총수입	741	770	29
개인소득세	353	385	32
급여세 (payroll taxes)	252	259	7
법인세	76	66	-10
기타	60	60	0
총지출	951	998	47
사회보장지급금	230	238	8
메디케어	127	126	-1
메디케이드	96	95	-2
기타	498	540	41
재정 적자	210	228	18

출처: Congressional Budget Office, Monthly Budget Review

8) 출처: CBO, <https://www.cbo.gov/system/files/115th-congress-2017-2018/reports/53443-mbr.pdf>

- 미 의회, FY2018 4차 임시 예산(Continuing Resolution, H.R. 195/P.L. 115-120) 통과 (2018.1.22.)⁹⁾
 - 동 법은 2018.1.19.에 만료된 FY2018 제 3차 임시 예산을 연장한 법으로 만료시한은 2018년 2월 8일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제4차 임시예산은 제3차 임시예산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법 등 합의 불발로 의회에서 법안통과가 지연되어 1.20(토)~1.22(월) 동안 정부폐쇄 사태가 발생. → 1.22(월) 밤에 극적으로 타결됨¹⁰⁾

〈표 6〉 FY2018 임시예산(Continuing Resolution) 추이

임시예산(CR) 회차	법안 번호	의회 통과일	만료일
제1차 임시예산	H.R.601 (P.L. 115-56)	2017.09.08	2017.12.08
예산결의안 ^{1) 2)} 통과	H.Con.Res.71	2017.10.26	-
제2차 임시예산	H.J.Res.123 (P.L. 115-90)	2017.12.07	2017.12.22
제3차 임시예산	N/A	2017.12.21	2018.01.19
제4차 임시예산 불발	-	주말 동안 정부폐쇄 (Government Shutdown) 사태 발생 → 폐쇄 이틀 후 제4차 임시예산안 통과	
제4차 임시예산	H.R.195 (P.L. 115-120)	2018.01.22	2018.02.08

주: 1) 예산결의안: 대통령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의회는 미 의회 예산(상임)위원회의 주도로 국가정책 및 우선순위 등을 담은 예산결의안을 작성(작성된 예산결의안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됨)

2) '예산결의안' 관련 주 1)의 설명은 (재)한국회계발전연구회, 『미국 연방예산과정에 관한 연구』, 2004.11.을 참고하였음

(자료 수집 및 정리: 구윤모 전문연구원)

9) 미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 <https://appropriations.house.gov/news/documentsingle.aspx?DocumentID=395088>

10)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18/jan/22/government-shutdown-republicans-democrats>



일본

1. 예산·결산 등

■ 2018년도 정부예산안 발표(2017.12.22.)¹¹⁾

- (주요 내용) 2018년도 예산은 「경제·재정 재생계획」¹²⁾ 집중개혁 기간의 마지막연도 예산으로 경제재생과 재정건전화에 양립하는 예산
 - (인재육성 혁명) 백세인생시대를 대비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전 세대형 사회보장으로 전환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충
 - ☞ 보육시설 확대
 - ☞ 보육교사 및 간호 인력 처우개선
 - ☞ 육아교육의 단계적 무상화
 - ☞ 급부형 장학금 확충
 - (생산성 혁명) 지속적인 임금인상과 지속적인 디플레이션 탈출 노력을 위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
 - ☞ 지역의 핵심기업 및 중소기업의 설비·인재 투자 촉진
 - ☞ 임금인상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세제상 조치 실시 등 세제조치 시행
 - ☞ 산학관(産學官) 연계 연구개발 등을 지원
 -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정비 중점화
 - (재정건전화) 재정건전화를 착실하게 진행
 - ☞ 일반세출과 사회보장관계비 인상에 대해 「경제·재정 재생계획」의 기준을 달성 : 2016~2018년도 3년간 각각 1.6조엔, 1.5조

엔 인상

- ☞ 아베내각 출범 이후 국채발행액을 6년 연속 감축 : 2017년도 34.4조엔 → 2018년도 33.7조엔
- ☞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 개선: 2017년도 -10.8조엔 → 2018년도 -10.4조엔
- (세입) 2018년도 예산안의 세입 규모는 전년 대비 0.3% 증가한 97조 7,128억엔이며, 조세 및 인지수입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59조 790억엔 규모
 - (조세 및 인지수입) 조세 및 인지수입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59조 790억엔으로 전망되며, GDP 대비 조세 및 인지수입의 비중은 10.5%로 전망
 - (기타수입) 기타수입은 전년 대비 8.0% 감소한 4조 9,416억엔으로 전망
 - (국채발행액) 국채발행액은 전년 대비 1.0% 감소한 33조 6,922억엔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국채의존도도 전년 대비 0.8%p 하락한 34.5%로 전망
- (세출) 2018년도 예산안의 세출 규모는 전년 대비 0.3% 증가한 97조 7,128억엔이며, 일반세출은 전년 대비 0.9% 증가한 58조 8,958억엔으로 편성
 - (국채비)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비용 감소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1.0% 감소한 23조 3,020억엔을 편성
 - (일반세출) 전년 대비 0.9% 증가한 58조 8,958

11) 출처: 재무성, 「平成30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17.12.22.

http://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ty2018/seituan30/01.pdf

12) 2015년 6월 각의결정. 2020년까지 기초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는 재정건전화 목표달성을 위해 2016년~2020년 기간 동안 「경제·재정 재생계획」을 통해 경제 및 재정의 일체적인 개혁을 실시. 「디플레이션 탈출·경제 재생」, 「세출개혁」, 「세입개혁」의 세 가지 주요 개혁을 일체적으로 추진하며, 계획의 초기 3년인 2016~2018년을 「집중개혁기간」으로 지정

억엔을 편성

- ☞ (사회보장관계비) 일반회계 세출 중 33.7%를 차지하는 사회보장관계비는 「경제·재정재생계획」의 사회보장관계비 인상 기준(2016~2018년도 3년간 1.5조엔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4,997억엔(1.5%) 증가한 32조 9,732억엔 규모
- ☞ (공공사업관계비) 일반회계 세출 중 6.1%를 차지하는 공공사업관계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5조 9,789억엔 규모

- ☞ (문교 및 과학진흥비) 일반회계 세출 중 5.5%를 차지하는 문교 및 과학진흥비는 전년 대비 0.1% 증가한 5조 3,646억엔으로 편성, 이 중 과학기술진흥비는 전년 대비 0.9% 증가한 1조 3,159억엔 규모
- ☞ (방위관계비) 일반회계 세출 중 5.3%를 차지하는 방위관계비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5조 1,911억엔 규모
- (지방교부세교부금) 전년 대비 0.3% 감소한 15조 5,150억엔을 편성

〈표 7〉 FY2018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단위: 억엔, %)

구분		FY2017 당초	FY2018 정부안	증감액	증감률
세입	1. 조세 및 인지수입	577,120	590,790	13,670	2.4
	2. 기타 수입	53,729	49,416	-4,313	-8.0
	3. 국채발행	343,698	336,922	-6,776	-2.0
	(1) 공채금(건설국채)	60,970	60,940	-30	0.0
	(2) 특례공채금(적자국채)	282,728	275,982	-6,746	-2.4
	합계	974,547	977,128	2,581	0.3
세출	1. 국채비 ²⁾	235,285	233,020	-2,265	-1.0
	2. 일반세출	739,262	744,108	4,846	0.7
	3. 지방교부세교부금 ³⁾ 등	583,591	588,958	5,367	0.9
	합계	324,735	329,732	4,997	1.5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 ⁴⁾		-108,413	-103,902	4,511	4.2
국채의존도 ⁵⁾		35.3%	34.5%	-	-
GDP 대비 국채비율 ⁶⁾		240.3%	240.0%	-	-

주: 1) 계수는 반올림하고 있기 때문에 끝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국채비는 국채의 상환 및 이자지불을 위한 경비로, 국채잔고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경비

3) 지방교부세교부금 등은 지방세수 증가 등을 반영

4) 일반회계기초재정수지=조세 및 인지수입+기타수입-기초재정수지대상경비

5) 국채의존도=국채발행액/총재정지출

6) GDP 대비 국채비율은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17년 10월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2018년도 예산(정부안)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음

출처: 재무성, 「平成30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17.12.22.

재무성, 「我が国の財政事情(平成30年度予算政府案)」, 2017.12.22.



〈표 8〉 FY2018 주요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내역

(단위: 억엔 %)

구분	FY2017	FY2018	증감액	증감률
	(A)	(B)	(B-A)	(%)
국채비	235,285	233,020	-2,265	-1.0
일반세출	583,591	588,958	5,367	0.9
사회보장관계비	324,735	329,732	4,997	1.5
문교 및 과학진흥비	53,567	53,646	79	0.1
(과학기술진흥비)	(13,045)	(13,159)	114	0.9
연금관계비	2,947	2,504	-443	-15.0
방위관계비	51,251	51,911	660	1.3
공공사업관계비	59,763	59,789	26	0.0
경제협력비	5,110	5,089	-21	-0.4
중소기업대책비	1,810	1,771	-39	-2.2
에너지대책비	9,635	9,186	-448	-4.7
식료안정공급관계비	10,174	9,924	-250	-2.5
기타 경비	61,098	61,904	806	1.3
예비비	3,500	3,500	-	-
지방교부세교부금	155,671	155,150	-521	-0.3
합계	974,547	977,128	2,581	0.3

주: 1. 계수는 반올림하고 있기 때문에 끝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일반세출은 일반회계세출총액에서 국채비와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한 것을 의미

출처: 재무성, 「平成30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17.12.22.

- (경제 및 재정전망) 2018년도 명목 및 실질GDP 성장률은 각각 2.5%와 1.8%를 나타낼 전망이며, 2018년도 기초재정수지는 -10.4조엔 규모일 전망
- (경제전망) 2018년도 명목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0.5%p 증가한 2.5%를 나타낼 전망이며, 실질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0.1%p 감소한 1.8%를 나타낼 전망
- (재정전망) 2018년도 기초재정 적자는 전년 대비 3.7% 감소한 10.4조엔을 나타낼 전망이며,

국채의존도는 전년 대비 0.8%p 하락한 34.5%로 전망

〈표 9〉 FY2018 주요 경제지표

(단위: 조엔, %)

구분	FY2012 (실적)	FY2013 (실적)	FY2014 (실적)	FY2015 (실적)	FY2016 (실적)	FY2017 (실적전망)	FY2018 (전망)
명목GDP 성장률	0.1	2.6	2.2 (0.8)	3.0	1.0	2.0	2.5
명목GDP	494.5	507.2	518.5	533.9	539.3	550.3	564.3
실질GDP 성장률	0.8	2.6	-0.3	1.4	1.2	1.9	1.8
소비자물가지수(변화율)	-0.3	0.9	2.9 (0.9)	0.2	-0.1	0.7	1.1
실업률	4.3	3.9	3.5	3.3	3.0	2.8	2.7

주: 1. 2017년도 및 2018년도는 「2018년도 경제 전망과 경제재정운영의 기본자세」(2017년 12월 19일 각료회의 승인)에 따름
 2. 2014년도 명목GDP 성장률과 소비자물가지수의 괄호 안의 계수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영향을 제외한 수치
 출처: 재무성, 「平成30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17.12.22.

〈표 10〉 FY2018 주요 재정지표(일반회계)

(단위: 조엔, %)

구분	FY2012	FY2013	FY2014	FY2015	FY2016	FY2017	FY2018 (정부안)
일반세출	54.4	54.0	56.5	57.4	57.8	58.4	58.9
세수 ¹⁾	42.3	43.1	50.0 (4.5)	54.5 (6.2)	57.6 (6.3)	57.7 (6.3)	59.1 (6.4)
국채발행 수입	44.2	42.9	41.3	36.9	34.4	34.4	33.7
기초재정수지	-24.9	-23.2	-18.0	-13.4	-10.8	-10.8	-10.4
국채의존도	47.6	46.3	43.0	38.3	35.6	35.3	34.5

주: 1. 당초예산기준, 국채의존도는 일반회계세출총액 대비 국채발행액을 의미
 2. 일반세출은 일반회계세출총액에서 국채비와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한 것을 의미
 1) 괄호안의 수치는 소비세 인상(5% → 8%)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의미(국세부분)
 출처: 재무성, 「平成30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17.12.22.

■ FY2017 제 1차 추가경정예산 발표(2017.12.22.)¹³⁾

- 일본정부는 건설공채 추가발행 등을 재원으로, 2.7조엔 규모의 추가세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 (생산성 혁명 · 인재육성 혁명) 생산성 혁명 관련 정책을 위해 3,931억엔, 인재육성 혁명 관련 정책을 위해 891억엔 등 총 4,822억엔 편성
 ⇨ (생산성 혁명) 제조장인 · 상업 · 서비스 경

13) 출처: 재무성, 「平成29年度一般会計補正予算(第1号)」, 2017.12.22.
http://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ty2017/hosei222.htm



- 영 향상지원 1,000억엔, 생산성혁명에 이바지하는 지방창출거점정비교부금 600억엔, IT 도입 지원 및 AI 시스템 공동개발 지원을 통한 기업 생산성 향상 524억엔 등
- ☞ (인재육성 혁명) ‘육아안심플랜’ 조기 시행을 위한 보육시설 정비 808억엔, 지방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대책 등 관련 지원 28억엔 등
 - (재해복구 등·방재·감재 사업) 재해복구 등 정책에 3,436억엔, 방재·감재 사업 관련 정책에 9,131억엔 등 총 1조 2,567억엔 편성
 - ☞ (재해복구 등) 공공토지시설 등 재해복구 2,907억엔, 재해구조비 등 부담금 168억엔, 이재민 생활재건 지원금 지급 143억엔 등
 - ☞ (방재·감재 사업) 자연재해 리스크 회피 등

- 을 위한 방재·감재 대책 4,822억엔, 학교 시설 등 방재·감재 대책 862억엔 등
- (종합적인 TPP¹⁴) 등 관련 정책 실현) 농업농촌 정비사업 984억엔, 농산물 산지 지원 사업 447억엔, 축산 클러스터 사업 575억엔 등 총 3,465억엔 편성
 - (기타 긴급한 과제 등에 대응) 국민생활 안전·안심 확보 관련 정책에 3,064억엔, 국제기구출연금 등 기타 정책에 3,154억엔 등 총 6,219억엔 편성
 - ☞ (국민생활 안전·안심 확보) 더욱 심각해진 나라 주변의 안전보장환경 등 대응을 위한 자위대 운용 태세 확보 1,366억엔, 탄도미사일 공격 대응 622억엔, 전략적 해상보안 체제 구축 287억엔 등

〈표 11〉 FY2017 일반회계 추경예산 프레임

(단위: 억엔)

세 출		세 입	
1. 추가 세출	27,073	1. 공채금(건설국채)	11,848
(1) 생산성 혁명·인재육성 혁명	4,822	2. 세외수입	956
(2) 재해복구 등·방재·감재 사업	12,567	3. 전년도 잉여금 수입	3,743
(3) 종합적인 TPP 등 관련 정책 실현	3,465		
(4) 기타 긴급한 과제 등에 대응	6,219		
2. 국채정리기금 특별회계로 편입(전년도 잉여금의 1/2) ¹⁾	1,891		
3. 기존경비 감액	-12,416		
(1) 국채비	-10,098		
(2) 기타	-2,318		
합 계	16,548	합 계	16,548

주: 계수는 반올림하고 있기 때문에 끝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재정법 제 6조 1항에 따라 잉여금의 1/2 이상의 금액을 발생한 연도의 내후년도까지 국채정리기금에 편입
출처: 재무성, 「平成29年度一般会計補正予算(第1号)フレーム」, 2017.12.22.

14)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rans Pacific Partnership)

- ☞ (기타) 국제정세 변화에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한 국제기구 출연금 등 1,470억엔, 주거 지원금¹⁵⁾ 497억엔, 도쿄패럴림픽경기대회 개최준비 300억엔 등
- 내각부, 「중장기 경제 · 재정전망」 발표(2018.1.23.)¹⁶⁾
 - (목적) 본 전망은 경제재생 및 재정건전화의 지금까지 진행상황 평가와 향후 대책에 대한 검토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
 - (시나리오별 가정) 본 전망에서는 과거 실적 및 현재 경제동향을 바탕으로 향후 예상되는 GDP 및 물가 동향 등의 중장기적 거시경제 상황을 두 가지 시나리오로 비교
 - (성장실현 시나리오) 아베노믹스에서의 디플레이션 탈출 · 경제재생이라는 목표를 위한 정책 효과가 과거 실적을 고려한 현실적인 속도로 실현된 것을 가정
 - ☞ 총요소생산성(TFP) 상승률이 일본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황이 되기 이전 실제 경험한 상승폭과 속도로 현재 수준(약 0.7%)에서 약 1.5%까지 상승
 - ☞ 노동참가율은 여성, 고령자에 대해서는 현재 노동참가율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형태로 상승하고, 그 외에 대해서는 『2015년도 고용정책연구회 보고서』의 노동력 수급추계를 바탕으로 상승
 - (기준선 시나리오) 경제가 현재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장기간 유지되는 것을 가정
 - ☞ 총요소생산성(TFP) 상승률을 향후 약 1.0%로 가정
 - ☞ 노동참가율은 『2015년도 고용정책연구회 보고서』의 노동력 수급추계를 바탕으로 2027년까지 완만하게 상승
 - (경제전망) 성장실현 시나리오에서는 2020년 상반기에는 실질성장률 2.0%, 명목성장률 3.0% 이상의 완만한 성장이 전망되어 2020년도에 명목 GDP 600조엔 달성¹⁷⁾이 가능할 전망이며, 소비자물가상승률(소비세율 인상 영향 제외)은 2%대의 안정적 추이를 나타낼 전망
 - 기준선 시나리오에서는 경제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실질 1%대, 명목 1% 후반을 나타낼 전망이며, 소비자물가상승률(소비세율 인상 영향 제외)은 1%대를 나타낼 전망

15)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주택 보유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창설한 제도로 소비세율 8%일 경우 수입액 기준 510만엔 이하를 대상으로 최대 30만엔, 10%일 경우 수입액 기준 775만엔 이하를 대상으로 최대 50만엔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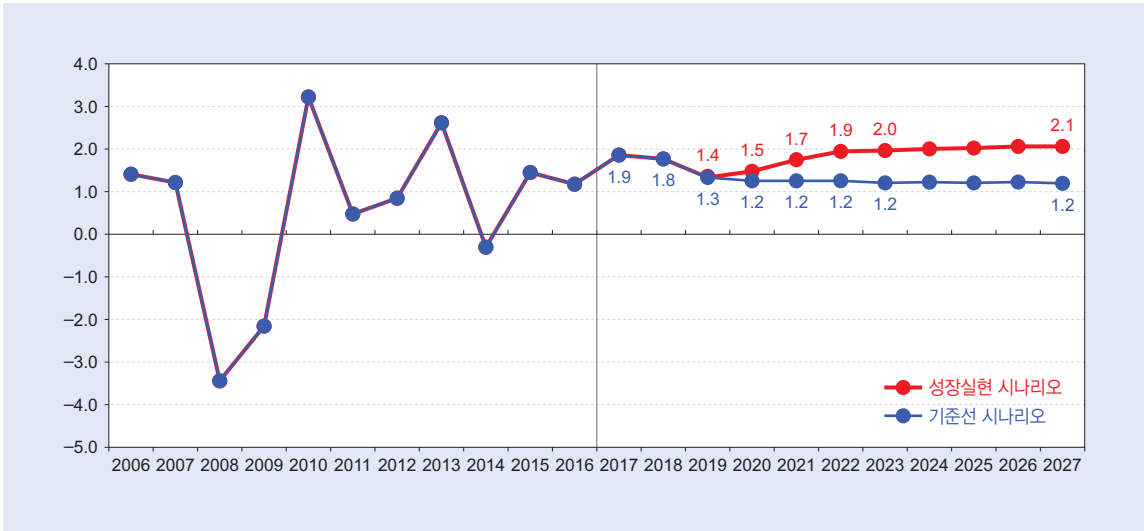
16)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 2018.1.23.
<http://www5.cao.go.jp/keizai3/econome/h30chuuchouki1.pdf>

17) 아베내각의 경제재정정책인 '새로운 세 개의 화살(2015년 9월 발표)'에서는 희망을 이루는 강한 경제(명목GDP 600조엔 달성), 꿈을 이루는 육아지원(희망출생률 1.8% 실현),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개호(간병)인력 이직 제로 실현)을 일체적으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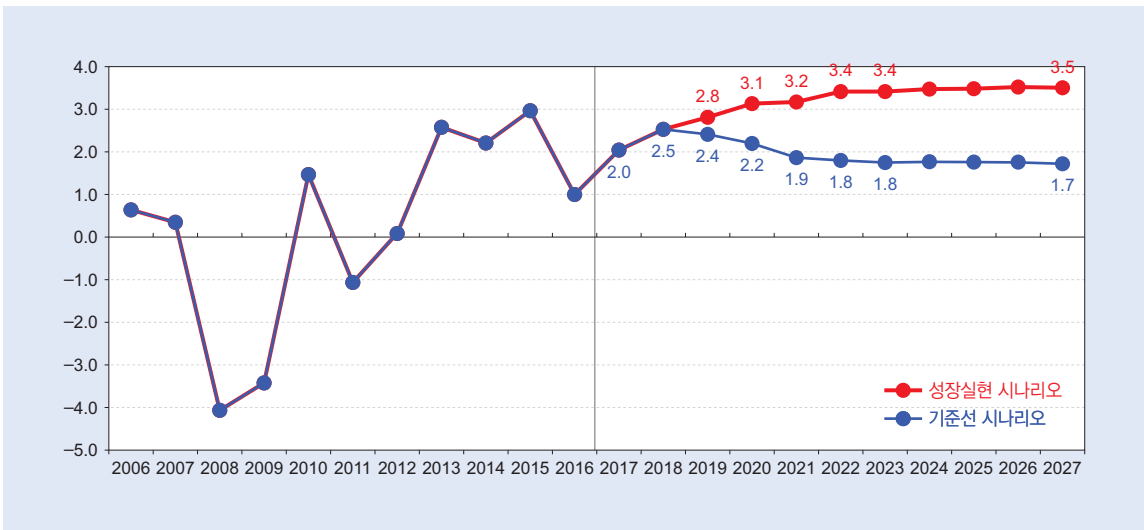
[그림 1] 실질GDP 성장률 전망

(단위: %)



[그림 2] 명목GDP 성장률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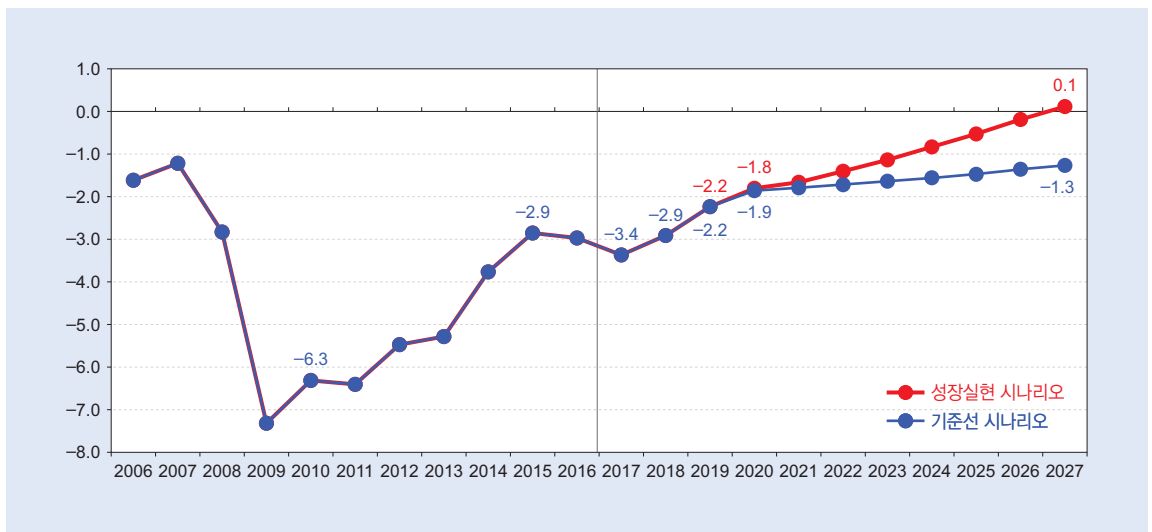


출처: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 2018.1.23.

- (재정전망) 성장실현 시나리오에서는 소비세율 인상분에 대한 사용 재검토 영향 등에 의해 2020년도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적자가 1.8%로 전망되며, 기초재정수지의 흑자전환 시기는 2027년으로 전망
 - 기준선 시나리오에서의 2020년도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1.9%로 전망되며, 전망 기간(2018~2027)내에 흑자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GDP 대비 채무잔고는 성장실현 시나리오에서는 중기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준선 시나리오에서는 2020년 상반기까지 인하속도가 완만하게 진행된 후 2027년도 이후 상승할 전망
- 정부는 기초재정수지 흑자전환 목표와 GDP 대비 채무잔고의 안정적인 인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경제 · 재정 일체개혁에 대해 검토 후 올해 여름 발표하는「경제재정운영 및 개혁의 기본방침」에서 기초재정수지 흑자전환 달성시기 및 구체적인 계획을 명시하기로 함

[그림 3] 국가 및 지방의 기초재정수지 전망(GDP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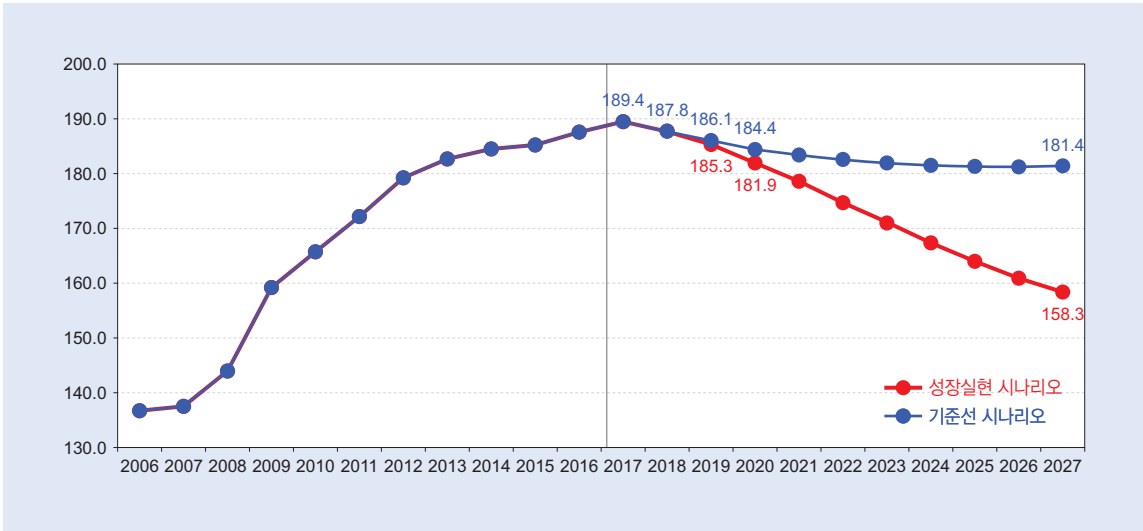
(단위: %)





[그림 4] 국가 및 지방의 채무잔고 전망¹⁾(GDP 대비)

(단위: %)



주: 1) 복구·부흥 대책의 경비 및 재원 금액을 제외
출처: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 2018.1.23.

- 재무성, 「2018년도 예산이 향후 세입·세출에 미치는 영향」 발표(2018.1.26.)¹⁸⁾
 - 일정한 경제 가정에서 2018년도 예산에서의 제도·정책을 전제로 「사회보장 및 세제 일체개혁」, 「새로운 경제정책 패키지(2017년 12월 각의결정)」 시행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여 2021년도까지 세입·세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계
 - (명목경제성장률 3.0% 가정) 명목 경제성장률을 3.0%, 소비자물가상승률을 2.0%로 가정할 때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2019년도 8.9조원에서 2021년도에는 7.1조원으로 개선될 전망

- 2019년도의 세출은 100.4조엔, 세수 및 기타수입은 67.2조엔으로 전망되며, 2021년도의 세출은 107.4조엔, 세수 및 기타수입은 73.8조엔으로 전망
- (명목경제성장률 1.5% 가정) 명목 경제성장률을 1.5%, 소비자물가상승률을 1.0%로 가정할 때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2019년도 9.6조원에서 2021년도에는 9.1조원으로 개선될 전망
- 2019년도의 세출은 100.1조엔, 세수 및 기타수입은 66.2조엔으로 전망되며, 2021년도의 세출은 105.9조엔, 세수 및 기타수입은 70.5조엔으로 전망

18) 일본 재무성, 「平成30年度予算の後年度歳出・歳入への影響試算」, 2018.1.26.
<http://www.mof.go.jp/budget/topics/outlook/sy3001a.htm>
본 내용은 향후 예산편성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며, 계수는 전망의 전제 등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

〈표 12〉 2018년도 예산이 향후 세입 · 세출에 미치는 영향(명목경제성장률 3.0% 가정)

(단위: 조엔)

구분		FY2017	FY2018	FY2019	FY2020	FY2021
세출	국채비	23.5	23.3	24.3	25.4	26.5
	이자비용	9.1	9.0	9.5	10.3	11.1
	기초재정수지대상경비	73.9	74.4	76.1	79.3	80.8
	사회보장관계비	32.5	33.0	34.2	36.7	37.7
	지방교부세 등	15.6	15.5	15.8	16.6	17.1
	기타	25.9	25.9	26.0	26.1	26.1
합계		97.5	97.7	100.4	104.7	107.4
세수 등	세수	57.7	59.1	62.3	66.7	69.0
	기타 수입	5.4	4.9	4.9	4.9	4.8
	합계	63.1	64.0	67.2	71.6	73.8
차액(세출-세수 등)		34.4	33.7	33.2	33.2	33.6
기초재정수지		-10.8	-10.4	-8.9	-7.8	-7.1
재정수지		-20.0	-19.4	-18.4	-18.1	-18.2

주: 1. 2017년도는 당초예산금액, 2018년도는 정부예산안, 2019~2021년도는 2018년도 제도 · 정책을 전제로 추정
 2. 「새로운 경제정책 패키지」에 대해서는 현재 각 정책의 상세한 제도 설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7조엔 규모의 세출을 2019년 10월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활용하여 지출하고, 사회보장관계비의 일부로 소비세율 인상분의 국가 · 지방 배분은 국가 · 지방의 부담비율을 대략 7:3으로 가정하여 추정. 이는 세수의 배분비율 및 부담비율과 무관하며 향후 부담비율 논의에 대한 예측이 아님
 3. 기초재정수지대상경비는 2019년도 이후는 2018년도 제도 · 정책을 전제로 추정된 세출액에 「사회보장 및 세제 일체개혁」 시행에 따른 사회보장 총실 등과 「새로운 경제정책 패키지」를 사회보장관계비에 포함하여 기계적으로 가산. 또한 경감세율제도 도입에 따라 소비세율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대책으로 종합합산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함
 4. 세수는 2019년 10월 1일 소비세율을 7.8%(국가 · 지방 합계 10%)로 인상하는 것과 경감세율제도 도입에 따른 세수 총액의 변화 등을 포함. 소비세의 경감세율제도 도입 시행에 따른 수입 감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등 일부 개정 법률(2016년 3월 31일 공포)」에서 2018년도 말까지 세입 및 세출의 법제상 조치 등을 논의하여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재원을 확보하기로 함
 출처: 재무성, 「平成30年度予算の後年度歳出 · 歳入への影響試算」, 2018.1.26.



■ 내각부, 「일본경제 2017-2018-성장력강화를 위한 과제 및 전망」¹⁹⁾ 발표(2018.1.18.)²⁰⁾

- 이번 보고서에서는 완만한 경기회복이 지속되고 있는 일본경제의 현황을 분석하고, 평균수명 연장 및 기술혁신을 반영하여 다양화가 전망되는 직업 현황과 기업부문 성장을 위한 대책 및 선순환 확립을 위한 과제에 대해 분석
- 일본경제 현황과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과제
 - 해외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정보관련 제품(반도체, 반도체 제조장치, 컴퓨터 류 등) 수요 상승 등을 배경으로 수출 및 생산이 회복되고 있으며, 고용·소득환경 개선 및 주가에 의한 생산 효과, 마인드 개선 등에 의해 소비도 완만히 회복
 - ☞ 이번 경기회복 장기화의 배경에는 기업수익 및 고용 개선 기초와 건설투자의 중장기적인 회복, 중소기업까지 회복의 움직임 확대 등이 있음
 - 향후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생산성을 높이면서 임금을 대폭 상승하는 것이 과제
 - ☞ 물가 동향은 현재 제자리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인력부족과 경제 전체의 수급을 나타내는 GDP 갭의 플러스 전환 등 국면 변화가 예상
 - ☞ 인력부족은 25년 만에 고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기업은 외부인력 확보, 노동조건 개선, 노동절약적 투자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음

- ☞ 시간제 근로자는 임금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이 완만한 것이 인력부족의 배경
- 직업의 다양화 현황 및 과제
 - 평균수명 연장과 기술혁신 등을 바탕으로 향후 직장생활의 장기화 및 다양화가 전망
 - 취업구조 변화에 따라 직업 훈련 및 평생학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교육에 대한 편익이 비용과 상응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직장생활 설계가 가능한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과제
 - ☞ 향후 인공지능 발전과 같은 기술혁신에 따른 취업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IT관련 전문 지식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기계가 대체하기 어려운 능력의 취득 및 활용이 중요
- 기업부문 성장을 위한 대책 및 선순환의 확립
 - 교역조건 개선과 설비투자 및 인건비 등 고정비 역제가 기업수익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금운용은 설비투자에서 M&A로, 자금조달은 차입에서 자기자본으로 이동하는 추세
 - ☞ 최근 기업행동을 살펴보면 내부자금은 설비투자뿐만이 아닌 M&A를 포함한 광의의 투자에 사용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수익개선 및 인력 부족과 임금상승의 관계는 낮음
 - 기업이 수업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중장기적 성장으로 연결시켜나가기 위해서 인재활용 및 설비 투자 등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중요
 - ☞ 기업은 정보화 및 환경대응 등에 따른 새로

19) 내각부에서는 매년 「일본경제」시리즈를 발표하여 여름에 발표하는 「연차경제재정보고」이후 일본경제 현황에 관한 분석을 제공

20) 일본 내각부, 「日本經濟2017-2018-成長力強化に向けた課題と展望-」, 2018.1.18.

<http://www5.cao.go.jp/keizai3/2017/0118nk/keizai2017-2018pdf.html>

운 성장분야에 대한 대책,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대한 대응, 방일외 국인 증가에 대한 대응, 해외수익 창출능력 강화 등에 의해 수입기반을 확대하고 있음

2. 기타

- 내각부, 「2018년도 경제전망 및 경제재정운용의 기본적 태도」 발표(2017.12.19.)²¹⁾
 - (경제전망) 2018년 실질 및 명목GDP 성장률은 각각 1.8%, 2.5%로 전망되며, ‘새로운 경제정책 패키지’²²⁾ 등 정책효과와 함께 고용·소득환경 개선이 계속되어 소비 및 설비투자 등 민간수요를 중심으로 경기 회복이 전망
 - 소비자물가지수는 경기회복에 의해 수급이 상

승세를 나타내어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진전이 전망됨에 따라 전년 대비 1.1% 상승할 것으로 전망

- (경제재정운영의 기본적 태도) ‘경제재생 없이는 재정건전화도 없다’를 계속해서 기본으로 하여, 600조엔 경제 실현을 목표로 함
 -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여 ‘생산성 혁명’과 ‘인재육성 혁명’의 두 가지 과제를 위해 2020년까지 노력
 - ‘전세대행’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육아 및 개호(간병)에 대한 불안 없이 노인도 청년도 안심하여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함
 - 재정건전화에 대해서는 기초재정수지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동시에 GDP 대비 채무 잔고의 안정적인 하락을 목표로 함

〈표 13〉 FY2018 정부 경제전망

(단위: 전년 대비 %)

구분	FY2016(실적)	FY2017(실적전망)	FY2018(전망)
실질GDP	1.2	1.9	1.8
민간소비	0.3	1.2	1.4
민간설비	1.2	3.4	3.9
내수기여도	0.4	1.6	1.6
민간수요기여도	0.3	1.3	1.5
공적수요기여도	0.1	0.3	0.1
외수기여도	0.8	0.3	0.1
명목GDP	1.0	2.0	2.5
소비자물가지수(종합)	-0.1	0.7	1.1
실업률	3.0	2.8	2.7

출처: 재무성, 「平成30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17.12.22.

21) 출처: 내각부, 「平成30年度の経済見通しと経済財政運営の基本的態度」, 2017.12.19.
<http://www5.cao.go.jp/keizai/mitoshi/2017/h291219mitoshi.pdf>

22) 2017년 12월 8일 각의결정. 자세한 내용은 2017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일본편 참고



☞ 지금까지 경제·재정 일체 개혁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의 기본방침'에서 기초재정수지 흑자 전환 달성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 2018년 예산에서 「경제·재정재생계획」에 게재된 세출 개혁 등을 착실히 시행

- 내각부, 「2016년도 국민경제계산」 발표(2017.12.22.)²³⁾
 - 2016년도 명목GDP는 전년 대비 1.0% 증가하여 5년 연속 성장세를 나타냈으며, 실질GDP는 전년 대비 1.2% 증가하여 2년 연속 성장세를 나타냄
 - 국내수요는 전년 대비 0.4% 증가하였으며, 재화·서비스 순수출은 전년 대비 0.8% 증가

〈표 14〉 2016년도 국민경제계산

(단위: 전년 대비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명목GDP	0.6	0.4	-4.1	-3.4	1.5	-1.1	0.1	2.6	2.2	3.0	1.0
GDP 디플레이터	-0.7	-0.8	-0.6	-1.3	-1.7	-1.5	-0.7	-0.0	2.5	1.5	-0.2
실질GDP	1.4	1.2	-3.4	-2.2	3.2	0.5	0.8	2.6	-0.3	1.4	1.2
국내수요	0.6	0.0	-2.4	-2.4	2.4	1.5	1.7	3.1	-0.9	1.3	0.4
민간수요	1.2	-0.0	-2.7	-4.5	3.2	1.6	1.8	3.1	-1.2	1.4	0.4
민간최종소비지출	0.7	0.8	-2.1	0.9	1.4	0.8	1.6	2.7	-2.5	0.8	0.3
민간주택	0.3	-14.1	-1.5	-20.3	2.5	2.9	5.1	8.3	-9.9	3.7	6.2
민간설비	2.5	-0.6	-6.0	-11.8	2.0	4.3	2.4	7.0	3.3	2.3	1.2
민간재고변동	0.1	0.2	0.1	-1.4	1.2	0.0	-0.1	-0.5	0.4	0.2	-0.3
공적수요	-1.2	0.2	-1.4	4.1	0.1	1.1	1.3	3.1	-0.1	1.1	0.5
정부최종소비지출	0.4	1.3	-0.6	2.8	2.1	1.7	1.3	1.7	0.4	1.9	0.5
공적고정자본형성	-6.4	-4.2	-4.1	9.4	-7.1	-1.9	1.3	8.6	-2.0	-1.6	0.9
공적재고변동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재화·서비스 순수출	0.8	1.2	-1.1	0.3	0.9	-1.0	-0.8	-0.5	0.6	0.1	0.8
재화·서비스 수출	8.7	9.5	-10.2	-9.0	17.9	-1.6	-1.6	4.4	8.7	0.7	3.4
재화·서비스 수입	3.6	2.4	-4.4	-10.7	12.1	5.2	3.8	7.1	4.3	0.3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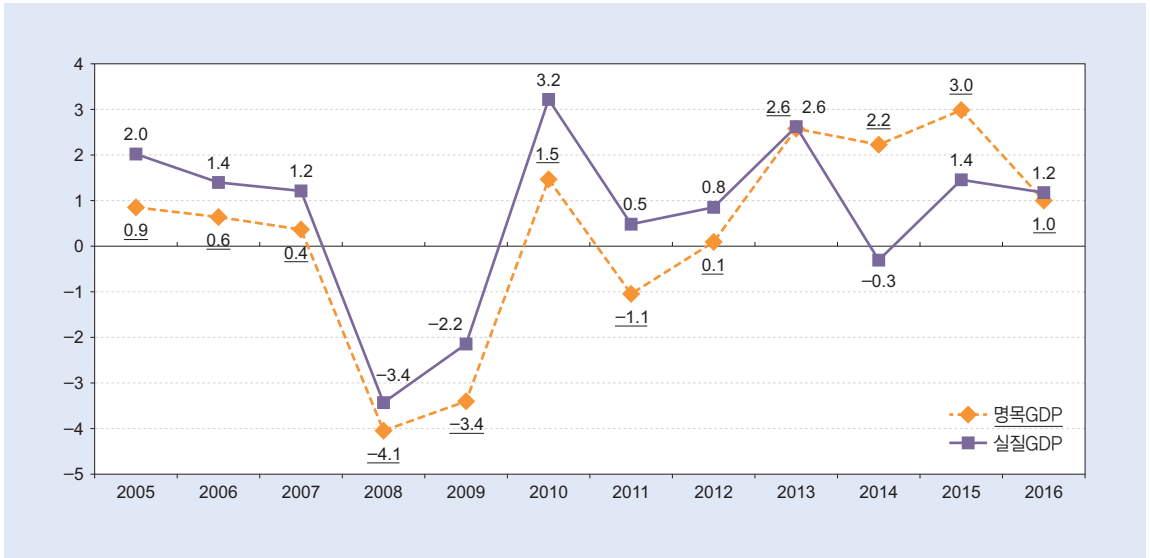
자료: 내각부, 「平成28年度国民経済計算年次推計(フロー編)ポイント」, 2017.12.22.

23) 출처: 내각부, 「平成28年度国民経済計算年次推計(フロー編)ポイント」, 2017.12.22.

http://www.esri.cao.go.jp/sna/data/data_list/kakuhou/files/h28/sankou/pdf/point_flow_20171222.pdf

[그림 5] 명목 및 실질GDP 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 대비 %)



출처: 내각부, 「平成28年度国民経済計算年次推計(フロー編)ポイント」, 2017.12.22.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은 전문연구원)

 독일

1. 예산 · 결산 등

- 재무부, FY2017 잠정결산 발표(2018.1.12.)²⁴⁾
 - (재정지출) 2017년 재정지출은 3,310억유로로 기존 지출목표 대비 19억유로 높게 집계
 - (재정수입) 조세수입이 목표치를 상회하면서 3,310억유로 기록, 이는 EU자체수입이전, 소득세, 법인세 등의 증가로 목표치 대비 83억유로 상회

<표 15> FY2017 결산(잠정)

(단위: 억유로)

	2017 (목표)	2017 (잠정)	목표치 대비 차이
재정지출	3,291	3,310	+19
재정수입	3,297	3,310	+19
조세수입	3,010	3,094	+83
세외수입	280	217	-64
신규차입	-	-	-

출처: 연방재무부, Presse, Pressemitteilungen, 2018.0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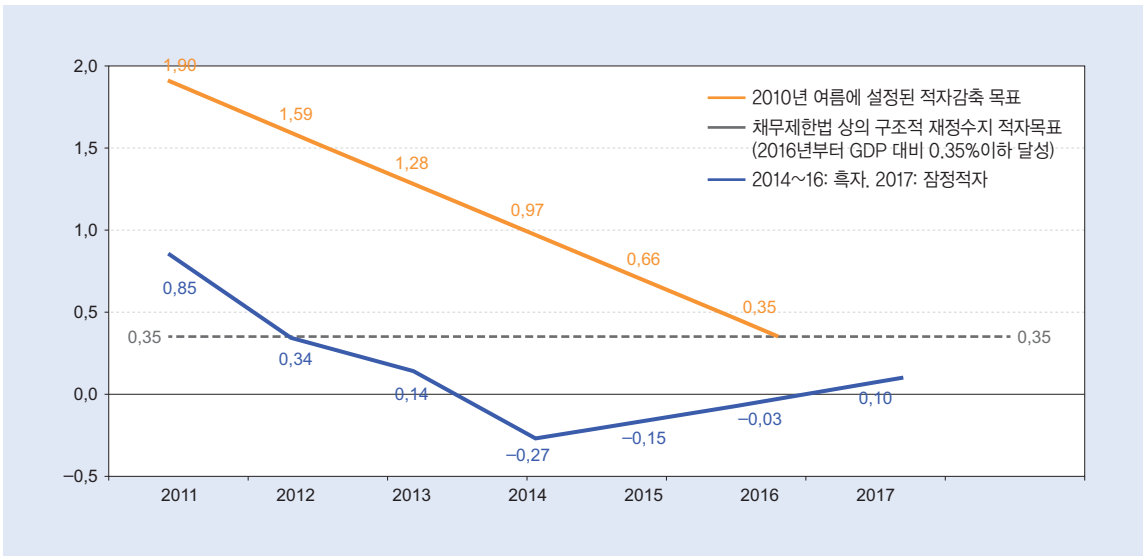
24) 출처: 재무부,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18/01/2018-01-12-PM01.html;jsessionid=2C325D38A77B07F959F2769B5683463A>



- (재정수지) 구조적 재정수지는 GDP 대비 0.1% 적자를 기록, 이는 채무제한법²⁵⁾ 기준 대비 0.25%p 높은 수치
- 최종 결산보고서는 6월 발표 예정

[그림 6]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 추이

(단위: GDP 대비 %)



출처: 연방재무부, Presse, Pressemitteilungen, 2018.01.18.

〈자료 수집 및 정리: 엄동욱 연구원〉

25) Schuldenbremse(Debt Brake): 2016년부터 연방정부의 구조적 재정 적자는 GDP의 0.35%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주정부에 대해서는 2020년에 구조적 균형예산을 이루어야 함(참고: 『정책분석 14-03 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 사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p. 161.)

 영국

1. 예산 · 결산 등

- 영국 통계청, 2017년 공공부문 재정 현황 발표 (2018.1.23.)²⁶⁾
 - 2017년 4월~12월 공공부문²⁷⁾ 순차입은²⁸⁾ 전년 동기 대비 11.7%(66억파운드) 감소한 500억파운드로 집계되어 200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고, 회계연도 기준(2017년 4월~2018년 3월) 순차입(OBR 전망치)은 499억파운드로 전망됨
 - 2017년 4월~12월 경상예산수지 적자(Current Budget Deficit)는 전년 동기 대비 27.0% 감소한 240억파운드로 집계됨

- 2017년 4월~12월 순투자(Net Investment)는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한 260억파운드로 집계됨

- 2017년 12월 기준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0.7%p 증가한 85.4%로 집계되었으며, 회계연도 말(OBR 전망치)에는 86.5%로 증가할 전망

2. 기타

- 통계청, 2017년 3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 발표 (2017.12.22.)²⁹⁾
 - 2017년 3분기 직전 분기 대비 실질GDP 성장률 확정치는 잠정치와 동일한 0.4%로 나타남

〈표 16〉 공공부문 재정

(단위: 십억파운드)

	4월~12월			4월~3월(회계연도 기준) 전망치(OBR)		
	2016/17	2017/18	변화율(%)	2016/17	2017/18	변화율(%)
순차입	56.7	50.0	-11.7%	46.0	49.9	8.4%
경상예산수지 적자	32.9	24.0	-27.0%	7.3	8.1	11.2%
순투자	23.7	26.0	9.5%	38.8	41.8	7.6%
순채무	1,697.2	1,759.5	3.7%	1,726.8	1,791.2	3.7%
(GDP 대비 %)	(84.7)	(85.4)	-	(85.6)	(86.5)	-

주: 실적치와 OBR 전망치 간 추계 방법론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출처: 영국 통계청, Public Sector Finances December 2017

26) 출처: 영국 통계청

<https://www.ons.gov.uk/economy/governmentpublicsectorandtaxes/publicsectorfinance/bulletins/publicsectorfinances/december2017>

27) 영국의 공공부문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비금융공공기관, 영란은행, 금융공공기관(또는 공공부문 은행)으로 구성됨. 다만 공공부문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포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통계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이하 설명의 공공부문 재정통계는 이 중 공공부문 은행을 제외한 공공부문을 의미함

28) 순차입은 경상예산수지 적자와 순투자자의 합으로 구성

29) 출처: 영국 통계청

<https://www.ons.gov.uk/economy/grossdomesticproductgdp/bulletins/quarterlynationalaccounts/julytoseptember2017>



- 3분기 GDP 성장률에 대한 경제활동별 기여도는 서비스 부문, 제조 부문 순서로 나타났고 지출항목별 기여도는 가계소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2013년 1분기 이후 19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년 동기 대비 GDP 성장률은 1.7%로 나타남

〈표 17〉 분기별 실질GDP 성장률

(단위: 전분기 대비 %)

	2015		2016				2017		
	Q3	Q4	Q1	Q2	Q3	Q4	Q1	Q2	Q3
실질GDP 성장률	0.4	0.7	0.2	0.5	0.5	0.7	0.3	0.3	0.4

출처: 영국 통계청 보도자료

〈표 18〉 2017년 3분기 GDP 성장률 기여도

(단위: %p)

	농업	제조업	서비스	건설
경제활동별 기여도	-	0.2	0.3	-

	가계소비	비영리기관 소비	정부소비	총자본형성	순수출
지출항목별 기여도	0.3	-	-	0.1	-

출처: 영국 통계청 보도자료

〈자료 수집 및 정리: 한혜란 전문연구원〉

 캐나다

1. 기타

- 통계청, 2017년 3분기 재정통계(GFS: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발표(2018.1.11.)³⁰⁾
 - 캐나다 통계청은 캐나다 정부 모든 부문³¹⁾의 IMF 기준 재정통계(GFS)를 발표

- FY2017 3분기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88억 캐나다달러 증가한 약 2,062억캐나다달러
- FY2017 3분기 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약 75억 캐나다달러 증가한 약 2,085억캐나다달러

〈표 19〉 캐나다 2017년 3분기 재정통계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2016			2017		
	Q2	Q3	Q4	Q1	Q2	Q3
수익(Revenue) ¹⁾	200,495	197,346	200,045	213,529	214,111	206,168
비용(Expense) ²⁾	198,403	201,036	206,323	216,590	207,392	208,515
총운영수지(Gross operating balance)	18,843	13,209	10,768	14,209	24,022	14,935
순운영수지(Net operating balance)	2,092	-3,690	-6,278	-3,061	6,719	-2,347
비금융자산 순취득(Net acquisition of nonfinancial assets)	2,094	5,353	4,702	953	2,388	5,898
순융자/순차입(Net lending or borrowing)	-2	-9,043	-10,980	-4,014	4,331	-8,245
금융자산 순취득(Net acquisition of financial assets)	11,624	22,902	-1,463	9,198	19,105	17,789
부채의 순부담(Net incurrence of liabilities)	12,173	32,302	10,205	13,710	15,126	26,233
통계적 불일치(Statistical discrepancy)	547	357	688	498	352	199
지출(Total expenditure)	200,497	206,389	211,025	217,543	209,780	214,413
순자산(Net worth)	-93,804	-53,312	-4,399	9,789	4,569	12,263
비금융자산(Non-financial Assets)	861,072	900,569	922,142	928,871	915,765	921,554
금융자산(Financial assets)	1,381,696	1,419,565	1,396,521	1,428,707	1,458,830	1,438,750
부채(Liabilities)	2,336,572	2,373,646	2,323,062	2,347,789	2,370,026	2,348,041
순금융가치(Net financial worth)	-954,876	-954,081	-926,541	-919,082	-911,196	-909,291

주: 1) revenue: an increase in net worth resulting from a transaction(GFSM 2014, IMF)

2) expense: a decrease in net worth resulting from a transaction(GFSM 2014, IMF)

출처: 캐나다 통계청,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Table 385-0032

30) 출처: 캐나다 통계청, <http://www.statcan.gc.ca/daily-quotidien/180111/dq180111d-eng.htm>

31) 정부 부문에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캐나다 및 퀘벡 연금 제도를 포함



- 의회예산처(PBO), Economic and Fiscal Monitor
 - January 2018 발표(2018.1.23.)³²⁾
 - 캐나다 의회예산처는 2018.1.12.까지 데이터를 포함한 2017년 GDP와 2017-18 재정수지 추정치를 발표
 - (경제) 캐나다의 2017년 실질GDP는 2.9% 성장하여 2017.10월 의회예산처 및 재무부 전망 대비 0.1%p 하락할 것으로 수정 전망
 - ☞ 2017년 하반기 실질GDP 성장률은 평균 1.8%로 상반기 4.0%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이는 수출 감소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재정) 2018.1월 기준 FY2017-18 재정 적자는 185억캐나다달러(GDP 의 0.9%)로 2017.10월 의회예산처 전망치보다 18억캐나다달러, 2017.10월 재무부의 가을경제보고서(Fall Economic Statement) 보다 14억캐나다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
 - ☞ 2017.10월(의회예산처) 대비 총지출 22억캐나다달러 감소 및 총수입 5억캐나다달러 증가로 재정 적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 프로그램지출 감소는 실업급여 감소 및 직접프로그램 지출의 증가세 둔화에 기인

〈표 20〉 2017년 분기별 실질성장률

(단위: %, 전분기 대비 증가율)

	2016Q4	2017Q1	2017Q2	2017Q3	2017Q4
의회예산처(2017.10)	2.7	3.7	4.5	2.1	1.8
의회예산처(2018.1)	2.2	3.7	4.3	1.7	1.8

출처: 캐나다 의회예산처, Economic and Fiscal Monitor January 2018, Table1-1

〈표 21〉 FY2017-18 재정 모니터링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의회예산처(A) (2018.1)	의회예산처(B) (2017.10)	증감 (A-B)	캐나다 재무부 (2017.10)
총수입	307.8	308.2	-0.5	310.7
총지출	326.3	328.4	-2.2	329.1
프로그램 지출	302.6	304.4	-1.8	304.9
공공채무 비용	23.7	24.0	-0.3	24.2
재정수지	-18.5	-20.2	1.8	-19.9

출처: 캐나다 의회예산처, Economic and Fiscal Monitor January 2018, Table 2-1.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진아 전문연구원〉

32) 캐나다 의회예산처, http://www.pbo-dpb.gc.ca/en/blog/news/EFM_January2018

프랑스

1. 예산 · 결산 등

- 2018년 예산법(LF: Loi de Finances) 및 사회보장 부문 예산법(LFSS: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2017년 2차 추경예산안(PLFR2: le second projet de loi de finances rectificative) 최종 승인 및 공표(2017.12.31.)³³⁾
 - 의회는 12월 21일, 헌법재판소는 12월 28일 2018년 정부 제출 예산안³⁴⁾ 및 2017년 2차 추경예산안³⁵⁾을 승인하여 12월 29일 관보(Journal officiel)에 공표
 - 의회는 12월 4일, 헌법재판소는 12월 22일 사회보장부문 예산안³⁶⁾을 승인하여 12월 29일 관보에 공표

2. 기타

- 통계청(INSEE), 2017년 3분기 일반정부 채무 발표(2017.12.22.)³⁷⁾
 -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2017년 3분기 일반정부 채무는 2조 2,261억유로로 2분기 대비 55억유로 감소하고,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는 98.1%로 1%p 감소함
- 통계청(INSEE), 2017년 3분기 경제성장률 발표(2017.12.22.)³⁸⁾
 - 가계 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GCFC: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이 증가하며 2017년 3분기 0.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 2017년 2분기에 기록한 성장률과 동일하며, 2017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1.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표 22〉 프랑스 일반정부 채무

(단위: 십억유로, %)

	2016Q3	2016Q4	2017Q1	2017Q2	2017Q3
일반정부 채무	2,161.0	2,147.4	2,209.7	2,231.7	2,226.1
GDP 대비	97.4	96.3	98.8	99.1	98.1

출처: 프랑스 통계청, 2017.12.22.

33) 출처: 프랑스 재무부, https://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actualites/2017/promulgation-loi-finances-2018-loi-finances-rectificative-2017#.W1ak_mLSUk
<https://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actualites/2017/conseil-constitutionnel-valide-loi-finances-2018-seconde-loi-finances-rectificative-2017#.W1alfmLSUk>
<https://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actualites/2017/plf-2018-plfp-2018-2022-plfr2-2017-definitivement-adoptes#.W1alfmLSUk>

34) 프랑스의 2018년 예산안은 2017년 하반기 재정동향 및 2018 주요국 예산안 프랑스 참고

35) 프랑스의 2017년 2차 추경예산안은 2017년 하반기 재정동향 참고

36) 프랑스의 2018년 사회보장부문 예산안은 2017년 하반기 재정동향 참고

37) 프랑스 통계청(INSEE):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3295268>

38) 출처: 프랑스 통계청(INSEE),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3294309>



〈표 23〉 프랑스 분기별 성장률

(단위: 전분기 대비 %)

	2016Q4	2017Q1	2017Q2	2017Q3	2016	2017(전망)
GDP 성장률 ¹⁾	0.5	0.6	0.6	0.6	1.1	1.8
수입	0.9	1.2	0.1	2.6	4.2	4.4
가계 소비	0.8	0.0	0.3	0.6	2.1	1.1
정부 소비	0.3	0.3	0.5	0.6	1.2	1.5
총고정자본형성(GCFC)	0.6	1.5	1.1	0.9	2.7	3.4

주: 1) 계절조정 데이터

출처: 프랑스 통계청, 2017.12.22.

■ 재무부, 2017년 프랑스 정부 재정 적자 발표(2018. 1.16.)³⁹⁾

- 프랑스 재무부에 따르면 2017년 정부 재정 적자가 전년보다 13억유로 개선된 678억유로로 집계됨
 - 이는 2008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로, 2017년 말 경기 개선 및 세수 증가로 인해 전망보다 적자 규모가 낮게 나타남
 - 지출 통제 노력을 강조하는 2018년 예산법⁴⁰⁾에 따라, 2018년에도 재정수지의 개선이 계속될 전망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인 연구원)

39) 프랑스 재무부,

<https://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actualites/2018/deficit-budgetaire-2017-en-amelioration-13-milliards-d-euros-rapport-a-2016#.WnArhPmLSUk>

40) 2018년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2018년 주요국 예산안 프랑스 참조



조세 · 재정 정책 및 연구 동향

■ 정책 및 연구 동향: 1.10.~2.9. 세미나 등: 2.1.~2.28.

* 이 자료는 국내외 조세 · 재정과 관련한 정책 및 연구 동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 세미나

세미나 개요	주최(주관)기관	개최일
<p>■ 미국 세제개혁 동향 및 우리 기업의 대응 세미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18. 02. 22.(목) 14:00~17:30 • 장소: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 주제: 최근 미국 세제개혁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 발표: 최용민 실장(한국무역협회)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무역협회 • 법무법인(유) 올촌 • Baker McKenzie 	18-02-22
<p>■ 한국행정학회 특별기획세미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18. 02. 08.(목) 13:30~17:20 • 장소: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자회견장(19층) • 주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 발표: 박승규 소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영준 교수(연세대) 외 • 토론: 이향수 교수(건국대), 안중석 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한국행정학회 	18-02-08
<p>■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18. 02. 08.(목) 10:00~ •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발표: 김형중 교수(고려대학교), 원종현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 토론: 박선중 교수(숭실대)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 이학영 • 국회의원 김한표 • 국회의원 박선숙 • 국회입법조사처 	18-02-08
<p>■ 한국연금학회·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2018년 퇴직연금공동학술세미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18. 02. 02.(금) 14:30~17:10 • 장소: 금융투자교육원 강의실(501) • 주제: 퇴직연금제도의 현안과 정책과제 모색 • 발표: 박희진 박사(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외 • 토론: 박준범 박사(한국보험계리사회)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연금학회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18-02-02
<p>■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18. 02. 01.(목)~02.02(금) • 장소: 강원대학교 글로벌경영관, 경영 1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경제학회 	18-02-01 ~02-02

▶ 정책 및 연구

(1) 정책

제목	발행기관	발행일
<p>◇ 2017년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8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발표 이후 법제처 심사,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를 거쳐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 수렴 • 이에 입법예고 기간 내 제기된 의견과 법제처 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발표한 개정안 일부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 개정안은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월 중 공포될 예정 	기획재정부	18-02-06
<p>◇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재부는 공운위 심의·의결을 통해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338개 기관(신규지정 9개, 변경지정 6개, 지정해제 1개) 	기획재정부	18-01-31
<p>◇ 「국세행정 개혁TF」, 총 50개 국세행정 개혁권고안 마련·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9일 「국세행정 개혁TF」(단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개월 동안 분과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한 국세행정 개혁TF 권고안을 확정 • 국세청은 이번 TF권고안을 2월 중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개혁위원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추가 개혁과제 발굴 등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 	국세청	18-01-29
<p>◇ 올해부터 국민참여예산제도 본격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부터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개진과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혁신 과제 중 하나 • 정부는 1.26일에 개최된 재정관리점검회의(김용진 기재부 2차관 주재)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방안을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일 논의된 운영방안은 그간 전문가 간담회, 연구용역, 지자체 사례 검토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 	기획재정부	18-01-26
<p>◇ 2018년 경제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P 성장률은 금년 중 3.0%(상반 3.2%→하반 2.8%)를 기록할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에는 2.9% 성장할 것으로 예상 	한국은행	18-01-18



(2) 국내외 연구(Papers & Briefs)

제목	발행기관	발행일
<p>◇ 기혼 여성의 근로 지속 여부 및 출산 관련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 김인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고에서는 기혼 여성의 근로 지속 여부와 출산에 대한 일-가정 양립정책 및 배우자 가사분담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경력단절 및 출산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 • 실증분석 결과, 일-가정 양립정책, 남성의 가사 참여는 기혼 여성의 근로 지속 확률과 출산 확률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과 근로지속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정책에 대한 접근성과 남성의 가사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한국개발연구원	18-02-01
<p>◇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도입과 경제영향 분석 / 문진영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외부불경제 요인이 내재화될 경우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여, 글로벌 차원의 저탄소 노력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탄소가격제 이외의 주요국 탄소배출 비용 분석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도입이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 -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제언 제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8-02-01
<p>◇ 일본의 2018년도 세제개정방향 및 주요 이슈 / 한국은행 동경사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12월 일본 정부 및 여당은 2018년도 세제개정방향을 마련하여 2018.1.22일 소집되는 국회에 상정할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 인상 및 설비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센티브 강화, 중소기업 사업승계자에 대한 상속세 유예, 고소득 회사원의 소득세 증세, 담배세 인상, 출국세(가칭 국제관광객세) 신설 등이 주된 내용 - 원안대로라면 1,590억엔 정도의 증세 효과가 기대(국세기준, 재무성 시산) 	한국은행	18-01-19
<p>◇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 김재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2017.12.28일)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개편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이 사회적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경영평가단의 공정성·전문성 확보, 방만경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평가결과의 환류여지 확보 등을 고려할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18-01-12

제목	발행기관	발행일
<p>◇ The Right Type of Legislator: A Theory of Taxation and Representation / by Andrea Mattozzi, Erik Snowber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e develop a theory of tax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government spending in a citizen-candidate model of legislatures. Individuals are heterogeneous in two dimensions: productive ability in the private sector and negotiating ability in politics. When these are positively correlated, rich voters always prefer a rich legislator, but poor voters face a trade-off. A rich legislator will secure more pork for the district, but will also prefer lower taxation than the poor voter. ... (후략) 	NBER	18-02-05
<p>◇ How Large is the Corporate Tax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A General Equilibrium Approach / by Maria Alvarez-Martinez, Salvador Barrios, Diego d'Andria, Maria Gesualdo, Gaëtan Nicodème, Jonathan Pycrof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is paper estimates the size and macroeconomic effects of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BEPS) using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designed for corporate taxation and multinationals. Our central estimate of the impact of BEPS on corporate tax losses for the EU amounts to €36 billion annually or 7.7% of total corporate tax revenues. ... (후략) 	CEPR	18-01-28
<p>◇ An Application of Distribution-Neutral Fiscal Policy / by Sanjeev Gupta, Sugata Marjit, Sandip Sarka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stribution neutral fiscal policy refers to a structure of taxes and transfers that keep the income distribution unchanged even after positive or negative shocks to an economy. This is referred to as a Strong Pareto Superior (SPS) allocation which improves the standard Pareto criterion by keeping the degree of inequality, but not the absolute level of income intact. ... (후략) 	IMF	18-01-24
<p>◇ Where Does Multinational Investment Go with Territorial Taxation? Evidence from the UK / by Li Li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 2009, the United Kingdom changed from a worldwide to a territorial tax system, abolishing dividend taxes on foreign repatriation from many low-tax countries. This paper assesses the causal effect of territorial taxation on real investments, using a unique dataset for multinational affiliates in 27 European countries and employing the DiD approach. It finds that the territorial reform has increased the investment rate of UK multinationals by 15.7 percentage points in low-tax countries. ... (후략) 	IMF	18-01-12



| 정책 흐름 |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
-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

– 세계잉여금 11.3조원 흑자, 불용률 2.0%(최근 5년간 최저 수준) –

* 본 자료는 2018년 2월 9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의 주요 내용입니다. <편집자 주>

◇ 총세입 359.5조원, 총세출 342.9조원, 결산상 잉여금 16.2조원 발생

- 세계잉여금(결산상잉여금-이월액): '15) 2.8 → '16) 8.0 → '17) 11.3조원
- 불용액은 7.1조원(전년 대비 △3.9조원, '16년 3.2% → '17년 2.0%)

-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 9(금) 오후 15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감사원의 정길영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하였다.

- 마감 결과 총세입은 359.5조원, 총세출은 342.9조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6.2조원이며, 이월 4.9조원을 차감한세계잉여금은 11.3조원 흑자를 기록하였다.

<총세입·총세출>

- 총세입은 359.5조원을 징수하였으며, 전년 대비 14.5조원 증가, 예산 대비 9.6조원 초과하였다.
 - 국세수입은 265.4조원으로 전년 대비 22.8조원 증가*, 예산 대비 14.3조원 초과
 - * 법인세(7.1조원), 소득세(6.6조원), 부가가치세(5.3조원), 상속증여세(1.4조원) 등
 - 세외수입은 94.1조원으로 세수호조에 따른 적자 국채 발행 축소로 전년 대비 8.4조원 감소, 예산

'17회계연도 마감 결과

(단위: 조원)

구분	예산 (A)	총세입 (B)	세입 초과 (B-A)	총세출 (C)	결산상잉여금 (B-C)	이월 (D)	세계잉여금 (B-C-D)	불용
합계	349.9	359.5	9.6	342.9	16.2	4.9	11.3	7.1
일반회계	285.0	292.9	7.9	280.5	11.9**	1.9	10.0	4.2
특별회계	64.9	66.6	1.6	62.4	4.2	3.0	1.3	2.9

* 구성항목별 계산금액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국가재정법 제90조 1항에 따라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채상환 0.5조원 차감

'17회계연도 총세입 현황

(단위: 조원)

	① 국세수입					② 세외수입					총세입 (①+②)증감	
	16년 결산	17년		증감		16년 결산	17년		증감		전년 대비	예산 대비
		예산	결산	전년 대비	예산 대비		예산	결산	전년 대비	예산 대비		
계	242.6	251.1	265.4	22.8	14.3	102.4	98.8	94.1	△8.4	△4.7	14.5	9.6
일반회계	235.7	244.0	258.5	22.8	14.6	46.0	41.0	34.4	△11.6	△6.6	11.2	7.9
특별회계	6.8	7.1	6.9	-	△0.2	56.5	57.8	59.7	3.2	1.9	3.3	1.7

* 구성항목별 계산금액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대비 4.7조원 감소*

* 예수금(△8.9조원), 전년도이월금(5.3조원), 경상이전수입(1.0조원) 등

- 총세출은 예산현액* 354.9조원 중 342.9조원을 집행하였고, 전년 대비 10.7조원 증가하였다.

* 예산현액(354.9조원)=예산액(349.9조원)+전년도 이월액 등(5.0조원)

<이월>

- 이월은 4.9조원으로 전년 대비 0.1조원 증가하였다.
- 일반회계는 1.9조원으로 전년 대비 0.3조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0조원으로 전년 대비 0.2조원 감소

<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은 11.3조원 흑자로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흑자, 특별회계에서 1.3조원 흑자를 기록하였다.

* 세계잉여금=결산상잉여금(총세입액-총세출액)-차년도 이월액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세계잉여금은 '12년~'14년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15

년 이후 3년 연속 흑자 발생

* 세계잉여금(조원): ('12) △0.1 → ('13) △0.8 → ('14) △0.8 → ('15) 2.8 → ('16) 8.0 → ('17) 11.3

- 일반회계 세계잉여금(10.0조원)은 국가재정법(\$90)에 따라 교부세(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에 사용 예정

* 특별회계 세계잉여금(1.3조원)은 자체세입 조치

<불용>

- 불용*은 7.1조원으로 전년(11.0조원) 대비 3.9조원 감소하였다.

* 불용=예산현액-총세출-이월

- 일반회계는 4.2조원으로 전년 대비 1.2조원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2.9조원으로 전년 대비 2.7조원 감소

- 불용률은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인 2.0%로 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 연말 불용 최소화 등 적극적인 재정집행에 기인

연도별 불용규모

(단위: 조원, %)

	'07~'12년 평균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 총계기준	5.4	18.1	17.5	10.8	11.0	7.1
(불용률*)	(2.2)	(5.8)	(5.5)	(3.2)	(3.2)	(2.0)

* 불용률(세출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세입부족으로 불용 과다발생인 '13~'14년 제외

-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세입세출 이외 재정수지·국가채무·재무제표 등을 추가로 산출

참고 1 '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

- 총세입 359.5조원에서 총세출 342.9조원과 이월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1.3조원(일반회계 100,442억원, 특별회계 12,433억원)

* 세계잉여금=결산상잉여금(총세입-총세출)-이월

(단위: 억원)

구 분	예산 (A)	총세입 (B)	세입초과 (B-A)	총세출 (C)	결산상 잉여금 (D=B-C)	이월 (E)	세계잉여금 (D-E)
합 계	3,498,988	3,595,294	96,306	3,428,788	161,505	48,650	112,855
(2016)	3,419,467	3,449,961	30,494	3,322,108	127,853	47,537	80,316
일반회계	2,849,450	2,929,006	79,556	2,804,840	119,166**	18,745	100,422
(2016)	2,794,276	2,816,746	22,470	2,739,981	76,765	15,845	60,920
특별회계	649,537	666,288	16,750	623,949	42,339	29,906	12,433
(2016)	625,192	633,215	8,024	582,127	51,088	31,692	19,396

* 구성항목별 계산금액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회계: 53개 중앙관서, 특별회계: 19개

** 국가재정법 제90조 1항에 따라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채상환 5,000억원 차감

- (총세입) 359.5조원으로 예산(349.9조원) 대비 9.6조원 초과징수

- (일반회계) 예산 대비 8.0조원(2.8%) 초과한 292.9조원 징수

* 국세수입(14.6): 소득세 5.5, 부가가치세 4.5, 법인세 1.9, 개별소비세 0.9 등
세외수입(Δ6.6): 예수금 Δ8.7, 전년도이월금 1.6,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0.5 등

- (특별회계) 예산 대비 1.7조원(1.3%) 초과한 66.6조원 징수

※ 국세수입(Δ0.2): 주세 Δ0.3 등
세외수입(1.9): 전년도이월금 3.7, 우정사업수입 Δ1.4, 정부내부수입 Δ0.3 등

- **(총세출)** 342.9조원으로 예산현액(354.9조원) 대비 96.6% 집행
 - **(일반회계)** 예산현액(286.6조원*) 대비 97.9%인 280.5조원 지출
 - * 예산액(284.9조원), 전년도이월액(1.6조원) 등
 - **(특별회계)** 예산현액(68.3조원*) 대비 91.3%인 62.4조원 지출
 - * 예산액(65.0조원), 전년도이월액(3.2조원) 등
- **(이월·불용)** 이월 4.9조원, 불용 7.1조원으로 전년 대비 이월은 0.1조원 증가, 불용은 3.9조원 감소

(단위: 억원)

구분	이월			불용		
	2017년(A)	2016년(B)	증감(A-B)	2017년(C)	2016년(D)	증감(C-D)
합계	48,650	47,537	1,113	71,401	109,868	△38,467
일반회계	18,745	15,845	2,900	42,074	54,067	△11,993
특별회계	29,906	31,692	△1,786	29,328	55,801	△26,473

* 구성항목별 계산금액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이월: (일반회계) 방위사업청(0.9), 국방부(0.5), 해양수산부(0.1) 등
(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1.6), 교통시설(0.7), 지역발전(0.4) 등
- 불용: (일반회계) 기재부(2.1), 국방부(0.4), 방위사업청(0.3) 등
(특별회계) 우체국예금(0.8), 에너지및자원사업(0.5), 우편사업(0.5) 등
- **(세계잉여금)** 11.3조원(일반회계 10.0조원, 특별회계 1.3조원)
 - 일반회계 세계잉여금(10.0조원)은 국가재정법(제90조)에 따라 교부세(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가채무 상환 등에 사용
 - *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

참고 2 '17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

1 2017년 국세수입

- '17년 국세수입 실적: 265.4조원
 - '17년 추경 세입예산(251.1조원) 대비 14.3조원(5.7%) 초과
 - '16년 국세수입 실적(242.6조원) 대비 22.8조원(9.4%) 증가

(단위: 조원, %)

구분	'16년 실적	'17년		'16년 실적 대비		'17년 예산 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총국세	242.6	251.1	265.4	22.8	9.4	14.3	5.7
일반회계	235.7	244.0	258.5	22.8	9.7	14.6	6.0
특별회계*	6.8	7.1	6.9	0.03	0.4	△0.2	△3.4

* 주세(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17년 세수실적 개선 원인

- 주로 '16년 법인실적 개선, 수출입 증가 등 경제 지표 개선에 따라 증가
-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따른 사전증여 증가 등 특이요인도 기여

2 주요 세목별 증감사유('16년 실적 대비)

<증가 세목>

■ 법인세: +7.1조원

- '16년 법인 실적 개선* 등에 기인

* 유가증권시장 12월말 결산법인 영업이익(조원): ('16) 63.8 → ('17) 68.4 (<+7.2%)

■ 부가가치세: +5.3조원

- 수입 증가*에 따른 수입 VAT 증가, 소비 증가** 등에 기인

* 수입액(억달러): ('16) 4,062 → ('17) 4,784 (<+17.8%)

** 민간소비(전년동기 대비, %):

('16.4분기) 1.5 ('17.1분기) 2.0 (2) 2.3 (3) 2.5

■ 소득세

- 근로소득세(+3.0조원): 명목임금 상승*, 취업자 수 증가** 등에 기인

*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만원): ('16.1~11) 371.5 → ('17.1~11) 382.2 (+2.9%)

** 상용근로자 수(만명): ('16) 1,297 → ('17) 1,334 (+2.8%)

- 종합소득세(+1.7조원): 개인사업자 소득증가* 등에 기인

* 종합소득세 신고소득금액(조원):

('16) 162.0 → ('17) 176.2 (+8.8%)

- 양도소득세(+1.5조원): 부동산·주식시장 호조* 등에 기인

* 부동산 거래량(천건):

('14) 4,336 ('15) 5,102 ('16) 4,933 ('17) 5,523

지가상승률(%):

('12) 0.96 ('13) 1.14 ('14) 1.96 ('15) 2.40 ('16) 2.70 ('17) 3.88

KOSPI 평균지수:

('14) 1,982 ('15) 2,012 ('16) 1,987 ('17) 2,311

■ 상속증여세: +1.4조원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따른 사전증여 증가 등에 기인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

('16) 10% → ('17) 7% → ('18) 5% → ('19 이후) 3%

■ 개별소비세(+1.0조원), 관세(+0.5조원) 등

〈감소 세목〉

■ 퇴직소득세: △0.4조원

- 퇴직소득공제 조정에 따른 '16년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증가 기저효과*에 기인

* 퇴직소득세(조원):

('13) 0.57 ('14) 0.82 ('15) 1.10 ('16) 1.59 ('17) 1.16

■ 주 세: △0.2조원

- 경영 애로기업 납부기한 연장 등에 기인

3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단위: 조원, %)

구 분	'16년 실적	'17년		'16년 실적 대비		'17년 예산 대비	
		예산	실적	증감액	%	증감액	%
총국세	242.6	251.1	265.4	22.8	9.4	14.3	5.7
○ 소득세	68.5	69.6	75.1	6.6	9.6	5.5	7.9
• 종합소득세	14.3	15.0	16.0	1.7	11.9	1.0	6.9
• 양도소득세	13.7	12.1	15.1	1.5	10.6	3.0	25.0
• 근로소득세	31.0	33.1	34.0	3.0	9.8	0.9	2.9
• 퇴직소득세	1.6	1.4	1.2	△0.4	△26.8	△0.2	△14.6
○ 법인세	52.1	57.3	59.2	7.1	13.5	1.9	3.3
○ 상속증여세	5.4	6.0	6.8	1.4	26.8	0.8	12.6
○ 부가가치세	61.8	62.6	67.1	5.3	8.5	4.5	7.2
○ 개별소비세	8.9	9.0	9.9	1.0	11.0	0.9	9.4
○ 증권거래세	4.5	4.0	4.5	-	0.9	0.5	12.2
○ 인자세	0.9	0.9	0.9	-	△1.1	-	1.3
○ 과년도수입	4.1	3.8	4.4	0.2	5.9	0.6	16.9
○ 교통에너지환경세	15.3	15.4	15.6	0.2	1.6	0.2	1.1
○ 관세	8.0	9.0	8.5	0.5	6.0	△0.5	△5.1
○ 교육세	4.9	5.1	5.0	0.1	2.6	△0.1	△1.3
○ 종합부동산세	1.3	1.4	1.7	0.4	27.7	0.2	16.8
○ 주세	3.2	3.3	3.0	△0.2	△5.4	△0.3	△9.0
○ 농특세	3.6	3.8	3.8	0.2	5.5	0.1	1.5

참고 3

'17회계연도 세계잉여금 규모 및 처리 계획

- **(규모)** 11.3조원*으로, '15년부터 3년 연속 흑자
 - 세계잉여금(조원): (총계)11.3 (일반회계)10.0 (특별회계)1.3

최근 5개년 세계잉여금 연도별 추이

(단위: 조원)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A)	'17년 (B)	증감 (B-A)
일반회계	0.1	0.1	2.5	6.1	10.0	3.9
특별회계	△0.8	△0.9	0.3	1.9	1.3	△0.6
계	△0.8	△0.8	2.8	8.0	11.3	3.3

- **(원인)** 예산 대비 세입 초과(9.6)에 기인

* 세계잉여금=결산상 잉여금(총세입-총세출-세출외채무상환)-이월액(세입징수액 ↑ ⇒ 세계잉여금 증가)

- **(세입 초과)** 예산(349.9조원) 대비 9.6조원 초과한 359.5조원 징수
 - * 초과징수액(조원): ('14) △11.0 → ('15) 0.1 → ('16) 3.0 → ('17) 9.6
 - 일반회계(+8.0): 국세수입 +14.6조원, 세외수입 △6.6조원
 - 특별회계(+1.6): 국세수입 △0.2조원, 세외수입 +1.9조원
- **(이월)** 4.9조원으로 '16년과 유사한 수준
 - * 이월액 규모(조원): ('13) 7.2 → ('14) 8.0 → ('15) 5.9 → ('16) 4.8 → ('17) 4.9

- **(향후 처리계획)** 일반회계는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처리**하고, 특별회계는 자체 세입 조치할 계획
 - * ① 지방교부세(금) 정산 ② 공적자금 출연(①을 제외한 금액의 30% 이상) ③ 채무상환(①, ②를 제외한 금액의 30% 이상) ④ 추경편성 또는 세입이입
 - ** 법정 절차(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승인)를 거쳐 4월 초순 이후 사용 가능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

* 본 자료는 2018년 1월 31일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에서 발표한 「2018년 공공기관 지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편집자 주)

◇ 기재부는 공운위 심의·의결을 통해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 확정
- 총 338개 기관(신규지정 9개, 변경지정 6개, 지정해제 1개)

- 기획재정부는 1.31(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동 지정안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 기존에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 동 지정안의 의결에 따라,
 -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9개 기관*을 신규지정하고,
 - * 기타공공기관(9): 서민금융진흥원,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주식회사 에스알(SR),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합회,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수목원관리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 소규모 기관으로 지정실익이 낮은 1개 기관을 지

정에서 해제하였으며,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기타공공기관 → 지정해제)

- 관리 내실화 필요성 및 자체수입비율 하락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6개 기관의 유형을 변경하여 지정하였다.

* 공기업(1): 주식회사 강원랜드(← 기타공공기관)

* 준정부기관(5): 재단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타공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공기업)

- 금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최근 채용비리, 방만경영 등으로 감사원 등에서 문제 제기된 금융감독원에 대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금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지정유보하기로 하였다.
 - 다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개선하며,
 -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를 수행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중 1인 이상이 참여하는 등 엄격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금융위원회는 그 추진실적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추진결과가 미흡할 경우 '19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 또한 지난해 공운위에서 '18년 공기업 지정을 검토하기로 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필요시 구조조정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응 등을 위하여 기타공공기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다만, 금융위원회와 양 은행은 공기업에 준하는 조치계획*을 약속하였으며, 그 이행실적을 공운위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 * ① 자체 경영혁신안 이행 철저
 - ② 사외이사 선임시 외부인사 참여
 - ③ 엄격한 경영평가 등
- 강원랜드는 여타 대규모 자회사와 마찬가지로 공기업으로 변경지정하였으며,
 - 공기업 지정에 따른 지역민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평가 시 폐광지역 진흥 기여 노력 반영 등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전년 대비 8개가 증가한 총 338개 기관이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되었다.
 - * 공기업: ('17) 35개 → ('18) 35개 (+강원랜드, △관광공사)
 - * 준정부기관: ('17) 88개 → ('18) 93개 (+5개)
 - * 기타공공기관: ('17) 207개 → ('18) 210개 (+3개)
- 금번 2018년도 지정에 따라,
 -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지고,
 -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기관은 지

배구조의 견제·균형(비상임이사·감사의 경영진 감시 등), 엄격한 경영평가, 경영지침 적용을 통해 기관 운영의 책임성 및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된다.

- 또한,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채용비리·방만경영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추진함으로써 투명성·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1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 변동내역

■ '18년도 공공기관은 총 338개로 '17년 대비 8개 기관 증가

구분	'17년	'18년				
			증감	신규	해제	변경
① 공기업	35	35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형 • 준시장형 	14	15	+1			+1
	21	20	△1			△1
② 준정부기관	88	93	+5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관리형 • 위탁집행형 	16	16				
	72	77	+5			+5
③ 기타공공기관	207	210	+3	+9	△1	△5
계	330	338	+8	+9	△1	±6

구분	주무부처	기관명	지정 결과
신규 (+9)	산업부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기타공공기관
	복지부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토부	주식회사 에스알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중기부	주식회사 공영흡소평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합회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산림청	한국수목원관리원		
해제 (△1)	산업부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지정 해제
유형 변경 (±6)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기타공공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과기부	재단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타공공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문화부	한국관광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산업부	주식회사 강원랜드	기타공공기관 → 시장형 공기업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타공공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기타공공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참고 2 2018년도 공공기관 현황(338개)

구분	(주무기관)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15)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u>주식회사 강원랜드</u>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20)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화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6)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화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관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7)	(기재부) <u>한국재정정보원</u>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과기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u>재단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u>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문화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u>한국관광공사</u> (농식품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가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원인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식약처) <u>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u>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u>한국산림복지진흥원</u>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특허청)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참고 2 2018년도 공공기관 현황(338개) <계속>

구분	(주무기관) 기관명
기타공공기관 (210)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과기부) 과학기술인재진흥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별정우체국연구관리단, 울산과학기술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대이터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IOM이민정책연구원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안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문화부) (재)국악방송,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예술의전당, (재)정동극장, (재)한국문화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식품부) 재단법인 한식진흥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산자부)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전원자력연료(주),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u>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u>
	(복지부) (재)한국보육진흥원,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 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약진흥재단, <u>재단법인 의리기관평가인증원</u>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토부) (주)위터웨이플러스,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항공안전기술원, <u>주식회사 에스알,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u>
	(해수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어촌여행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항로표지기술포럼
	(중기부) (재)중소기업연구원, (주)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u>주식회사 공영홍소핑,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u>
	(금융위)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u>서민금융진흥원</u>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보훈처) 88관광개발(주)	
(식약처)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관세청) (재)국제원산지정보원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단	
(기상청) (재)APEC기후센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산림청) <u>한국수목원관리원</u>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 신규·변경지정 대상 공공기관은 밑줄 표시

재정포럼

2018년 2월호 통권 제260호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인 /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은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홍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한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책임전문원)
신지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원)

■ 월간 재정포럼

2018년 2월 19일 발행 / 제22권 제2호(통권 제260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 414-2130~2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주)상일 E&P TEL: (02) 2269-6770

■ 인쇄 / (주)상일 E&P TEL: (02) 2269-6770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 시 두 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 414-2114
- FAX: (044) 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식정보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မ်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